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CONTENTS

-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 조세동향 및 이슈** |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9월
총수입(A)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436.3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400.5	266.6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30.8	25.0	20.8
기금수입	122.6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90.8	200.3	148.8
세입외	0.0	0.1	0.1	0.1	0.1	0.6	0.4	0.1	0.1	0.3	—	0.1
총지출(B)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467.5
예산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39.6	441.1	319.9
기금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31.2	197.7	146.9
세출외	0.3	0.2	0.2	0.3	4.0	6.6	11.2	0.4	2.6	11.6	—	0.7
통합재정수지(A-B)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64.6	-13.1	-31.2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58.2	-70.6
국가채무(중앙정부)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1.7	1,099.6
(GDP 대비, %)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4)	(45.6)	(48.1)	(49.0)	—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3년 1~9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3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4	22.9
과학기술	5.3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9.9
교육	45.3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96.3
교통 및 물류	17.2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20.8
국방	31.2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0.4	55.3
국토 및 지역개발	6.0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4.2
농림수산	17.7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2	24.4
문화 및 관광	4.5	5.0	5.2	6.2	6.7	6.9	6.3	7.2	8.1	8.5	9.0	8.6
보건	7.8	8.8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8	20.0
사회복지	84.8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5.1	20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	16.4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73.7	26.0
예비비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4.6
일반·지방행정	54.1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08.1	112.2
통신	7.3	7.3	6.8	6.4	6.2	6.2	6.2	7.0	8.0	8.2	8.7	9.0
통일·외교	3.0	3.1	2.9	3.1	3.8	3.3	3.7	3.9	3.7	4.2	4.5	6.4
환경	5.8	6.1	6.1	6.7	6.9	7.1	7.0	8.5	9.3	10.2	11.0	12.2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출외는 제외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4 통권 제25호

Contents

주요 재정총량 지표	1
재정추계 동향	5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6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11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17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18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42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53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입법 재정소요 추계	6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68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조세 동향	95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96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105
조세 이슈 및 분석	111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112
국세감면을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29

재정추계 동향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김 효 진 · 태 정 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1. 총수입¹⁾

2023년 3분기 총수입은 436.3조원으로 전년동기(483.2조원) 대비 46.9조원(9.7%)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69.7%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8.5%p 감소

- (국세수입) 2023년 3분기 국세수입은 266.6조원으로 전년동기(317.6조원) 대비 50.9조원(16.0%) 감소
 - ▶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주요 세목인 법인세(전년동기 대비 23.8조원 감소) 및 소득세(전년동기 대비 14.2조원 감소)가 크게 감소하며 2023년 3분기 국세수입 감소를 주도
 - ▶ 2023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66.6%로 전년동기(결산기준) 80.2% 대비 13.6%p 낮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3년 3분기 국세외수입은 169.6조원으로 전년동기(165.5조원) 대비 4.1조원(2.5%) 증가
 - ▶ 세외수입은 전년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 등의 원인으로 2.8조원 감소하였으나,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6.9조원 증가
 - ▶ 2023년 3분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75.3%로 전년동기(결산기준) 74.7% 대비 0.6%p 높은 수준

표 1 2023년 3분기(1~9월 누계)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3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3분기 (A)	'23.3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3분기 (A/C)	'23.3분기 (B/D)		
총수입(1+2)	483.2	436.3	△46.9	△9.7	78.2	69.7	617.8	625.7
1. 국세수입	317.6	266.6	△50.9	△16.0	80.2	66.6	395.9	400.5 ¹⁾
2. 국세외수입	165.5	169.6	4.1	2.5	74.7	75.3	221.6	225.3
- 세외수입	23.6	20.8	△2.8	△11.9	76.7	83.3	30.8	25.0
- 기금수입	141.9	148.8	6.9	4.9	74.4	74.3	190.8	200.3

주 1) 2023년도 재추계한 국세수입은 341.4조원

1.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순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함.

2. 국세수입

가. 개관

2023년 3분기 국세수입은 266.6조원으로 전년동기(317.6조원) 대비 50.9조원(16.0%)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66.6%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2023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66.6%²⁾로 전년동기(결산기준) 80.2% 대비 13.6%p 낮고 최근 5년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79.0%)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

표 2 2023년 3분기(1~9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3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3분기 (A)	'23.3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3분기 (A/C)	'23.3분기 (B/D)		
1. 국세수입	317.6	266.6	△50.9	△16.0	80.2	66.6	395.9	400.5
○ 소득세	98.7	84.6	△14.2	△14.4	76.7	64.1	128.7	131.9
- 종합소득세	16.7	13.6	△3.1	△18.8	69.9	55.0	23.9	24.7
- 양도소득세	26.2	13.3	△13.0	△49.4	81.4	44.7	32.2	29.7
- 근로소득세	43.9	44.3	0.5	1.1	76.3	73.1	57.4	60.6
○ 법인세	95.7	71.9	△23.8	△24.9	92.4	68.5	103.6	105.0
○ 부가가치세	61.1	54.9	△6.2	△10.2	74.8	65.9	81.6	83.2
○ 상속·증여세	12.0	11.1	△0.9	△7.3	82.3	65.0	14.6	17.1
○ 개별소비세	7.0	6.6	△0.4	△5.5	75.1	75.0	9.3	5.0
○ 증권거래세	5.1	4.9	△0.3	△5.8	81.7	97.5	6.3	5.0
○ 교통·에너지·환경세	8.7	8.2	△0.5	△5.6	78.0	73.4	11.1	11.1
○ 관세	8.2	5.4	△2.8	△34.6	79.8	50.2	10.3	10.7
○ 종합부동산세	2.1	1.8	△0.3	△12.5	30.2	31.5	6.8	5.7
○ 기타 ¹⁾	18.9	17.3	△1.6	△9.2	80.4	84.4	23.5	20.5

주 1) 인자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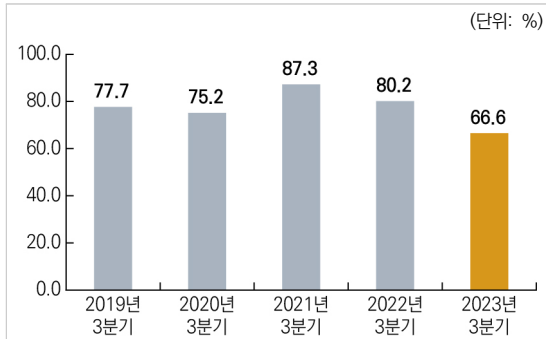
1. 2023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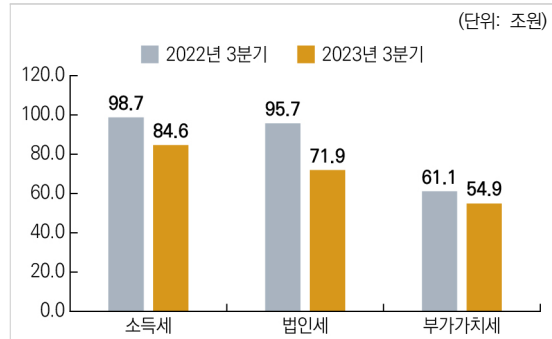
2) 2023년 재추계한 국세수입(341.4조원) 기준으로 재계산할 경우 '23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78.1%, 전년동기(결산기준) 80.2% 대비 2.1%p 낮음

그림 1 최근 5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최근 2년 주요 세목의 3분기 실적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는 84.6조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98.7조원) 대비 14.2조원(14.4%) 감소

-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량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전년동기 대비 13.0조원, 49.4%)에 주로 기인
 - 최근 3년간 3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조원) : ('21) 28.5, ('22) 26.2, ('23) 13.3
 - 부동산 매매량(전년동기비, %): ('22.11.~'23.7.) 주택 △18.9, 토지 △34.6
- 종합소득세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기저효과(△2.4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원(18.8%) 감소

법인세는 71.9조원으로 2022년 법인실적 부진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95.7조원) 대비 23.8조원(24.9%) 감소하며 3분기 국세수입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2022년 법인실적 부진 및 2023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 악화 등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액이 감소
 - 2022년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 %): ('21) 121.6 → ('22) △25.5³⁾
 - 월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액 증감추이(전년동월 대비, 조원): (8월) △3.5, (9월) △3.7

부가가치세는 54.9조원으로 통관 수입 부진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61.1조원) 대비 6.2조원(10.2%) 감소

- 명목 통관수입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Q1) △2.2, ('23.Q2) △13.0, ('23.Q3) △21.7
-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에서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2년 23.7%에서 2023년은 25.3%로 1.6%p 상승

3) 대규모 적자(△24.4조원)가 발생한 한국전력 제외 시 △11.2%

3. 국세외수입

2023년 3분기 국세외수입은 169.6조원으로 전년동기(165.5조원) 대비 4.1조원(2.5%)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75.3%로 전년 동기(74.7%) 대비 0.6%p 상승

- 2023년 3분기 국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한 것 (4.2조원)에 주로 기인

표 3 2023년 3분기(1~9월 누계)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3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3분기 (A)	'23.3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3분기 (A/C)	'23.3분기 (B/D)		
2. 국세외수입	165.5	169.6	4.1	2.5	74.7	75.3	221.6	225.3
○ 일반회계수입	13.1	9.7	△3.5	△26.7	80.4	99.6	16.3	9.7
- 재산수입	7.4	3.0	△4.4	△59.5	98.9	115.6	7.4	2.6
- 경상이전수입	5.1	5.7	0.6	11.8	65.3	100.4	7.8	5.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5	0.7	0.1	20.0	66.0	59.7	0.8	1.1
- 기타 ¹⁾	0.2	0.3	0.2	100.0	53.2	93.2	0.3	0.4
○ 특별회계수입	10.5	11.1	0.6	5.7	72.5	73.0	14.5	15.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7	5.8	1.1	23.4	72.8	94.5	6.5	6.2
- 재산수입	0.3	0.3	△0.0	△0.0	79.1	91.2	0.3	0.3
- 경상이전수입	3.3	2.7	△0.6	△18.2	71.0	62.8	4.6	4.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1.1	0.0	0.0	67.0	60.6	1.5	1.8
- 기타 ¹⁾	1.2	1.3	0.1	8.3	80.3	46.9	1.4	2.8
○ 기금수입	141.9	148.8	6.9	4.9	74.4	74.3	190.8	200.3
- 사회보장기여금	62.5	66.6	4.2	6.7	74.9	77.4	83.4	86.1
- 재산수입	29.7	31.3	1.5	5.1	75.3	92.8	39.5	33.7
- 경상이전수입	25.7	27.9	2.1	8.2	79.9	76.6	32.2	36.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8	4.4	0.6	15.8	42.1	46.4	9.0	9.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8.4	16.9	△1.5	△8.2	75.8	52.9	24.3	32.0
- 기타 ²⁾	1.7	1.7	△0.0	△0.0	76.2	64.3	2.3	2.7

주: 1)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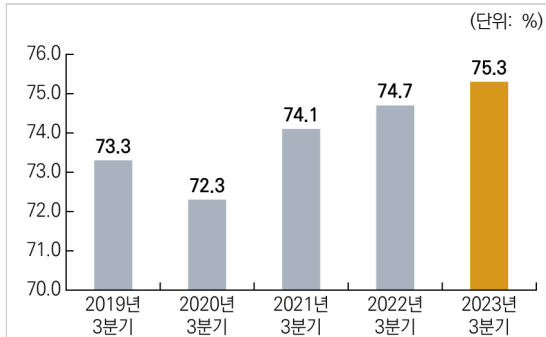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1.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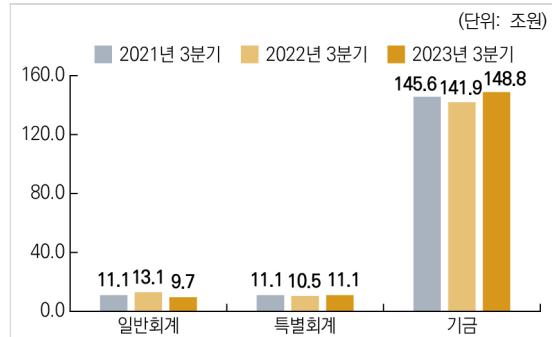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 최근 5년 3분기 국세외수입 진도를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최근 3년 국세외수입 3분기 실적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7조원으로 전년동기(13.1조원) 대비 3.5조원(26.7%) 감소하였고, 진도율은 99.6%로 전년동기(80.4%) 대비 19.2%p 상승
 - ▶ 한국은행 결산잉여금과 정부출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산수입(3.0조원)이 전년동기(7.4조원) 대비 4.4조원 감소
 - 1분기 세입조치된 2022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1.8조원)이 전년동기(5.5조원) 대비 3.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 외화증권 매매차익 감소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정부출자수입(0.9조원)이 전년동기(1.7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의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수입 예산액이 전년대비 감액편성 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외수입 진도율은 상승
 - 2022년 추경 기준 재산수입 예산은 7.4조원이었으나,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산수입 예산은 2.6조원으로 4.8조원(64.9%) 감액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1.1조원으로 전년동기(10.5조원) 대비 0.6조원(5.7%)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73.0%로 전년동기(72.5%) 대비 0.5%p 상승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5.8조원)이 전년동기(4.7조원) 대비 1.1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48.8조원으로 전년동기(141.9조원) 대비 6.9조원(4.9%)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74.3%로 전년동기(74.4%) 대비 0.1%p 하락
 -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66.6조원)이 전년동기(62.5조원) 대비 4.2조원 증가
 -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와 그 밖에 법정부담금 부과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입(27.9조원)이 전년동기(25.7조원) 대비 2.1조원 증가
 -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입 증가 등으로 재산수입(31.3조원)이 전년동기(29.7조원) 대비 1.5조원 증가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국가채무 현황

2023년 9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99.6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1,004.4조원, 주택채 잔액은 82.0조원, 외평채 잔액은 11.8조원 등

-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6.9조원 증가(발행 144.4조원, 상환 77.5조원), 주택채 잔액은 0.1조원 감소(발행 10.0조원, 상환 10.1조원), 외평채 잔액은 0.02조원 감소¹⁾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	국채 합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4)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6)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8.1)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예산	1,101.7	(49.0)	1,100.3	999.0	86.8	14.5	1.2	0.2
2023.1	1,047.4	—	1,045.4	952.0	81.9	11.5	1.9	0.1
2023.2	1,061.0	—	1,059.1	965.1	81.8	12.3	1.8	0.1
2023.3	1,053.6	—	1,051.8	958.1	81.5	12.2	1.7	0.1
2023.4	1,072.7	—	1,070.9	975.6	82.6	12.6	1.7	0.1
2023.5	1,088.7	—	1,087.1	993.4	81.3	12.3	1.5	0.1
2023.6	1,083.4	—	1,081.9	988.4	81.2	12.3	1.4	0.1
2023.7	1,097.8	—	1,096.6	1,003.7	80.9	12.0	1.1	0.1
2023.8	1,110.0	—	1,108.6	1,015.3	81.0	12.4	1.3	0.1
2023.9	1,099.6	—	1,098.2	1,004.4	82.0	11.8	1.3	0.1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

2. 국고채 발행 현황

2023년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 중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2023년 계획은 45.8조원이며, 2022년 실적 대비 40.4조원 적은 규모

표 2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단위: 조원)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2023	
				본예산	추경	실적(A)	예산(B)	B-A
총 발행	101.7	174.5	180.5	166.0	177.3	168.6	167.8	-0.8
순증	44.5	115.3	120.6	93.4	104.7	97.3	61.5	-35.7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88.2)	(76.2)	(91.2)	(86.2)	(45.8)	(-40.4)
차환	57.2	59.2	59.9	72.6	72.6	71.4	106.3	34.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2022.12.26.)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4.4조원이며, 9월 기준 국고채 잔액은 1,004.4조원

표 3 국고채 발행 실적 및 계획

(단위: 조원)

	2022 계획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잔액	937.5	858.7	877.6	885.7	904.3	921.9	910.3	923.6	933.4	931.4	940.7	948.9	937.5	—
발행	177.3	15.4	19.3	18.5	18.9	17.8	14.6	15.6	12.1	11.9	11.2	9.5	3.8	168.6
상환	80.1	0.4	0.4	10.4	0.3	0.2	26.1	2.3	2.3	12.0	3.8	1.3	15.2	74.8

	2023 계획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잔액	999.0	952.0	965.1	958.1	975.6	993.4	988.4	1,003.7	1,015.3	1,004.4				—
발행	167.8	14.8	13.4	17.8	17.9	18.1	16.7	17.6	14.9	13.2				144.4
상환	106.3	0.3	0.3	24.8	0.3	0.3	21.8	2.3	3.3	24.1				77.5

주: 1. 2023년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9월은 월 실적 기준임

2. 2022년 상환 계획(80.1조원)에는 순상환 계획(7.5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계획(72.6조원)보다 큼

3. 2022년 상환 실적(74.8조원)에는 순상환 실적(3.4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실적(71.4조원)보다 큼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일반회계 적자보전 현황

2023년 9월까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는 45.8조원이며, 2023년 예산(45.8조원) 대비 전액 집행

- 2023년의 경우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가 9월에 예산 대비 100%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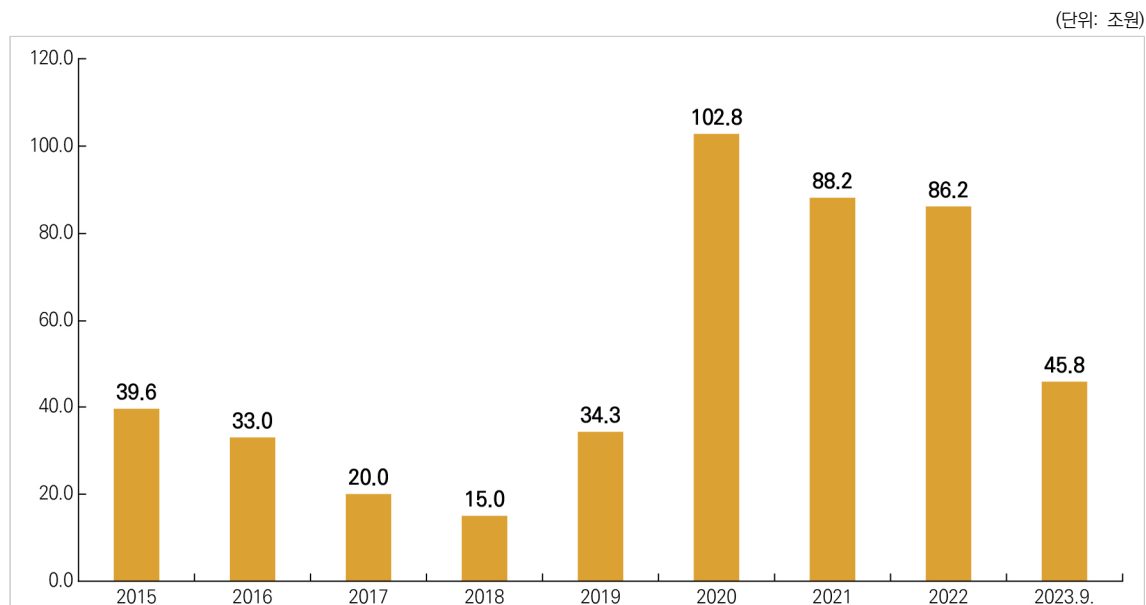
표 4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

(단위: 조원)

연도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연도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45.8	4.0	6.0	12.0	4.0	4.0	4.0	4.0	4.0	3.8				45.8

주: 2023년의 경우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9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일반회계 적자보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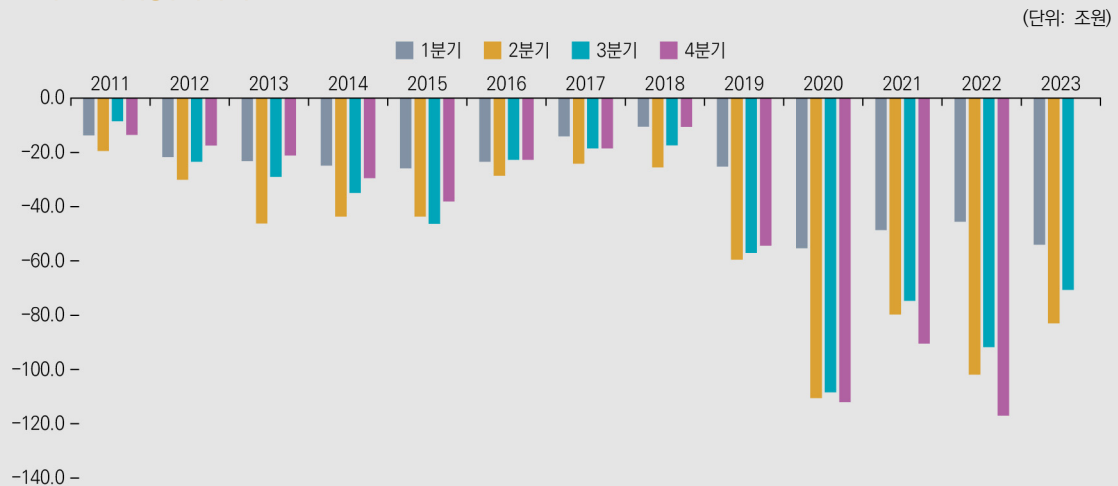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및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 2023년 9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0.6조원 적자이며, 2023년 9월까지 적자국채 45.8조원을 발행하여 부족자금 조달
 - 2011년 이후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1분기에 비해 2·3분기에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4분기에 회복되는 주기가 있음
 - 다만, 2013~2018년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으나, 2019년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연말 재정수지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악화됨

■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1~2023 ■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

■ 2023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정증권 발행	—	4.0	5.0	4.0	6.0	7.5	6.0	7.5	4.5			
한국은행 일시차입	3.5	16.5	28.1	17.1	6.1	15.9	13.6	12.8	—			

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금 통합계정에 대한 월별 대출금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4. 국고채 금리 동향

2023년 9월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84%로 2022년 10월 4.21% 이후 하락하였으나, 6월부터 다시 상승 추세

- 2023년 10월 기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4.07%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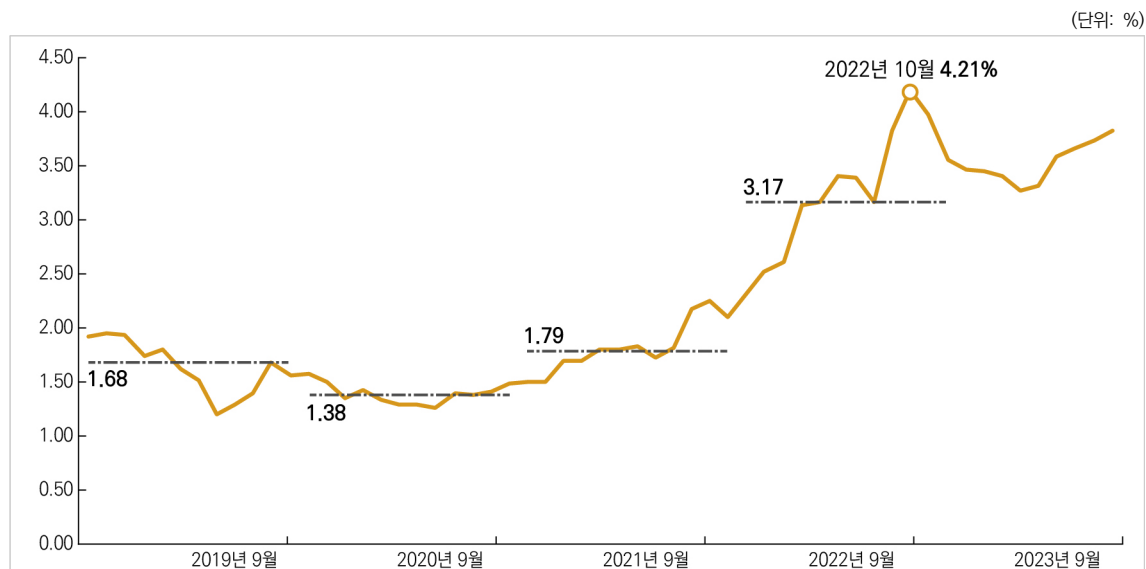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단위: %)

		2021	2022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48	3.46	3.41	3.28	3.33	3.59	3.67	3.74	3.84
평균 유통금리	3년물	1.798	3.722	3.325	3.797	3.270	3.293	3.459	3.548	3.681	3.711	3.884
	5년물	2.011	3.743	3.299	3.829	3.274	3.292	3.450	3.552	3.697	3.750	3.942
	10년물	2.250	3.730	3.297	3.753	3.340	3.360	3.532	3.611	3.761	3.821	4.030
	30년물	2.310	3.683	3.307	3.588	3.340	3.364	3.598	3.659	3.657	3.731	3.896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을 1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 방향 분석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의 효과를 추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하여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 평가
- 전망에 반영한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중 2023~2032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활용하고,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23~2032년 거시경제 전망 활용

2.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GDP 대비 25.8%)에서 2032년 886.8조원(27.7%)으로 연평균 5.0% 증가 전망

-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GDP 대비 15.4%)에서 2032년 556.1조원(17.4%)으로 연평균 5.6% 증가 전망
 - ▶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로자 비과세 확대 등
 - ▶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 (기타 세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23년 230.9조원(GDP 대비 10.4%)에서 2032년 330.7조원(10.3%)으로 연평균 4.1% 증가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3.1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 참고

-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 87.4조원에서 2032년 120.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
- ▶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23년 18.5조원에서 2032년 28.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3년 125.1조원에서 2032년 182.2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표 1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571.2 (25.8)	604.5 (26.2)	649.4 (26.8)	683.4 (26.9)	716.8 (27.0)	749.6 (27.2)	783.0 (27.3)	816.7 (27.5)	851.2 (27.6)	886.8 (27.7)	5.0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340.3 (15.4)	361.4 (15.7)	390.4 (16.1)	416.6 (16.4)	438.8 (16.6)	461.8 (16.7)	484.0 (16.9)	507.2 (17.1)	531.1 (17.2)	556.1 (17.4)	5.6
소득세	114.2	124.8	137.6	149.1	159.3	169.1	178.6	188.7	199.1	210.1	7.0
법인세	79.1	75.0	82.8	89.7	96.4	102.8	108.6	114.4	120.2	126.3	5.3
부가가치세	74.4	81.1	86.9	92.0	96.5	100.8	104.9	109.3	113.6	118.1	5.3
기타	72.6	80.5	83.1	85.9	86.5	89.1	91.9	94.9	98.1	101.6	3.8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230.9 (10.4)	243.2 (10.6)	259.0 (10.7)	266.8 (10.5)	278.1 (10.5)	287.7 (10.4)	299.0 (10.4)	309.5 (10.4)	320.2 (10.4)	330.7 (10.3)	4.1
사회보장기여금	87.4	91.0	95.1	98.5	102.2	106.0	109.5	113.0	116.6	120.1	3.6
연금수입	18.5	20.2	21.2	22.6	23.9	24.9	26.1	26.8	27.5	28.3	4.8
기타	125.1	131.9	142.6	145.7	152.0	156.9	163.3	169.8	176.0	182.2	4.3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GDP 대비 27.5%)에서 2032년 921.4조원(28.8%)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의무지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의무지출은 2023년 321.3조원(GDP 대비 14.5%)에서 2032년 557.3조원(17.4%)으로 연평균 6.3% 증가 전망
 - ▶ 주요 정책 변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의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주거급여) 등
 -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7.3조원에서 2032년 294.7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 ▶ 지방이전재원은 2023년 133.0조원에서 2032년 213.0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
 - ▶ 이자지출은 2023년 23.7조원에서 2032년 40.3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 ▶ 기타 의무지출은 2023년 7.3조원에서 2032년 9.4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
 - ▶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9%에서 2032년 60.5%로 상승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23년 286.2조원(GDP 대비 12.9%)에서 2032년 364.2조원(11.4%)으로 연평균 2.7% 증가 전망
 - (2023년) 세수 결손 규모와 정부의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망
 - (2024년) 2024년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
 - (2025~2032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표 2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07.6	655.2	689.3	724.2	756.6	787.8	820.3	853.4	887.1	921.4	4.7
(GDP 대비 비율)	(27.5)	(28.4)	(28.5)	(28.5)	(28.5)	(28.6)	(28.6)	(28.7)	(28.8)	(28.8)	
의무지출	321.3	346.5	373.8	401.8	427.4	451.7	477.2	503.4	530.1	557.3	6.3
(GDP 대비 비율)	(14.5)	(15.0)	(15.4)	(15.8)	(16.1)	(16.4)	(16.7)	(16.9)	(17.2)	(17.4)	
(총지출 대비 비중)	(52.9)	(52.9)	(54.2)	(55.5)	(56.5)	(57.3)	(58.2)	(59.0)	(59.8)	(60.5)	
복지 분야	157.3	173.3	188.8	204.2	219.6	232.6	247.5	262.8	278.6	294.7	7.2
공적연금	70.7	78.6	87.7	96.6	105.9	112.4	121.1	130.0	139.7	149.5	8.7
사회보험	35.2	37.2	40.4	43.1	45.7	48.4	51.2	53.8	55.9	58.2	5.7
공공부조	37.6	40.8	43.7	46.9	49.7	52.8	55.5	58.4	61.5	64.7	6.2
기타	13.8	16.6	17.0	17.6	18.3	19.0	19.8	20.6	21.5	22.3	5.5
지방이전재원	133.0	137.6	147.6	158.6	167.2	176.2	184.9	193.9	203.2	213.0	5.4
이자지출	23.7	27.2	29.1	31.0	32.8	34.8	36.4	38.0	39.2	40.3	6.0
기타 의무지출	7.3	8.3	8.3	8.1	7.8	8.1	8.4	8.7	9.0	9.4	2.8
재량지출	286.2	308.7	315.5	322.4	329.2	336.1	343.2	350.0	357.0	364.2	2.7
(GDP 대비 비율)	(12.9)	(13.4)	(13.0)	(12.7)	(12.4)	(12.2)	(12.0)	(11.8)	(11.6)	(11.4)	
(총지출 대비 비중)	(47.1)	(47.1)	(45.8)	(44.5)	(43.5)	(42.7)	(41.8)	(41.0)	(40.2)	(3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36.4조원 적자(GDP 대비 △1.6%), 2024년 50.6조원 적자(△2.2%), 2032년 34.7조원 적자(△1.1%)로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23년 49.8조원 흑자(GDP 대비 2.3%)에서 2032년 24.5조원 흑자(0.8%)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6.2조원 적자(GDP 대비 △3.9%), 2024년 99.9조원 적자(△4.3%), 2032년 59.2조원 적자(△1.8%)로 전망
 - 2027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3.0% 미만 유지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통합재정수지	-36.4	-50.6	-39.9	-40.9	-39.8	-38.2	-37.3	-36.7	-35.9	-34.7
(GDP 대비 비율)	(-1.6)	(-2.2)	(-1.6)	(-1.6)	(-1.5)	(-1.4)	(-1.3)	(-1.2)	(-1.2)	(-1.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8	49.3	45.7	42.5	39.3	38.4	35.6	32.6	28.8	24.5
(GDP 대비 비율)	(2.3)	(2.1)	(1.9)	(1.7)	(1.5)	(1.4)	(1.2)	(1.1)	(0.9)	(0.8)
관리재정수지	-86.2	-99.9	-85.7	-83.3	-79.1	-76.6	-72.9	-69.3	-64.6	-59.2
(GDP 대비 비율)	(-3.9)	(-4.3)	(-3.5)	(-3.3)	(-3.0)	(-2.8)	(-2.5)	(-2.3)	(-2.1)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2023년 1,094.6조원(GDP 대비 49.5%)에서 2032년 1,865.4조원(58.3%)으로 연평균 6.1% 증가
 - ▶ 적자성 채무는 2023년 683.8조원(GDP 대비 30.9%)에서 2032년 1,324.0조원(41.4%)으로 연평균 7.6%, 금융성 채무는 2023년 410.8조원(GDP 대비 18.6%)에서 2032년 541.4조원(16.9%)으로 연평균 3.1%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3년 34.2조원(GDP 대비 1.5%)에서 2032년 36.4조원(1.1%)으로 연평균 0.7% 증가

표 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128.8	1,203.2	1,292.4	1,379.3	1,463.2	1,555.0	1,647.4	1,736.6	1,821.6	1,901.8	6.0
(GDP 대비 비율)	(51.1)	(52.2)	(53.4)	(54.3)	(55.2)	(56.4)	(57.5)	(58.4)	(59.0)	(59.4)	
중앙정부 채무(A)	1,094.6	1,170.4	1,261.1	1,349.1	1,433.0	1,523.6	1,614.8	1,702.8	1,786.5	1,865.4	6.1
(GDP 대비 비율)	(49.5)	(50.8)	(52.1)	(53.2)	(54.1)	(55.3)	(56.4)	(57.3)	(57.9)	(58.3)	
적자성 채무	683.8	766.7	837.6	912.8	984.0	1,057.2	1,130.4	1,199.8	1,264.7	1,324.0	7.6
(GDP 대비 비율)	(30.9)	(33.3)	(34.6)	(36.0)	(37.1)	(38.3)	(39.5)	(40.3)	(41.0)	(41.4)	
금융성 채무	410.8	403.7	423.5	436.3	449.0	466.4	484.4	502.9	521.8	541.4	3.1
(GDP 대비 비율)	(18.6)	(17.5)	(17.5)	(17.2)	(16.9)	(16.9)	(16.9)	(16.9)	(16.9)	(16.9)	
지방정부 순채무(B)	34.2	32.8	31.3	30.1	30.2	31.4	32.6	33.8	35.1	36.4	0.7
(GDP 대비 비율)	(1.5)	(1.4)	(1.3)	(1.2)	(1.1)	(1.1)	(1.1)	(1.1)	(1.1)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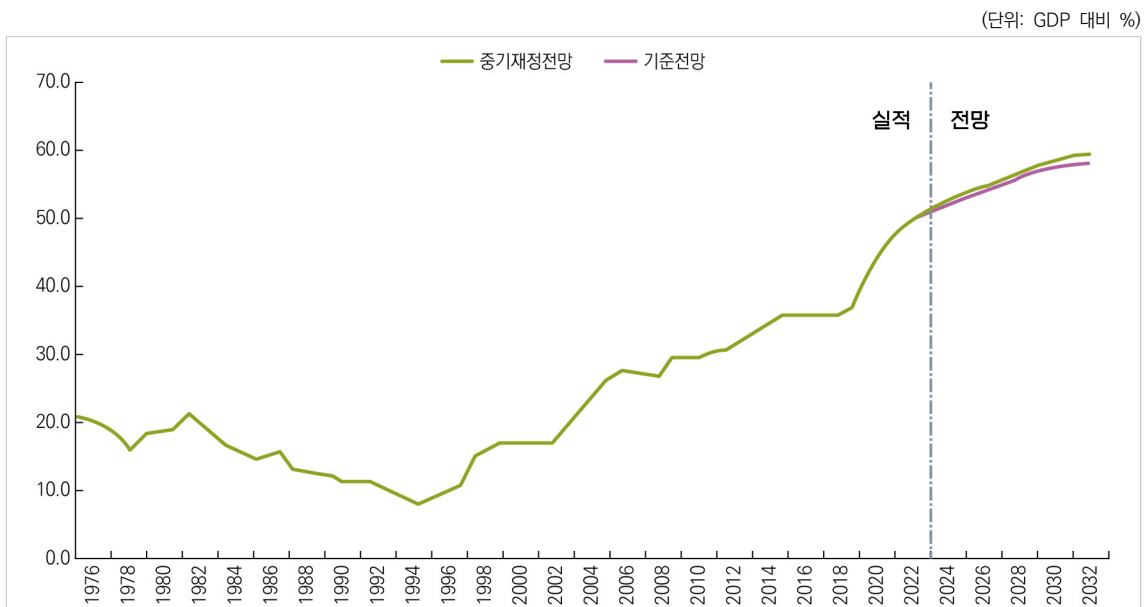
3.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기준전망과 재정전망 비교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 비교

- (총수입)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총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0.4~0.9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총 5.1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 (총지출)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1.9~4.8조원 크며, 10년 동안 총 29.5조원 클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30.4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29.7조원 클 것으로 전망(GDP 대비 비율은 2032년 기준 0.9%p 상승)

그림 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전망 비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2027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3.9~△2.5% 수준 유지,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53.0%로 전망

-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
 - ▶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2022. 7. 7.) 등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이하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2%로 축소

표 5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2025 계획	2026 계획	2027 계획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3.7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23.2	444.9	2.7
국세외수입	225.2	244.7	260.2	268.8	277.4	5.4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5.0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2.0
통합재정수지	-13.1	-44.8	-22.9	-19.2	-14.6	
(GDP 대비 비율)	(-0.6)	(-1.9)	(-0.9)	(-0.7)	(-0.5)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GDP 대비 비율)	(-2.6)	(-3.9)	(-2.9)	(-2.7)	(-2.5)	
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GDP 대비 비율)	(50.4)	(51.0)	(51.9)	(52.5)	(53.0)	
경상GDP 성장률	4.0	4.9	4.6	4.4	4.2	

주: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임(경상GDP 성장률은 2023년의 경우 본예산 확정 시 4.0%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3.4%로 조정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9.

-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총수입은 5년 동안 88.3조원 작으며, 총지출은 4.9조원 큰 수준
 - ▶ 이러한 차이는 총수입의 경우 국세수입의 전망 차이, 총지출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의 재추계(9. 17.)를 기준으로 하면, 총수입은 NABO가 정부보다 5년 동안 29.3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 ▶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이전재원도 달라지므로 NABO와 정부의 의무지출 차이는 1.6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

- 총수입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고, 총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76.5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음

표 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본예산	세수재추계					본예산	세수재추계
총수입	-54.5	4.6	-7.5	-12.2	-8.6	-5.5	-88.3	-29.3
국세수입	-60.2	-1.1	-6.0	-10.9	-6.6	-6.1	-89.8	-30.7
국세외수입	5.7		-1.6	-1.3	-2.0	0.6	1.5	
총지출	-31.2		-1.7	4.9	13.1	19.7	4.9	
의무지출	-19.0	3.5	-1.7	0.5	7.8	13.9	1.6	24.0
복지 분야	2.6		0.7	8.1	13.6	20.0	45.0	
지방이전재원	-22.4	0.0	-2.2	-7.1	-4.5	-4.2	-40.4	-18.0
이자지출	0.8		-0.1	-0.5	-1.3	-1.9	-3.0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12.2		0.0	4.4	5.3	5.8	3.3	
통합재정수지	-23.3		-5.9	-17.0	-21.7	-25.2	-93.1	
(GDP 대비 비율)	(-1.0)		(-0.3)	(-0.7)	(-0.9)	(-1.0)		
관리재정수지	-28.0		-7.9	-13.5	-13.8	-13.3	-76.5	
(GDP 대비 비율)	(-1.3)		(-0.4)	(-0.6)	(-0.6)	(-0.5)		
국가채무	-5.6		7.0	19.1	32.5	45.6		
(GDP 대비 비율)	(0.7)		(1.2)	(1.5)	(1.8)	(2.2)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기준이며, 음영 부분은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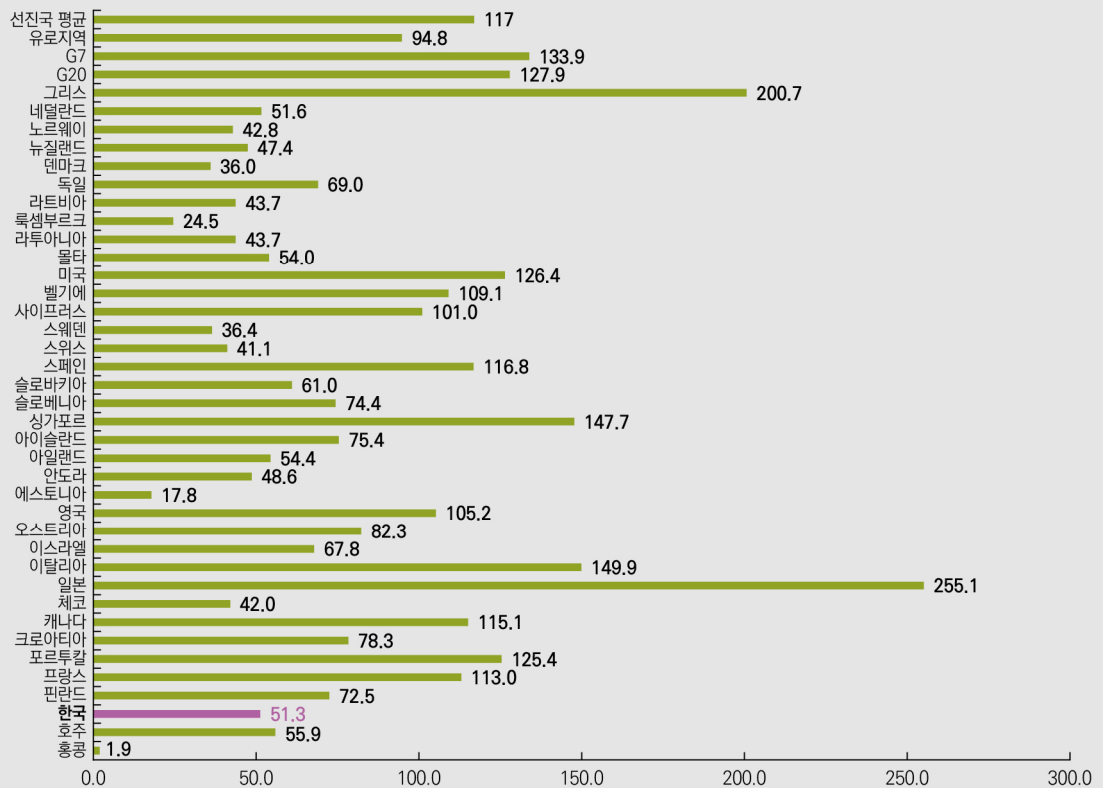
- (복지 분야 의무지출 계획의 적정성) 중기재정전망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동안 45.0조원 크게 전망
 -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전망은 과거 추세와 2024년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
 -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2023~2027년 동안 연평균 6.6% 수준으로 NABO 중기재정전망의 8.7%보다 낮은 수준
 - ▶ 하위 항목별로 보면,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공적연금 25.1조원, 사회보험 10.9조원, 공공부조는 9.0조원 큼
 - ▶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에서 발생

-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부터 $\Delta 3\%$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
 - ▶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나, 중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를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
 - ▶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이 정부보다 작고 의무지출은 크기 때문에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계획된 정부의 재량지출을 반영하더라도 2025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Delta 3\%$ 초과

[참고]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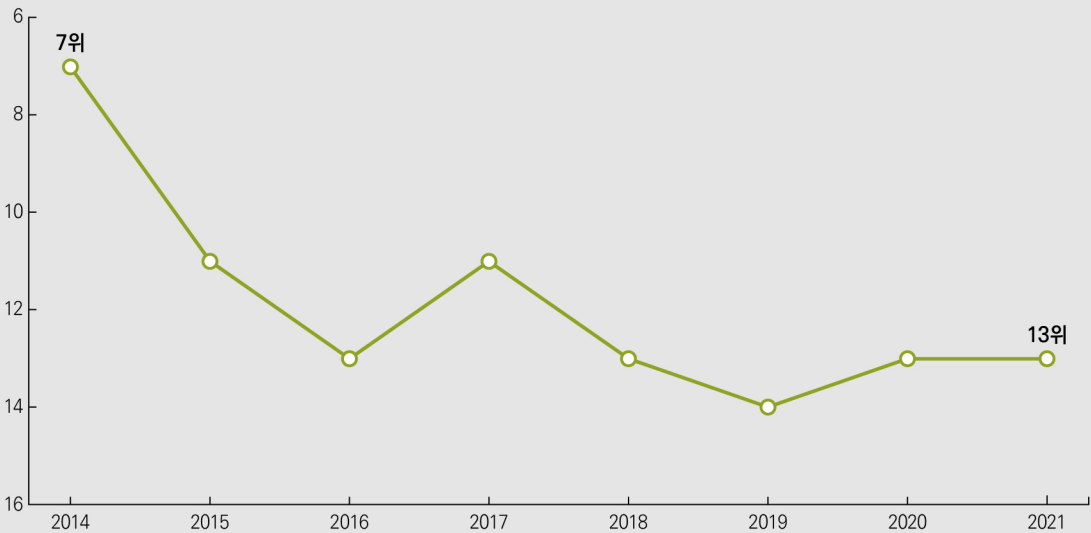
-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현황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괄
 -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이며, 포괄범위 상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 10.

-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103.7%에서 2019년 104.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2.9%, 2021년 117.0% 수준
 - 한국의 경우 2014년 39.7%에서 2019년 4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48.7%, 2021년 51.3%
 - 한국의 부채 비율 순위는 2014년 기준 7위로 선진국 37개국* 중 일곱 번째로 부채 비율이 좋았으나 (낮았으나), 2021년에는 13위로 하락
- *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에는 총 41개국이 포함되나, 부채 비율 자료는 마카오, 푸에르토리코, 산마리노, 타이완 제외



자료: IMF의 Fiscal Monitor(2023.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남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7)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과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를 시행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¹⁾이며, 고용보험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²⁾와 취업촉진수당³⁾으로 구분됨
 - ▶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2020년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 정부가 2017년과 2020년에 로드맵을 발표한 이유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보장기능을 확대하고,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그림 1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판 고용노동백서」, 2023.7., p.608.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백서」, 2022.5

2) 구직급여 이외에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의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제도가 있음

3)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로 구분됨

본고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OECD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함

- ▶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언론 등에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고에서의 논의 대상은 구직급여에 한함
- 참고로, 2024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획안 총 11조 9,782억원 중 구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9%(10조 9,144억원)에 달함

2. 개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에 근거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 현행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이직일⁴⁾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⁵⁾ ①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실업상태⁶⁾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⁷⁾ 법률에 규정된 ②지급단가를 일정한 ③지급기간 동안 ④실업의 인정을 받아 지급

① (지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

-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제 보수가 지급된 기간(유급휴일 등 포함)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은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5일 근무와 유급휴일을 고려할 경우 약 7개월의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 피보험단위기간은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후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 단, 자발적 이직⁹⁾,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을 의미함

5)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6)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7)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위 3가지 사항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있음

8) 기준기간을 의미함

9)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제도의 성격상 자발적 이직은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백서」, 2022.5, p.242.

- ② (지급단가) 구직급여의 지급단가인 구직급여일액(하루에 받는 구직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¹⁰⁾
- ▶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르게 결정되는데, 이 중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¹¹⁾에 규정되며,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4년 40,000원에서 2023년 66,000원으로 인상되었음
 -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37,512원에서 2023년 61,568원으로 증가함
 - ▶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수는 2014년 33만명에서 2022년 기준 34만명으로 큰 변화없이 유사한 수준이며,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수는 2014년 79.5만명에서 2022년 119.2만명으로 크게 증가함

표 1 구직급여일액 추이

(단위: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한액	40,000	43,000	43,416	50,000	60,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하한액	37,512	40,176	43,416	46,584	54,216	60,120	60,120	60,120	60,120	61,568

주: 하한액은 당해연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표 2 구직급여일액별 수급자 추이

(단위: 천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한액	329	326	319	283	224	203	320	356	341
상한액~하한액	64	51	23	22	57	61	88	96	98
하한액	795	831	859	891	1,034	1,180	1,295	1,323	1,192
합계	1,189	1,208	1,201	1,197	1,315	1,444	1,703	1,775	1,631

자료: 고용노동부

- ③ (지급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하여 지급

10)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표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자료: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 ④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¹²⁾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을 갖춘 구직자가 1~4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일자에 대해 지급¹³⁾

2022년 구직급여는 163만명을 대상으로 10조 9,105억원을 집행하여 수급자 1인당 평균 914만원이 지급¹⁴⁾

-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구직급여의 소득보장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도 증가한 결과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역할이 매년 강화되어옴
 - ▶ 구직급여의 지급인원은 2014년 119만명에서 2022년 163만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2014년 418만원에서 2022년 914만원으로 증가

표 4 구직급여 지급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천명)	1,189	1,208	1,201	1,197	1,315	1,444	1,703	1,775	1,631
지급액(억원)	39,769	43,823	46,862	50,249	64,549	80,917	118,556	120,625	109,105
1인당지급액(천원)	4,181	4,573	4,929	5,326	6,111	7,136	8,865	9,307	9,136

주: 1. 1인당 지급액은 해당연도 수급종료자 기준 1인당 지급액

2. 구직급여 지급인원에는 자영업자 제외,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별도 표시

3. 구직급여 연도별 지급인원은 중복될 수 있음('21.11월~'22.2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연도의 지급인원으로 집계됨)

자료: 고용노동부

12)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3)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백서」, 2022.5

14) 참고로, 2020년 6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도입된 한국형실업부조의 경우 2022년 기준 31만명에게 5,870억원 지급

3. 입법동향

제21대 국회(2023.12.7. 기준)에서 발의된 구직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하향 등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이직자,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 지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연령 상향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대기기간 연장¹⁵⁾,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하향)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하향 조정,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하는 내용

표 5 구직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사각지대 축소	2106169	임이자의원 (2020.12.7.)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부담) 비율 법정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적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2107291	권명호의원 (2021.1.1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2108322	장경태의원 (2021.2.25.)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 고용보험 적용
	2113288	윤준병의원 (2021.11.12.)	-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 설정
	2113968	이웅선의원 (2021.12.17.)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인한 이직(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
	2115881	김태년의원 (2022.6.10.)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구직급여 지급
	2118225	이주환의원 (2022.11.11.)	-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소정급여일수는 소멸하지 않고, 유예하여 지급 - 플랫폼 노무제공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사업이 아닌 노무제공플랫폼 단위로 변경) - 플랫폼종사자 기준보수 미적용
	2118888	김영진의원 (2022.12.12.)	-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소정근로시간¹⁶⁾ 조건 삭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2119110	김승남의원 (2022.12.23.)	농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

15)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2121808	김경협의원 (2023.5.25.)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2123109	용혜인의원 (2023.7.6.)	•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2112065	장철민의원 (2021.8.13.)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감액
	2113119	정부 제출 (2021.11.3.)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
	2113872	윤준병의원 (2021.12.13.)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감액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 대기기간 연장
	2120273	홍석준의원 (2023.2.24.)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한
	2123265	김학용의원 (2023.7.14.)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하향	2122318	홍석준의원 (2023.5.26.)	•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최저구직급여일액 삭제 • 장기근로자 및 50세 이상 근로자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2123265	김학용 의원 (2023.7.14.)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구직급여 일액) 하향
기타	2119932	최강욱의원 (2023.2.9.)	•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초일액 산정
	2124752	고영인의원 (2023.9.26.)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

주: 1. 2023년 12월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2. 기시행되었거나 대안반영폐기된 안건은 제외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265호)은 반복수급자와에 대한 지급 제한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하향에 중복 작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해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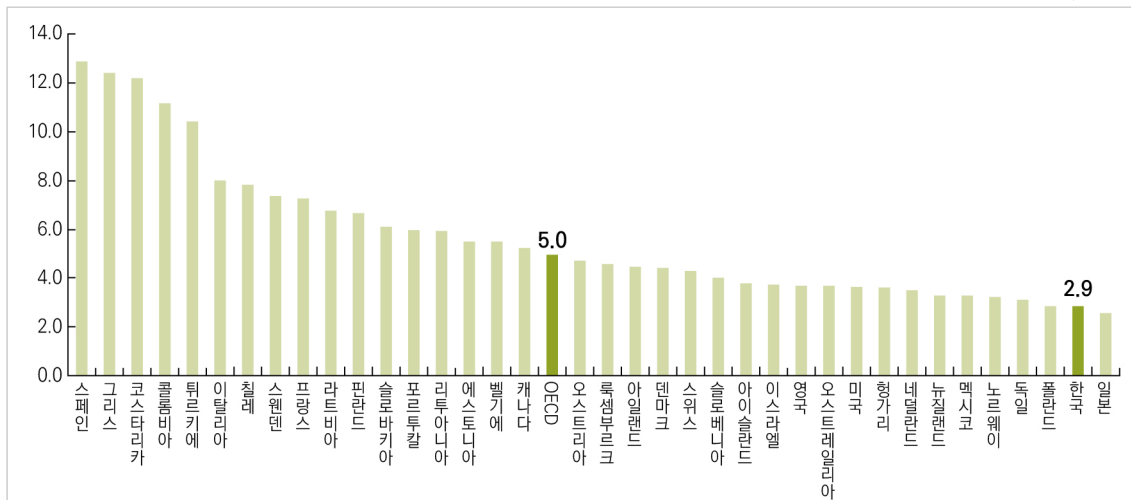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현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국가에 해당

-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9%로 OECD 평균(5.0%)에 비해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2.6%), 폴란드(2.9%) 등과 함께 3% 이하의 실업률을 기록
 - 연령별로는 15~24세는 7.0%이고, 25~54세는 2.7%, 55~64세는 2.2%로 나타남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그림 2 OECD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자료: OECD.STAT(2023.12.1. 추출)

표 6 OECD 및 우리나라의 실업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KOREA	3.5	3.6	3.7	3.7	3.8	3.8	3.9	3.7	2.9
15~24	10.0	10.5	10.7	10.3	10.5	10.4	10.5	8.5	7.0
25~54	3.3	3.2	3.4	3.5	3.6	3.5	3.7	3.3	2.7
55~64	2.5	2.8	2.8	2.5	2.9	3.0	3.3	3.3	2.2
65세 이상	2.1	2.4	2.3	2.8	2.9	3.2	3.6	3.8	-
OECD	7.4	6.9	6.5	5.9	5.5	5.4	7.1	6.2	5.0
15~24	15.5	14.3	13.4	12.5	11.8	11.9	15.2	12.8	10.9
25~54	6.8	6.3	5.9	5.4	5.0	4.9	6.5	5.6	4.5
55~64	5.2	4.9	4.7	4.3	4.0	3.8	5.3	4.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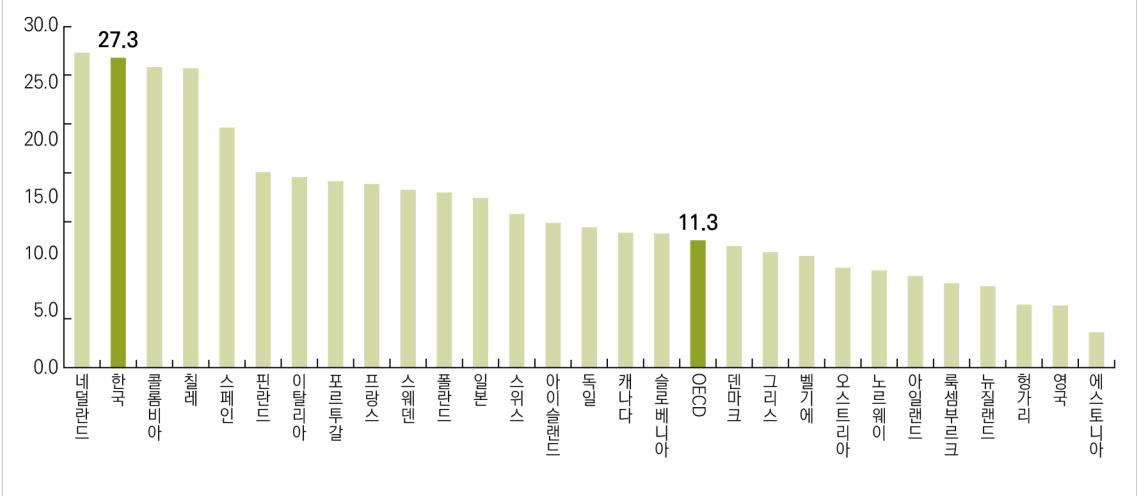
자료: 1. OECD.STAT(2023.12.1. 추출)

2.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22(KOREA)

-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27.3%로 OECD 평균(11.3%)에 비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연령별로는 15~24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33.8%이며, 65세 이상은 70.0%로 나타남
 - 15~24세, 25~54세 근로자의 경우 실업률과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
 - 55~64세 근로자의 실업률은 2.2%로 OECD 평균(11.3%)에 비해 저조하지만, 임시직 종사자 비율이 34.4%로 OECD 평균(8.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OECD 주요국의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단위: %)



자료: OECD.STAT(2023.12.1. 추출)

표 7 OECD 및 우리나라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KOREA	21.6	22.2	21.9	20.6	21.2	24.4	26.1	28.3	27.3
15~24	25.8	27.0	25.7	22.8	26.2	30.1	31.7	34.9	33.8
25~54	16.4	16.8	16.3	15.1	15.0	17.4	18.6	20.3	19.1
55~64	33.9	34.0	32.7	30.4	30.4	33.2	34.1	36.6	34.4
65세 이상	61.3	59.6	58.8	58.4	62.2	68.0	69.0	70.9	70.0
OECD	12.1	12.2	12.2	12.2	12.3	12.1	11.4	11.8	11.3
15~24	25.6	25.8	25.9	26.2	25.3	25.2	23.7	25.0	25.3
25~54	10.2	10.4	10.3	10.3	10.3	10.1	9.6	9.8	9.1
55~64	8.6	8.6	8.6	8.5	9.0	9.0	8.7	8.8	8.6
65세 이상	17.2	16.8	16.7	16.3	19.0	19.8	16.6	17.3	17.1

자료: OECD.STAT(2023.12.2. 추출)

- 우리나라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5년으로 OECD 평균(약 8년)에 비해 낮은 수준¹⁷⁾¹⁸⁾

17) 2014~2019 평균
18) OECD,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2023.5., p.12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최소 가입기간 및 최대 지급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단가는 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가입기간)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80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며, 우리나라보다 최소 가입기간이 짧은 나라는 프랑스, 미국, 아이슬랜드 정도임¹⁹⁾
- (최대 지급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음²⁰⁾
 - ▶ 오스트리아 9개월, 캐나다 10.4개월(45주), 일본 3~12개월, 프랑스 24개월, 독일 12개월,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노르웨이 24개월, 스웨덴 13.8개월(60주), 스위스 18개월, 덴마크 3년간 24개월²¹⁾
- (지급단가) 우리나라 구직급여제도의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임
 - ▶ 오스트리아 55%, 미국 53%, 캐나다 55%, 일본 50~80%, 프랑스 57~75%, 독일 60%, 포르투갈 65%, 스페인 50~70%, 네덜란드 70~75%, 노르웨이 80%, 스웨덴 70~80%, 스위스 70%, 덴마크 90%

표 8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단위: 개월)

지급기간						
한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9	9	24	9	24	12	10.4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일본	에스토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24	3	12	3~12	12	13.8	9
덴마크	튀르키예	스위스	칠레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24(in 3years)	10	18	11	18	24	24
영국						
6						
지급단가						
한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60%	20%	70~75%	60~80%	57~75%	60%	55%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일본	에스토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50~70%	60%	60%	50~80%	40~60%	70~80%	55%
덴마크	튀르키예	스위스	칠레	포르투갈		
90%	40%	70%	20~50%	65%		

주: 1. 22년간 중단없이 근속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40세 미혼 근로자 기준

2. 22년간 중단없이 근속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40세 미혼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이므로, 다른 근로자 그룹의 경우에는 지급기간과 지급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TaxBEN 2022 Policy tables

1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공용분야)」, 2022.12.

20) OECD는 주요국의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공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각국의 22년간 중단없이 근속한 40세, 자녀가 없고 미혼인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이므로 다른 근로자 그룹의 경우에는 지급기간과 지급단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기준으로 각국의 구직급여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로, 해당 자료는 각 국가의 구직급여 제도에 있는 특례조항(조기재취업에 대한 특례조항, 연령에 따른 우대,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에 대한 우대 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21) OEC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2022.

- (상·하한액 재설정) 우리나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8%로 스웨덴 및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하한액은 44%로 나타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4%p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²²⁾
 - ▶ 우리나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이 사실상 균일 요율(flat-rate)에 가까운 이유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에 연동되기 때문임²³⁾

표 9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비율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상한액 비율						
한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벨기에	키프로스
48%	54%	104%	46%	226%	63%	63%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일본	에스토니아	스웨덴	폴란드
50%	40%	110%	38%	131%	48%	24%
튀르키예	미국	칠레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35%	29%	26%	54%	20%	49%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						
한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벨기에	키프로스
44%	34%	27%	27%	26%	26%	24%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일본	에스토니아	스웨덴	폴란드
23%	23%	23%	22%	21%	19%	19%
튀르키예	미국	칠레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17.4%	12%	11%	10%	9%	—	

주: 1. 22년간 중단없이 근무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40세 미혼 근로자 기준

2. 22년간 중단없이 근무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40세 미혼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이므로, 다른 근로자 그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상한액 비율 및 하한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TaxBEN 2022 Policy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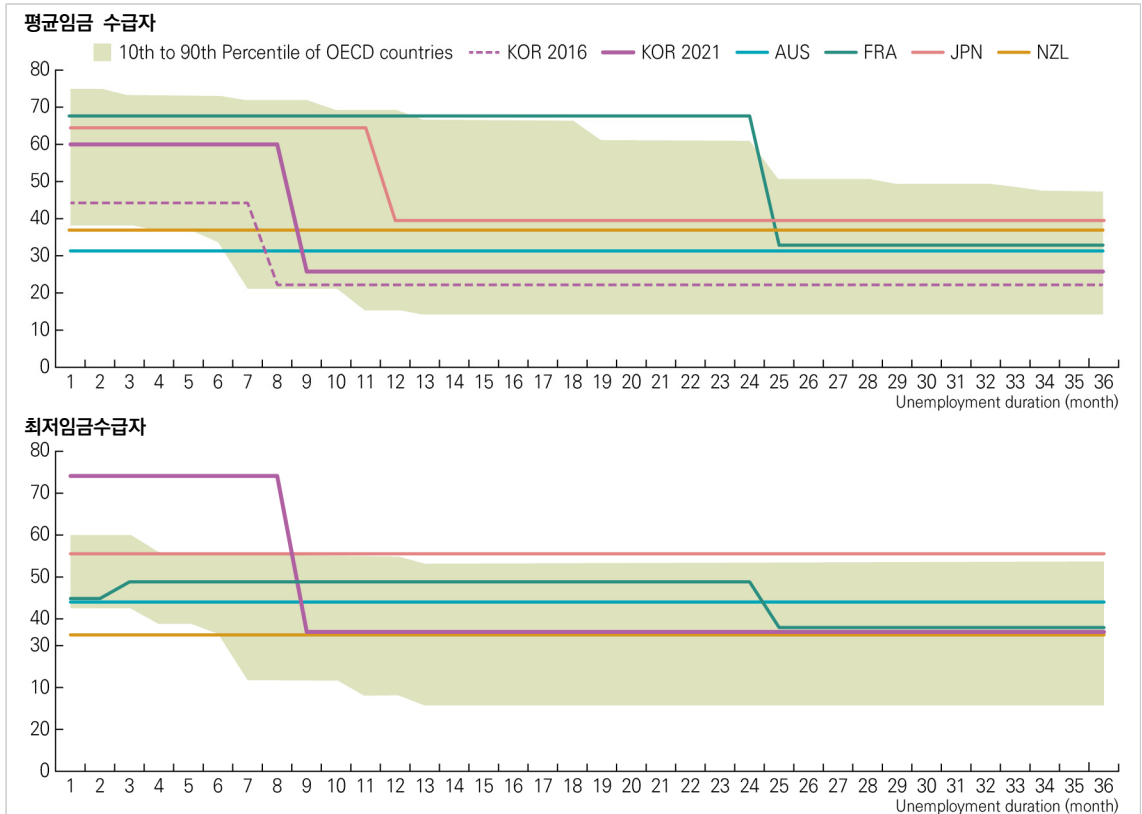
- 실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도 평균임금 수급자와 최저임금수급자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임금 수급자의 경우 실직 초기에는 다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있으나, 구직급여 종료 시점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저임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직 초기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종료 시점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22년 근속한 자녀가 없는 40세 미혼 근로자 기준이므로, 다른 근로자 그룹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음

23)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9, p.69.

"Unemployment benefits are effectively flat-rate, unlike in any other OECD country. The ceiling is close to the OECD average, and broadly equivalent to ceilings in Sweden and Denmark, whereas the high floor makes Korea the only country in the OECD where all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gain more than their net minimum wage."

그림 4 실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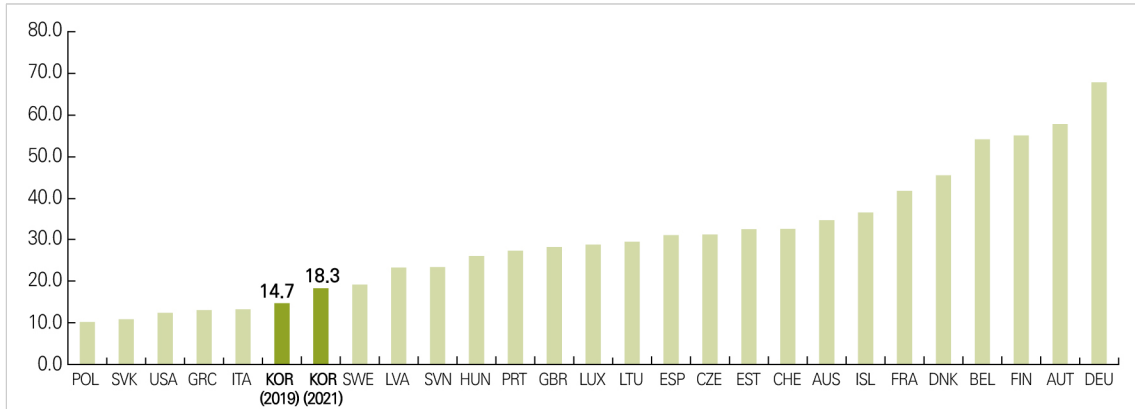


자료: OECD,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2023.5., p.35

-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직자 대비 실업급여 보장률은 2019년 기준 약 15%에서 2021년에는 18%로 2년 만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측면이 있음
 - 2019년 대비 2021년의 증가폭은 「고용보험법」 개정²⁴⁾을 통한 실업보험 제도의 소득보장기능 강화에 기인
 - 2020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24)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개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 등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개정 →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개정 →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

그림 5 구직자 대비 실업급여 보장률



주: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 자료에 의한 실업급여 보장률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업급여 보장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림 5]는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므로, 실제 지급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설문 조사의 답변 대상이 되기 때문임

자료: OECD,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2023.5., p.26

- (사각지대 축소)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에서 구직급여의 협소한 적용범위(insurance coverage)와 잦은 실업 상태의 조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다시 취업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끄는 유인이 되며, 이는 열악한 일자리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ur market duality)²⁵⁾를 영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²⁶⁾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를 목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험 가입률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2022년 기준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전체 91.8%, 정규직 94.6%, 비정규직 80.7%²⁷⁾
 - * 연도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70.9%('19.8)→72.6%('20.8)→75.2%('21.8)→77.0%('22.8)→77.0%('23.8)²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기준 42,6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²⁹⁾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569만명³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조한 수준³¹⁾

25)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2023. p.278.

26)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9, p.62

"Low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combined with frequent unemployment, makes matching people with jobs harder because uninsured jobseekers are compelled to accept any available job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ereby contributes to perpetuate poor quality jobs and labour market duality."

2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5

2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12.4. 추출)

2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급여 지급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명)	16,985	16,404	16,772	16,455	18,265	22,529	30,629	36,859	42,643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명)	1,476	1,290	1,148	1,068	1,170	1,166	1,495	2,056	2,575

자료: 가입자 및 수급자수: 고용노동부

30) 경제활동인구조사(2023.12.6. 추출)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 방식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자영업 근로자의 실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²⁾

표 1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형

가입유형	국가	주요 내용
자발적 가입	오스트리아	9년 주기로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 시작 첫해 가입하지 못한 경우 8년 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독일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음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캐나다	임의가입,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기여 비례 급여
의무가입	체코, 헝가리, 폴란드	1990년대 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도입 초기부터 자영업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슬로베니아	2011년까지는 자발적 가입 방식이었으나 노동시장 제도 개혁을 통해 의무가입으로 바뀜
	포르투갈	자영업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coverage rule을 적용하고 있음
	스웨덴	〈기초〉 당연적용,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 정액급여 〈소득연동〉 임의가입,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 기여 비례 급여
	영국	저소득 자영업자는 정액 보험료·급여,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정액급여
	프랑스	근로자·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고용보험료 없음), 정액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기여비례급여, 근로자·자영업자 보험료를 동일

자료: 1.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자료: 김문정,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조세재정 BRIEF, 2018.05.25.

2.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12.23.

OECD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의 개선에 대해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의 재설정, 수급기간의 연장,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함

- 2018년 OECD는 고용보험 가입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실업급여 지급단가의 상·하한액 원칙의 재설정 등을 제안하였고,³³⁾ 이후 2022년³⁴⁾과 2023년³⁵⁾에도 구직급여 상·하한액 재설정, 최대 수급기간의 연장, 사각지대 축소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 OECD는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대 수급기간이 짧고,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협소하므로 사각지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권고

31) 참고로, 자영업자 중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음(「고용보험법」 제77조의6)

32)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9, p.63.

"Several OECD countries have mandatory unemployment insurance registration for self-employed workers, including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Iceland, Luxembourg, Slovenia, and Greece."

33) 김문정,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조세재정 BRIEF, 2018.05.25

34)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9, pp.62-63.

"Reducing the EI floor to the OECD average level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by capping it at a lower share of the minimum wage, while moderately increasing the maximum dur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s which is relatively short by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same time, a moderate increase in the ceiling can also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insurance function of the system."

35) OECD,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2023.5.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수급기간 연장 등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조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

-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제도의 지급단가는 OECD 주요국과 유사하지만, 가입기간 및 지급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제도 내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상한액-하한액 재설정, 지급기간의 연장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구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와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 감액, 최장구직급여일액 삭제 등 구직급여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한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 (사각지대 축소) 현재 정부는 2020년 이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험 가입률의 차이, 저조한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적극 축소할 필요
 - ▶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의 경우 단기간 취업한 이후 적극적인 구직노력 없이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행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반복수급이 제한될 경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일부의 행태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반복수급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 입·퇴직을 반복해야만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³⁶⁾ 반복수급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환경과 보험원리를 고려할 때, 비자발적 이직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³⁷⁾ 체계적이고 신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구직급여 하한액 하향) 구직급여 하한액 하향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 제고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수급자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구직급여의 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하한액 하향과 함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부양 가구원 1인당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 등³⁸⁾ 보완적 조치를 마련하거나, OECD 주요국에

3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273호)」, 2023.4. p.5.

37)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비자발적 실직을 양산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험요율제(experience rate system)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119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2113122호)을 제출한 바 있음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고용분야)」, 2022.12., p.68.

3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고용분야)」, 2022.12., p.61.

비해 저조한 수준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과의 연동 등 다양한 정책적 조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구직급여 제도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나, 오히려 구직급여 제도가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우려³⁹⁾와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수준이나 지급기간이 관대한 서구 유럽의 경우 실업인정제도(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⁴⁰⁾을 참고하여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성숙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구직급여에 대한 입법동향 및 OECD의 권고사항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하한액의 하향(최저구직급여일액 삭제), 반복수급의 제한, 대기기간 연장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지급기간의 연장 등은 구직급여 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므로, 다양한 정책변수를 고려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39) OECD,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2023.5., p.12

"Although Korea has among the lowest rates of long-term unemployment in the OECD, overly generous out-of-work benefits may entrench long-term unemployment."

40) 김진선, 「자발적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이슈와 논점 제177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12.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김 우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1. 분석 배경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동 제도 확대를 포함하였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출산크레딧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음

-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이력자 포함)에게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권 취득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
 - 둘째가 있는 경우 12개월, 셋째가 있는 경우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부모가 모두 해당 자녀로 인해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에게 균등하게 할당하되, 부모가 합의하는 경우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음
 - 추가 가입기간의 소득은 해당 시점의 A값¹⁾을 적용
 - 현재 소요재정의 30%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70%는 국민연금기금 재정으로 충당

표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수별 추가가입 인정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대한 추가 인정기간	12	18	18	2
구 분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자녀 수별 인정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만 적용)	12	30	48	50

주: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가 출산·입양된 경우에는 18개월이 인정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부터 출산·입양하여 3자녀까지 둔 경우에는 총 30개월이 인정됨(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넷째 자녀가 출산·입양된 경우에는 18개월+18개월=36개월 인정)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기간에 제한 없이 출산 시점에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 발표

1) 국민연금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가리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2023년 11월 16일 최종보고에서 첫째 자녀부터 최소 24개월을 출산 시점에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

21대 국회(2020년~2023년 11월) 중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계류 중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회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의 대상 범위 및 기간, 지원 시점, 재원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2 출산크레딧 개선안의 주요 이슈

구 분	현행	주요 이슈
대상·기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몇째아부터 지원할 것인가? 몇 개월씩 지원할 것인가?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원 시점	노령연금 수급 시점	출산 시점에 지원할 것인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지원할 것인가?
재원	국고 30%, 기금 70%	국고 지원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출산크레딧 제도 현황

출산크레딧은 제도 도입 해인 2008년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사람 중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자가 있어 그 해부터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수는 2008년 3명에서 2022년 4,269명까지 지속 증가

- 2022년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269명 중 남성 수급자가 4,183명(98.0%)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
 - 수급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이유 중 하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남성 수급자(2022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62.6%가 남성)인 것에 기인
 - 수급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것의 또 다른 이유로는 부부 동시 수급 시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로 인해 부(父)의 가입기간에 크레딧을 산입하는 것이 더 많은 수급액 증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22년 기준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분할연금 제외²⁾) 대비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비율은 남성이 0.124%, 여성이 0.004%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

2) 분할연금 수급자는 출산크레딧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에서 분할연금은 제외

표 3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추이(성별)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	14	24	42	103	139	287	411	626	888	997	1,354	2,067	2,959	4,269
남성	3	14	24	42	103	139	285	408	622	880	986	1,335	2,028	2,902	4,183
여성	0	0	0	0	0	0	2	3	4	8	11	19	39	57	86

자료: 국민연금공단

-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를 노령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중 2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 중 출산크레딧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미만 가입자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2022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 후 노령연금을 수급한 사람(95만 8,083명) 중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비중은 0.17%였고, 20년 미만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233만 4,973명) 중 출산크레딧 수급자 비중은 0.07%로 나타남

표 4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추이(노령연금 유형별)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	14	24	42	103	139	285	411	626	888	997	1,354	2,067	2,959	4,269
20년 이상 가입	1	2	3	7	13	16	36	75	130	221	232	347	647	1,087	1,674
20년 미만 가입	2	5	9	18	43	45	107	164	287	414	458	614	894	1,217	1,708
조기	0	5	10	14	42	73	132	162	200	244	298	385	516	645	878
특례	0	2	2	3	5	5	10	10	9	9	9	8	10	10	9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기준 출산크레딧에 따른 평균 추가 산입기간은 17개월(전체 가입기간의 6.8%)이며, 출산크레딧에 의해 증액되는 평균 월 연금액은 3만 8천원(전체 연금액의 5.1%) 수준

- 출산크레딧에 의해 산입되는 기간과 증액되는 평균 급여액이 전체 가입기간과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증가하는 반면 출산·입양하는 아이 수는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5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및 월노령연금액 대비 출산크레딧 산입의 효과

(단위: 개월, 천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가입기간(A)	231	188	186	192	201	216	213	218	221	227	228	233	236	244	249
출산크레딧에 의한 평균 산입기간(B)	18	17	19	17	19	19	18	19	19	18	18	18	18	18	17
B/A	7.8	9.0	10.2	8.9	9.5	8.8	8.5	8.7	8.6	7.9	7.9	7.7	7.6	7.4	6.8
평균 월 노령연금액(C)	417	424	445	462	504	529	526	535	549	588	598	631	655	699	745
출산크레딧에 의한 연금급여 증액분(D)	17	23	30	29	32	33	32	35	35	35	36	36	36	37	38
D/C	4.2	5.4	6.6	6.4	6.3	6.1	6.0	6.5	6.4	6.0	6.0	5.8	5.5	5.4	5.1

주: 평균 가입기간 및 월 노령연금액은 모두 출산크레딧에 의한 추가 산입을 포함한 수치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2년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본인 가입기간 및 연금액 대비 출산크레딧의 효과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출산크레딧에 의해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자녀수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수급자일수록 본인의 전체 가입기간 및 평균 월 노령연금액 대비 출산크레딧에 의한 산입기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표 6 2022년 성별·노령연금 유형별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출산크레딧 산입의 효과

(단위: 명, 개월, 천원, %)

구 분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평균 가입기간 (A)	출산크레딧에 의한 평균 산입기간(B)	(B/A)	평균 월 노령연금액(C)	출산크레딧에 의한 연금급여 증액분(D)	(D/C)
전 체	4,269	249	17.1	6.8	745	38	5.1
남 성	4,183	250	17.1	6.8	750	38	5.1
20년 이상 가입	1,688	308	17.6	5.7	987	41	4.2
20년 미만 가입	1,622	180	16.6	9.2	506	38	7.5
조기	864	271	16.9	6.2	749	32	4.2
특례	9	130	16.7	12.8	361	38	10.5
여 성	86	203	18.5	9.1	507	42	8.2
20년 이상 가입	18	294	19.4	6.6	804	45	5.6
20년 미만 가입	54	168	18.4	11.0	407	42	10.4
조기	14	223	17.3	7.8	512	34	6.7
특례	0	0	0	0	0	0	0

주: 평균 가입기간 및 월 노령연금액은 모두 출산크레딧에 의한 추가 산입을 포함한 수치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출산크레딧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소요재정의 30%)와 국민연금기금(소요재정의 70%)으로 총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08년 40만원에서 2022년 16억 5,6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일반회계는 당해 연도에 산정된 예산액의 30%와 전전년도까지의 누적 정산금을 반영하여 지출

표 7 출산크레딧 재정투입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0.4	2.2	6	12	27	49	76	137	222	317	408	507	742	1,115	1,656
일반회계	-	2	2	3	4	8	19	33	45	116	157	177	177	199	338
국민연금기금	0.4	0.2	4	9	23	41	57	104	177	201	251	330	565	916	1,318

자료: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입법 동향 및 주요 이슈

2023년 11월 말 기준,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82건 중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편을 목적으로 발의된 건은 8건으로, 대상자 범위 및 지원 기간의 확대나 지원 시점의 변경, 국고지원 규모의 조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대상자 범위)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률안이 현행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한 명 이상인 가입자까지 포괄하는 것을 제시

표 8 출산크레딧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2101362	남인순의원	2020.07.02.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자녀부터 12개월씩 최대 50개월
2102202	김성주의원	2020.07.20.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 자녀 6개월, 둘째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2110661	최혜영의원	2021.06.07.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 지원 시점: 출산 시점
2112112	위성곤의원	2021.08.19.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 자녀 24개월, 둘째자녀부터 18개월씩 무제한 • 지원 시점: 출산 시점
2113152	이종성의원	2021.11.05.	• 국고지원 규모: 전액 지원
2113319	최혜영의원	2021.11.16.	• 지원 시점: 출산 시점 • 국고지원 규모: 전액 지원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2115248	박광온의원	2022.04.13.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 자녀부터 36개월씩 무제한 - 국고지원 규모: 일반회계 70%, 국민연금기금 30%
2118604	고영인의원	2022.12.01.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자녀 36개월, 둘째자녀부터 24개월씩 무제한 - 국고지원 규모: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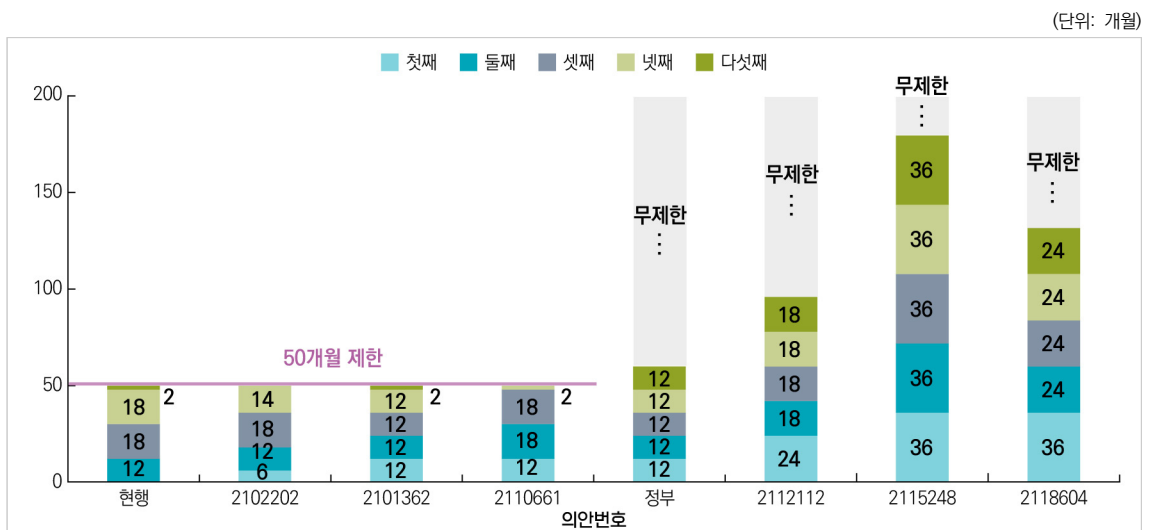
주: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출산크레딧 개편안

- 지원 대상: 첫째자녀부터 지원
- 지원 기간: 첫째자녀부터 12개월씩 무제한
- 지원 시점: 출산 시점
- 국고지원 규모: 확대 계획(구체적인 계획은 미정)

- (지원 기간) 현행 50개월 제한을 유지하는 안과 산입 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는 안으로 나뉘고, 자녀 수별로 지원 기간을 구분하는 안과 첫째자녀에 가장 많은 기간을 산입해주는 안, 첫째자녀에 가장 짧은 기간을 산입해주는 안 등으로 나뉨

그림 1 법률안별 출산크레딧 산입 기간의 차이



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안을 가리킴
 자료: 각 의안 및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원 시점)** 지원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 재원 부담 주체 등의 변경과 연결됨
 -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지원하는 방식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만 가입기간 산입 혜택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후세대가 부담하는 체계로, 이 때의 추가재정소요는 크레딧 수급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 주는 데에 따른 연금급여 증액분
 - ▶ 출산 시점 지원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일시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지원 혜택이 제공되어 수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재원은 동세대가 부담하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재정소요는 보험료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에 따라 늘어나는 급여 증액분까지 포함
 - 현행 제도는 출산크레딧의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출산 시점 지원의 경우 남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산한 여성이 지원 대상
 -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추가 산입 시 해당 기간의 소득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의 A값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출산 시점의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등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 기간의 소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확정해야 하는 상황
 - 출산 후 근로·사업소득 획득에 대한 공백기간이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보다 짧은 경우, 즉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에 근로·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 지원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의 합산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음

표 9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에 따른 변화

구 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 지원	출산 시점 지원
지원 방식	가입기간 산입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	전체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
추가 산입기간에 대한 소득 인정 수준	정책적 결정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의 A값)	정책적 결정 (예. 해당 시점의 A값 또는 출산 전 소득의 100% 등)
재원 부담 주체	후세대	동세대
추가재정소요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따른 연금급여 증액분	보험료 지원분 + 보험료 지원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급여 증액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고지원 규모)** 일부 법률안에서 현행 소요재정의 30%를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7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에서 소요재정 전액을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됨

▶ 출산크레딧의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재정소요 규모와 무관하나 재원 부담 주체가 달라짐

* 참고로,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되지 않음

표 10 출산크레딧 재원에 따른 특성

구 분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재원 부담 주체	국가(일반 납세자)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출산크레딧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가. 시나리오의 구성

재정전망 시나리오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기준선과 2025년 출생아부터 대상 범위 및 산입 기간 확대, 지원 기간 변경 등의 정책 변화를 조합하여 적용하는 10개 시나리오로 구성**

- **(기준선)** 둘째아에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에 추가 산입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재정소요를 추계
- **(시나리오)** 대상자 및 지원 기간에 따라 시나리오를 총 4개 군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계획 및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① 최대 지원 기간, ② 지원 시점을 변형한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로 구성
 - (시나리오1군)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 (시나리오2군) 첫째아는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지원
 - (시나리오3군) 첫째아는 24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무제한 지원
 - (시나리오4군) 첫째아는 36개월, 둘째아부터 24개월씩 무제한 지원

표 1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정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자 및 지원 기간	최대 지원기간	지원 시점	관련 발의안
기준선	현행 유지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현행 유지 (50개월)	현행 유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	-
(참고)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의안번호 2113319
시나리오1	1-1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의안번호 2111362
	1-2	첫째아부터 12개월씩	무제한	현행 유지
	1-3	첫째아부터 12개월씩	무제한	출산 시점
시나리오2	2-1	첫째아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현행 유지	현행 유지
	2-2	첫째아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무제한	현행 유지
	2-3	첫째아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무제한	출산 시점
시나리오3	3-1	첫째아 24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무제한	현행 유지
	3-2	첫째아 24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무제한	출산 시점
시나리오4	4-1	첫째아 36개월, 둘째아부터 24개월씩	무제한	현행 유지
	4-2	첫째아 36개월, 둘째아부터 24개월씩	무제한	출산 시점

주: 정책 변화 시점 등 재정전망 시나리오와 관련 발의안의 세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의 전제 및 방법)** 2025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³⁾의 0세 인구 추계 자료에 「인구동향조사」⁴⁾에서 제시된 2022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비중과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⁵⁾을 적용하여 모(母)의 코호트별·출산아 수별 출산자 수를 전망하고, 부(父)의 연령은 모(母)의 연령보다 3세⁶⁾가 많은 것으로 가정하여 부(父)의 코호트별·출산아 수별 출산자 수를 전망
 - ▶ 크레딧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계산
 -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소득 인정액 산출에 활용하는 국민연금 A값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도출된 값을 적용
 - ▶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 지원 시나리오)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을 적용했을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본격적인 혜택이 최초로 나타나는 시점은 2045년이므로⁷⁾ 추계기간은 2045년부터 2093년까지 48년으로 설정하고(단, 결과는 5년 단위로 제시),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의 A값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부모에게 해당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가정
 -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람의 수는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 내에서 산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제14차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본인-배우자 결합 시(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국민연금에 여성만 가입할 확률, 남성만 가입할 확률, 부부 모두 가입할 확률을 도출⁸⁾하여 이를 모형에 적용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경우 각각 50%씩 크레딧 혜택을 나누어 산입하는 것으로 가정
 - ▶ (출산 시점 지원 시나리오) 추계기간은 최초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고, 출산 시점의 국민연금 A값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출산한 여성⁹⁾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해당 시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A값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출산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가 증액되므로 지원 시점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급여 증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함께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보험료

3) 2021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4) 2023년 12월 1일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5) 기초자료의 특성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

6) 통계청의 「2022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5세이므로 본 고에서는 배우자의 연령 차이를 3세로 가정(평균 재혼연령의 경우 남성이 51.0세, 여성이 46.8세로 4.2세 차이가 나지만, 출산크레딧 혜택을 발생시키는 출산은 평균적으로 재혼보다 초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7) 부모 연령의 차이로 인해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과 “평균적인” 부모의 연령 차이(3세)를 고려했을 때, 2025년에 다섯째 이상으로 출생하는 아이의 아버지 연령은 40세(1985년생)로 가정되므로, 전망 모형 상에서는 이들이 60세가 되어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2045년부터 출산크레딧에 대한 혜택이 발생함

8)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1970년~1990년생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공적연금 가입에 대한 결합분포를 도출한 후 자료 내 통합형당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산출

9) 2022년 25~44세 여성 인구에서 여성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의 비중을 적용

지원으로 늘어나는 수입으로 인해 기금운용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만 고려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지원분은 12개월 단위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나. 재정전망 결과

-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 시점으로 유지하되 지원 범위 및 추가 산입기간을 확대할 경우에 대한 2045년부터 2093년까지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연평균 2.1~8.0조원 수준으로 전망(2023년 불변가격 기준)
 - ▶ 추가 산입기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설정하지 않는 것 차이의 추가재정소요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상한 설정 여부에 따라 산입기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넷째아 또는 다섯째아 이상을 낳은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출산크레딧 지원 범위 및 추가 산입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증가 속도는 추계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전망

표 12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 지원)

(단위: 조원)

시나리오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2075	2080	2085	2090	2045 ~2093 연평균
기준선 총재정소요	0.82	1.0	1.2	1.5	1.7	1.9	2.0	2.1	2.3	2.2	1.7
시나리오1	1-1	0.04	0.4	0.7	1.3	2.0	2.5	2.9	3.2	3.5	2.1
	1-2	0.05	0.4	0.8	1.4	2.2	2.8	3.2	3.6	3.8	2.4
시나리오2	2-1	0.05	0.5	1.0	1.7	2.6	3.2	3.7	4.2	4.5	2.8
	2-2	0.06	0.5	1.0	1.7	2.6	3.3	3.8	4.2	4.5	2.8
시나리오3	3-1	0.10	0.8	1.7	3.1	4.7	5.9	6.8	7.7	8.2	5.1
시나리오4	4-1	0.16	1.3	2.8	4.8	7.4	9.4	10.7	12.1	12.9	8.0

주: 1. 시나리오1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시나리오2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시나리오3은 첫째아 24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시나리오4는 첫째아 36개월, 둘째아부터 24개월씩 지원하는 것을 가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3. 시나리오1~4는 기준선의 총재정소요에 더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가리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한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10.9조원~25조원 수준(연평균 1.1조원~2.5조원)으로 전망
 - ▶ 본 고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하고 있으나, 출산 시점의 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이들이 향후에 수급할 연금급여도 추가로 증가할 전망

표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출산 시점 지원)

(단위: 조원)

시나리오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2025 ~2034 연평균
출산시점 지원	1-3	0.7	0.8	0.9	1.0	1.1	1.1	1.2	1.3	1.3	1.4	10.9	1.1
	2-3	0.7	1.0	1.1	1.2	1.3	1.3	1.4	1.5	1.6	1.7	12.8	1.3
	3-2	0.7	1.4	1.5	1.7	1.8	2.0	2.1	2.2	2.4	2.5	18.3	1.8
	4-2	0.7	1.6	2.1	2.3	2.5	2.7	2.9	3.1	3.3	3.5	25.0	2.5

주: 1. 시나리오1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시나리오2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시나리오3은 첫째아 24개월, 둘째아부터 18개월씩, 시나리오 4는 첫째아 36개월, 둘째아부터 24개월씩 지원하는 것을 가정

2. 출산시점 지원 시나리오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출산순위별 지원 개월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동일한 이유는 12개월 단위로 회계연도를 나누어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

3.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시사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출산크레딧을 확대할 방침을 포함하였고, 출산크레딧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개선을 위해서는 확정해야 할 세부 사항이 남아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

-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 범위를 첫째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적어 실시 필요성이 있으나 자녀 수별로 지원할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제안되고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기간을 설정할 필요
-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원 범위 확대, 추가재정소요 증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변경 시 추가 산입기간의 소득 인정 수준, 지원 기간보다 경제활동 공백기가 짧은 경우에 대한 지원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할 필요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소요재정의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할 필요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발생하는 출산크레딧 소요재정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가입자(현행 제도상 후세대 가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자녀 유무에 따른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국민연금기금 재정으로 출산크레딧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재정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운용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 필요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2017·2018 포항 지진 등으로 주택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난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지원은 1996년에 제정된 「재해구호 및 재해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에 근거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¹⁾에 따른 이재민, 주택침수 등에 대한 구호, 복구 등을 말함
 - ▶ 사회재난²⁾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2015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시작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원인의 대부분은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음³⁾
- 이와 같은 재난피해 지원 제도에는 주택침수, 파손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제21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인상 등 재난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

- 재난피해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전에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논의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자연재난에 초점을 두고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재정지원 제도를 조사하며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동향 및 재정소요를 분석하여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를 포함) 등의 사회재난은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민간보험, 의무보험 등의 적용으로 사회재난 피해 지원 및 복구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크지 않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결산기준 전체 재난지원금 중 사회재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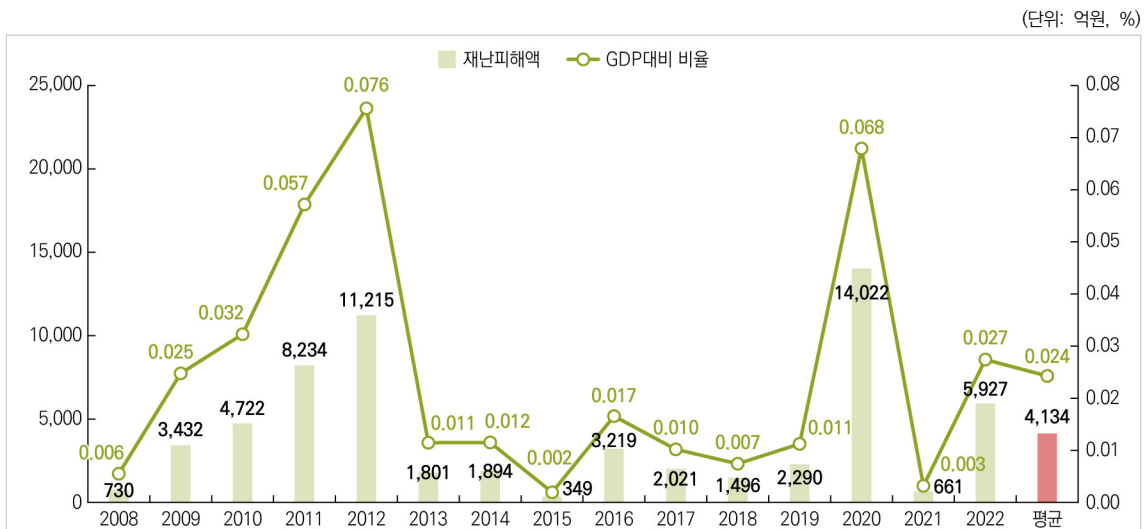
2.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재정지원 제도 개요

가. 자연재난 피해 현황

우리나라의 최근 15년간(2008~2022년) 자연재난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급증하고 2021년에는 급감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

- 동 기간 중의 자연재난 피해액 규모는 2020년(최장 장마, 수도권 기준 45일)에 1조 4,022억원으로 가장 컸고, GDP 대비 비율은 연평균 0.024%이며 2012년(태풍 볼라벤 등)에 0.076%로 가장 높았음

그림 1 자연재난 피해액 및 GDP 대비 비율: 2008~2022년



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각 연도별 「재해연보」의 자연재난 피해액과 한국은행의 각 연도별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 자료를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집중호우와 태풍을 우리나라 자연재난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 지원 및 복구 정책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이재민, 주택 침수 및 파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최근 15년(2008~2022년) 동안 호우가 평균 2,011억 9,100만원으로 전체 평균 피해액의 42.8%를 차지하며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난
 - ▶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의 비중은 전체 평균 피해액의 92.2%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호우·태풍으로 인한 홍수가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난이고 재난관리 정책의 주요 대상

나. 자연재난 피해 재정지원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난정책보험으로 구분

- 직접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가 있음
- 간접지원에는 전기·수도 등 공과금 면제,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이 있고 재난의 종류, 특별재난선포지역 여부 등에 따라 간접지원 항목에 차이가 있음
 -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에게 18종⁴⁾의 간접지원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선포지역에는 12종⁵⁾이 추가되어 총 30종의 간접지원이 가능
- 재난정책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난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운영 중

표 1 자연재난 피해 재정지원 방식

구분	내용	재원
직접지원	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이재민 구호	
간접지원	국세·지방세·연금보험료 등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및 공과금 감면 등	-
재난정책보험	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 농어업재해보험(농림축산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해양수산부)	국비·지방비 보조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난피해 지원제도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지원방식과 재난정책보험은 경우에 따라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융자 등 간접지원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 대출상환 등을 통해 환수되고, 공과금 감면 등은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방식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재정지출은 아니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간접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4) ①국세 납세 유예, ②지방세 납세면제 및 유예, ③국민연금 납부 예외, ④상하수도 요금 감면, ⑤재해복구자금 융자, ⑥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⑦농기계 수리, ⑧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⑨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⑩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⑪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⑫상승세 재해손실 공제, ⑬과태료 징수유예, ⑭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⑮생활동음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⑯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및 농가 임대료 감면, ⑰공공임대 주거 지원, ⑱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5) ①건강보험료 감면, ②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③고용 및 산재보험료 감면, ④전기요금 감면, ⑤도시가스요금 감면, ⑥지역난방요금 감면, ⑦통신요금 감면, ⑧전파사용료 감면, ⑨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⑩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⑪TV수신료 면제, ⑫우체국 예금수수료 등 면제

[참고 1]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형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시장에서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재난보험이 공급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부문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원하거나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직접 지원 실시

Bruggeman 등(2012)⁶⁾은 문헌 및 사례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정부가 재난보험의 원보험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원보험사업 참여형과 민간보험사에게 재보험을 제공하는 재보험사업 참여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

■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형과 해외사례 ■

정부 개입 유형	정부의 역할	해외사례
민간보험시장 의존	- 대재해 채권 유통을 위한 규제 완화 - 재난보험 관련 세제 지원 - 보험사 간 공동위험보유율 형성 지원	미국의 준공공기관인 FHCF(Florida Hurricane Catastrophe Fund) 및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는 자본 회계처리, 세금감면 관련 정책지원을 받음
사후적 직접 보상	재난 발생 후, 재난지원 규모 결정 및 지급	독일 정부는 2002년 엘베 강 홍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81억 유로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포괄적 재난의무 보험 제공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 담보 수준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프랑스는 손해보험(자동차, 주택 등) 가입 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원보험사업 참여	보험료 책정, 위험 부담 등의 보험 업무를 정부가 전담	미국의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는 보험료 책정과 지진 위험 부담 등의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는 보험 계약 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만을 수행
재보험사업 참여	민간보험사가 일차적으로 보험 업무를 수행 하되, 거대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	미국의 TRIA(Terrorism Risk Insurance Act), 네덜란드의 NHT 등은 테러보험에 대한 최후의 재보험사업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보여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난보험 운영실태와 재정운용 분석」 (2017)

(1)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

- 재난지원금 지원 항목은 사망자·실종자 등에 대한 구호금, 침수·전파·반파·소파⁷⁾ 등 주택피해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게 생계지원비 등이 있음

6) Bruggeman, V., M. Faure, and T. Heldt, "Insurance Against Catastrophe: Government Stimulation of Insurance Markets For Catastrophic Events," Duke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um, Vol.23, 2012

7)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전파는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반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그리고 소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표 2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2023년 기준

구 분		단위	재난지원금(천원)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사망·실종		인	20,000	
부상	1~7급	〃	10,000	
	8~14급	〃	5,000	
이재민 구호		일/인	10	
생계 지원	1인가구	세대	623	
	2인가구	〃	1,037	
	3인가구	〃	1,330	
	4인가구	〃	1,620	
소상공인		업체	3,000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주택전파 (반파는 전파의 50%)	~66㎡		동	20,000
	66㎡~82㎡		〃	24,000
	82㎡~98㎡		〃	28,000
	98㎡~114㎡		〃	32,000
	114㎡~		〃	36,000
주택 침수		〃	3,000	
주택 소파(지진피해에 한정)		〃	1,000	
세입자 보조		세대	6,000	
농경지	유실(10cm이상)		ha	31,000
	매물(10cm이상)		〃	14,000
농약대	일반작물		ha	1,000
	채소류		〃	2,500
	과수류		〃	2,500
대파대	일반작물		ha	2,000
	인삼(묘삼)	1~2년근	〃	8,000
		3~4년근	〃	11,000
		5~6년근	〃	14,500
농림시설	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A-G형)		ha	32,500
	인삼시설(차광A형-연목)		〃	10,500
축사파손	우사(한육우사)		100㎡	5,000
	돈사(번식돈사)		〃	14,500
	계사(산란계사)		〃	8,000
가축	소(송아지 6~7개월)		10마리	9,000
	돼지(자돈30kg)		〃	400
	닭(육계-병아리 감별추)		10,000마리	2,500
어선파손[40톤미만 지원(동력선-목선)]		톤	2,500	
어망어구[꽃게-서해(1척:1,000쪽)]		100쪽	1,000	
수산증양식시설[김(부류망홍식, 2.2×40m)]		100척	16,000	
수산생물[전복 2cm미만 투석식]		10,000마리	2,0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15년(2008~2022년) 동안의 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257억 1,7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 중 국비는 805억 1,900만원, 지방비는 451억 9,900만원 소요

-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0%, 30% 분담하고 있으나 항목별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최근 15년(2008~2022년) 동안 재난지원금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비율은 평균 64.0%, 36.0%를 기록

표 3 재난지원금 집행 현황: 2008~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국비	4,376 (70.0)	24,692 (70.0)	110,844 (71.1)	87,461 (71.0)	323,369 (67.4)	5,799 (65.2)	12,583 (60.1)	386 (46.5)	32,293 (65.7)	34,848 (68.1)	37,448 (52.0)	95,655 (55.2)	208,333 (61.5)	25,736 (60.9)	180,522 (61.3)	80,519 (64.0)
지방비	1,875 (30.0)	10,582 (30.0)	44,978 (28.9)	35,777 (29.0)	156,609 (32.6)	3,093 (34.8)	8,350 (39.9)	444 (53.5)	16,830 (34.3)	16,340 (31.9)	34,595 (48.0)	77,615 (44.8)	130,437 (38.5)	16,510 (39.1)	113,901 (38.7)	45,199 (36.0)
합계	6,251	35,274	155,822	123,238	479,978	8,892	20,933	830	49,123	51,188	72,043	173,270	338,770	42,246	294,423	125,717

주: 괄호()는 합계 대비 비중을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정책보험

-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의 자연재난이고, 가입대상(보험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⁸⁾
 -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 ▶ 온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 상가·공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비율은 70% 이상이고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

8) 상가와 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17개 시·군·구)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적용

표 4 풍수해보험 대상 및 보험료 지원: 2023년 기준

구 분	보험료(평균)				보험금(최대)	비고	
주 택 (정액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43,900	(100.0%)	72,000,000	• 가입면적 80㎡ • 기준 보험가입금액 － 소유자 7,200만원 － 세입자 1,200만원	
		국 비	24,800	(56.5%)			
		지 방 비	5,900	(13.5%)			
		자 부 담	13,200	(30.0%)			
	일 반 (세입자)	총 액	19,800	(100.0%)	12,000,000		
		국 비	11,200	(56.5%)			
		지 방 비	2,700	(13.5%)			
		자 부 담	5,900	(30.0%)			
	차상위 (소유자)	총 액	43,900	(100.0%)	72,000,000		
		국 비	27,000	(61.6%)			
		지 방 비	7,400	(16.8%)			
		자 부 담	9,300	(21.2%)			
	차상위 (세입자)	총 액	19,800	(100.0%)	12,000,000		
		국 비	12,200	(61.6%)			
		지 방 비	3,300	(16.8%)			
		자 부 담	4,200	(21.2%)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소유자)	총 액	43,900	(100.0%)	72,000,000		
		국 비	29,600	(67.36%)			
		지 방 비	8,600	(19.68%)			
		자 부 담	5,700	(12.96%)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세입자)	총 액	19,800	(67.36%)	12,000,000		
		국 비	13,300	(19.68%)			
		지 방 비	3,900	(12.96%)			
		자 부 담	2,600	(13.0%)			
주 택 (실손비례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42,200	(100.0%)	80,000,000		
		국 비	23,800	(56.5%)			
		지 방 비	5,700	(13.5%)			
		자 부 담	12,700	(30.0%)			
온 실 (정액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273,000	(100.0%)	8,680,000	• 철재파이프(A형) 하우스(1,000㎡ 기준)	
		국 비	154,245	(56.5%)			
		지 방 비	36,855	(13.5%)			
		자 부 담	81,900	(30.0%)			
소상공인 (실손형)	상 가 (소유자)	총 액	129,200	(100.0%)	100,000,000	• 상가건물 1억원 • 재고자산 5,000만원	
		국 비	73,000	(56.5%)			
		지 방 비	17,400	(13.5%)			
		자 부 담	38,800	(30.0%)			
	상 가 (세입자)	총 액	71,200	(100.0%)	50,000,000		
		국 비	40,200	(56.5%)			
		지 방 비	9,600	(13.5%)			
		자 부 담	21,400	(30.0%)			
	공 장 (소유자)	총 액	162,900	(100.0%)	150,000,000		• 공장건물 1.5억원 • 재고자산 5,000만원
		국 비	92,000	(56.5%)			
		지 방 비	22,000	(13.5%)			
		자 부 담	48,900	(30.0%)			
	공 장 (세입자)	총 액	56,700	(100.0%)	50,000,000		
		국 비	32,000	(56.5%)			
		지 방 비	7,700	(13.5%)			
		자 부 담	17,1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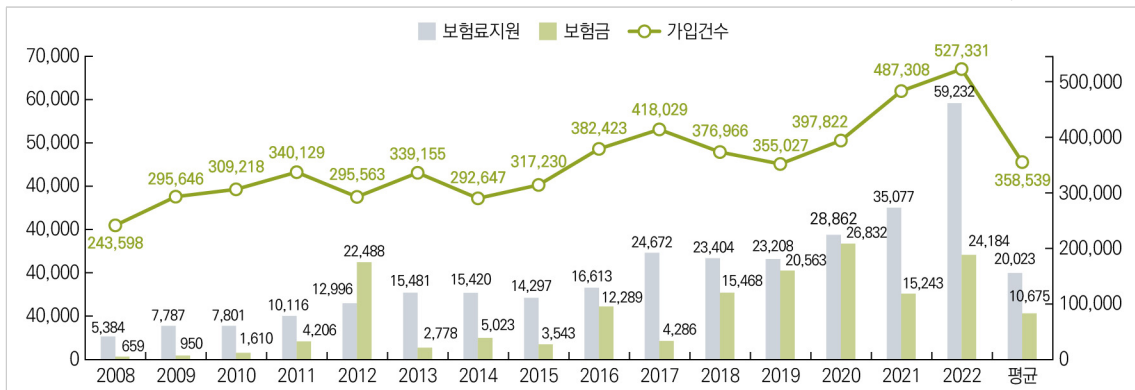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최근 15년(2008~2022년) 동안 연평균 200억 2,300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되었고, 민간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연평균 106억 7,500만원

- 보험료 지원을 인상, 보험대상목적물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주택 기준)은 2008년 243,598건에서 2022년 527,331건으로 꾸준히 증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험료 규모도 2008년 53억 8,4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592억 3,200만원에 달함

그림 2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 2008~2022년

(단위: 백만원, 건)



주: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2] 재난정책보험 관련 주요국 사례 현황

구분	개요	특징
미국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사(CEA)	1994년 Northridge 지진 발생 이후 지진보험 제공을 위해 설립 - 지진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 업무를 수행	- 보험료를 보험계리적 타당성을 갖추게끔 산정할 의무 존재 -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은 무한책임이 아님
프랑스 국영 재보험사(CCR)	- 민간보험사는 자연재해 피해 담보 특약을 일반 화재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포함 - 민간보험사가 판매한 자연재해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	재보험 위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무한보증 혜택을 제공
네덜란드 테러재보험펀드(NHT)	9/11 테러 이후 테러보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 - 국내 보험사, 정부, 해외 재보험사가 참여하는 테러재보험펀드를 구성	재보험펀드 설립 시, 정부 보증 구간 내에서 보증 금액이 낮은 구간의 보험료를 낮게 설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난보험 운영실태와 재정운용 분석」 (2017)

3.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2020년 유례없는 긴 장마,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현행보다 재난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 제21대 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 포함 등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 발의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한 입법 동향은 크게 세 가지 현안, ①재난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②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중복 지원, ③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및 지원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난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에게 현행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 즉 재난지원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 ▶ 재난지원금 단가 산정 시 재난 피해 규모, 실제 복구비용,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필요하고, 지급대상에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 공동주택의 주민 필수시설, 소상공인 등의 영업이익 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2020년에 재난지원금 인상이 25년만에 이루어지고 2023년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금 성격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정책적으로 결정
 - 현행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유시설에는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표 2 참고)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 차액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수령하게 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 현행법은 재난피해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 지원 없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장치이지만 풍수해보험 운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 유인을 저하
 -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재난지원금을 가입자는 보험가입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따른 체감편익 감소⁹⁾
 - ▶ 다만,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재난정책보험제도와의 형평성, 예산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및 지원 확대) 재해위험지구 내 지하층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

9) 국회예산정책처, 「재난보험 운영실태와 재정운용 분석」, 2017.

▶ 현행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목적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70%를 지원

표 5 제21대 국회 재난피해 지원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2020.6~2023.11

법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211813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규모, 실제 복구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 단가 등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야 함
	이수진의원 (2118472)	재난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산업시설, 상업시설을 포함
	김병욱의원 (2119028)	재난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상가건물, 중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 공동주택 주민 필수시설(주차장, 승강기 등)을 포함
	이동주의원 (212036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2108126)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이형석의원 (2117231)	풍수해보험목적물에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물 포함
	소병훈의원 (21181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있는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을 사용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

주: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재난피해 지원 확대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정리한 것임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난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의무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4.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재정소요 분석

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난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98억원, 2028년 255억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881억원(연평균 1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재난지원금 단가 등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의안번호 2118137)의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난지원금의 차액
 - ▶ 현행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재난지원금 1,666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2022년 기준 1,666억원에 국회에 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재난지원금(A)	1,764	1,803	1,842	1,881	1,921	9,211	1,842
현행법에 따른 재난지원금(B)	1,666	1,666	1,666	1,666	1,666	8,330	1,666
추가재정소요(=A-B)	98	137	176	215	255	881	176

주: 최근 3년간(2020~2022년)간 연평균 재난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4년 164억원~493억원, 2028년 189억원~566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883억원~2,649억원(연평균 177억 원~530억원)으로 추계됨

-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의안번호 2120364)의 추가재정소요는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체¹⁰⁾ 수에 평균 지원비용(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 손실과 임차료)을 곱하여 산출
 -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1개월¹¹⁾분의 영업손실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추계
 -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확률¹²⁾을 각각 0.1%(시나리오1), 0.3%(시나리오2)로 가정하여 산출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손실과 임차료¹³⁾는 2024년 381만원, 2028년 407만원으로 추정

표 7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평균
대상 사업체 수	시나리오1(A, 개)	4,340	4,416	4,494	4,574	4,655	-
	시나리오2(B, 개)	13,019	13,249	13,483	13,722	13,965	-
평균 지원비용(C, 만원)		380	386	393	399	406	-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A×C, 억원)	164	170	177	183	189	177
	시나리오2(=B×C, 억원)	493	511	530	549	566	530

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개정안에서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영업손실과 임차료 관련 자료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11) 현행법에 따른 재난피해 시 생계지원 대상자들에게도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도 1개월분으로 가정

12)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건축물통계」의 주거용 건물 수 대비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건수의 평균 비율은 0.3%

1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1년 기준 233만원, 월평균 임차료는 2021년 기준 118만원 이고 월평균 이익에는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적용하며 월평균 임차료는 증가율 0.65%(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기준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증가율) 적용

다.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지하층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07억원, 2028년 118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561억원(연평균 11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층 주택의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전부 지원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의안번호 2118142)의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지하층 주택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하층 주택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 전부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차액
-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개정안에 따른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를 연간 363,896명으로 추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택 중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하층 주택 거주 가구수(363,896가구¹⁴⁾)로 대체하고 가구 당 1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
 - ▶ 현행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지하층 주택 소유자 수는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중 30%¹⁵⁾로 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료의 70%를 지원
 - ▶ 개정안에 따른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목적물에 대한 평균 보험료는 2024년 37,482원, 2028년 40,811원으로 추정 - 평균 보험료는 2022년 기준 35,400원¹⁶⁾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8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평균
개정안	대상자 수(A, 명)	363,896	363,896	363,896	363,896	363,896	-	-
	평균 보험료(B, 원)	37,482	38,307	39,149	39,972	40,811	-	-
	재정소요 (C=A×B×지원을 100%, 억원)	136	139	142	145	149	711	142
현행법	대상자 수(D, 명)	109,169	109,169	109,169	109,169	109,169	-	-
	평균 보험료(E, 원)	37,482	38,307	39,149	39,972	40,811	-	-
	재정소요 (F=D×E×지원을 70%, 억원)	29	29	30	31	31	150	30
합계(=C-F, 억원)		107	110	112	114	118	561	112

주: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층 주택 소유자 수를 2020년 경향신문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국 반지하 거주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363,896가구)를 활용하여 가구 당 1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2020년 경향신문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국 반지하 거주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임
1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에 취약한 주택을 중심으로 가입을 장려해왔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이미 가입한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 가입 대상자 중 기존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30%로 가정
16) 2020년 경향신문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국 반지하 거주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거주 인원은 평균 1.9명이고 1인당 주거면적(통계청 자료)이 29.7㎡인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평균 면적을 56㎡로 가정. 행정안전부에 56㎡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료(주택 1 정액형 적용) 산정을 요청한 결과, 2022년 기준 35,400원

5. 향후 과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재난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465억원~818억원으로 추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176억원,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177억원~53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층 주택의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연평균 112억원

재정소요 분석 결과, 재난피해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연평균 465억원~818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극한 강도의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2년 기후변화 평가보고서(Climates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에 따르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 여부, 시점, 피해 규모 등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에 과거보다 극한 강도의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한편, 직접지원 방식인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등 재난정책보험의 가입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제도 간 역할 조정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저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126)이 발의
-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하여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제도 간 정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추가재정소요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직접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준 등을 정밀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풍수해보험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안으로서 우리나라도 재난정책보험을 중심으로 재난피해를 지원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풍수해보험 등 재난정책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제도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주요 국가들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한하여 직접지원 방식의 무상 복구비 지급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는 재난정책보험을 폭넓게 활용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
 - 주택, 농경지 등 사유재산의 재난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의 무상 복구비 지급은 피해를 과다 또는 허위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낮추는 등의 부작용 우려
 - 보험연구원(2008)¹⁷⁾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피해에 대한 무상 복구비를 지급하였으나 주택 소유자의 지진보험 의무 가입을 도입하면서 무상 복구비 지원제도를 폐지한 적이 있음¹⁸⁾

17) 보험연구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험개발연구」 제19권, 2008.

18) 다만, 2008년 이후에 조사된 자료가 부재하여 튀르키예의 2023년 기준 무상 복구비 지원제도의 유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재난정책보험을 중심으로 재난피해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음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의안 비용추계 회답추이(연도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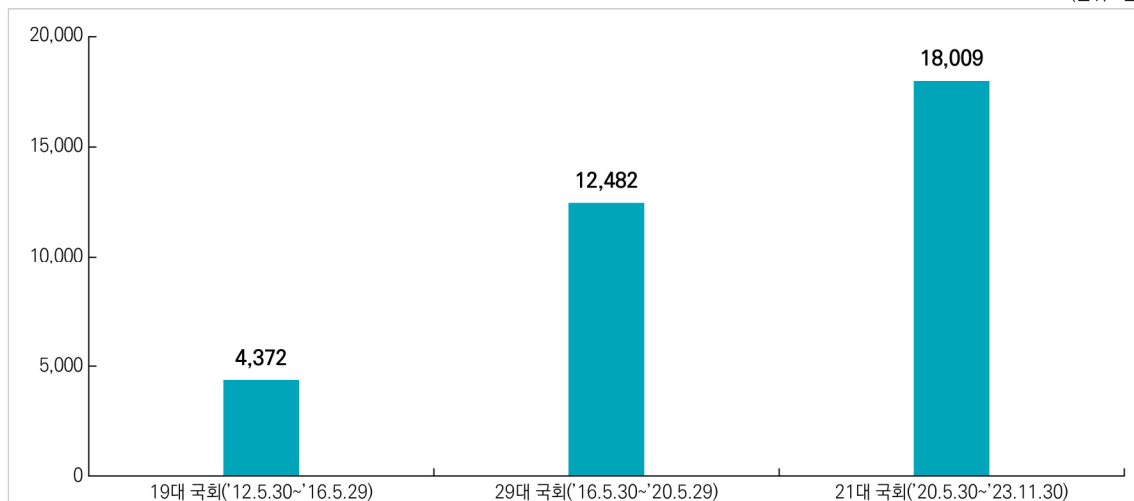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1
비용추계(A+B)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4,676
비용추계	504	1,168	931	929	751	926	1,152	1,335	1,290
미첨부	845	869	1,264	990	1,019	1,919	1,474	654	1,062
미대상	645	983	1,212	1,260	1,009	1,800	2,284	2,020	2,320
공식추계율	37.4	57.3	42.4	48.4	42.4	32.5	43.9	67.1	54.8
지출추계(A)	1,623	2,521	2,921	2,722	2,354	3,978	4,334	3,468	4,128
비용추계	331	833	627	599	477	576	820	945	937
미첨부	691	758	1,141	884	895	1,661	1,276	530	888
미대상	601	930	1,153	1,239	982	1,741	2,238	1,993	2,299
공식추계율	32.4	52.4	35.5	40.4	34.8	25.7	39.1	64.1	51.3
세수추계(B)	371	499	486	457	425	667	576	541	548
비용추계	173	335	304	330	274	350	332	390	353
미첨부	154	111	123	106	124	258	198	124	174
미대상	44	53	59	21	27	59	46	27	21
공식추계율	52.9	75.1	71.2	75.7	68.8	57.6	62.6	75.9	67.0

주: 2023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회답추이(대별)

(단위: 건)



주: 2023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헌 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1. 비용추계 개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9. 26. 김한정의원 대표발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5~2029년) 총 133억 7,600만원, 연평균 26억 7,500만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711호)
발의일	2023.9.26.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등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심사경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023.9.27.) 및 상정(2023.11.16.)
추계결과	5년간(2025~2029년) 133억 7,600만원, 연평균 26억 7,500만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비용추계 대상은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로 하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금액으로 함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에 의한 보험료는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실적 및 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에 충전시설당 보험료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에 대한 전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량 추정치에 운영주체 구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에 근거한 운영주체별 충전시설 비중을 곱하여 추산함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며, 관계부처 합동(2023. 6. 29.)에 제시된 계획 규모를 참조하되 계획 규모가 없는 2023~2024년, 2026년, 2028~2029년은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 6. 29.)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임
- 2023~2024년은 2022년 실적과 2025년 계획 규모, 2026년은 2025년과 2027년 계획 규모, 2028~2029년은 2027년과 2030년 계획 규모에 대한 선형보간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를 추정함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 2023~2030년

(단위: 만기)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적	추정	추정	계획	추정	계획	추정	추정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1	33	46	59	72	85	98	110	12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와 관계부처 합동(2023. 6. 2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는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9월 누적 기준 3.2%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2018~2023년 9월

(단위: 기, %)

운영주체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월
국가(환경부)	1,699	2,896	4,075	6,133	7,093	7,381
지방자치단체	240	455	588	756	874	928
한국전력	7,253	7,829	8,946	9,772	10,610	10,738
민간 등 기타	18,618	39,273	54,474	87,640	188,551	244,341
합계	27,810	50,453	68,083	104,301	207,128	263,3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중	7.0	6.6	6.8	6.6	3.8	3.2

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 2025~2029년

(단위: 만기)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9	2.3	2.7	3.1	3.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10만원의 보험료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대인은 1인당 1.5억(연간한도 100억원), 대물은 사고 1건당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약 1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 가능(자료: 손해보험협회)
 - ▶ 손해보험협회는 시설 형태별 차등 위험도에 따른 추가할인을 계산 등을 위한 충전소 상세현황 자료 부족과 향후 증설 시 형태별 개수 추정 한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예상 평균단가를 1기당 약 10만원/연으로 제시하였으며, 다만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손해보험 가입이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충전시설 1기당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하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8억 6,100만원, 2029년 34억 8,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33억 7,600만원(연평균 26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	1,861	2,271	2,681	3,081	3,481	13,376	2,675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 지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5)

1. 비용추계 개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4.25. 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은 통합 교통수단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28조 2,425억원, 연평균 5조 6,485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634호)
발의일	2023.4.25.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주요내용	대중교통 통합할인정액권 사업
심사경과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3.4.26.) 및 상정(2023.9.7.)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28조 2,425억원, 연평균 5조 6,485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¹⁾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통합 교통수단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경우 소요비용

- 통합할인정액권은 정하여진 기간과 교통권역 내에서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통합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교통수단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음

1)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 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통합할인정액권을 도입함에 따라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요금 중 통합할인정액권과의 차액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추계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일반버스, 도시철도 연간 이용요금에서 통합할인정액권(연간 36만원)을 차감한 비용을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지원할 때 소요비용
 - ▶ 통합교통수단의 범위와 기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통합할인정액권의 지불가격은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2)을 고려하여 월 3만원, 교통수단은 버스와 도시철도로 가정함
 - ▶ 이용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 각 년도 대중교통 이용실적자료이며,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액으로 현금 이용액은 미포함
 - ▶ 재정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50%씩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통합할인정액권 사업비 보조}_t) \\
 &= \sum_t (\text{대중교통 연간 총이용요금}_t - \text{통합할인정액권 연간소요분}) \\
 &= \sum_t \left(\sum_i \sum_j \text{대중교통 이용자 수}_{i,j,t}^{1)} \times \sum_i \sum_j \text{대중교통 연간 이용요금}_{i,j,t}^{2)} \right) - \text{통합할인정액권 연간소요분}^{3)}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연도(2024~2028년)

i 는 시·도, $i=1$ 서울, ..., $i=17$ 제주도

j 는 대중교통수단, $j=1$ 버스, $j=2$ 도시철도

1) 대중교통 이용자 수 : $\sum_i \sum_t \text{추계인구}_{i,t} \times \sum_i \sum_j \sum_t \text{대중교통 수단별 평균이용자 비중}_{i,j,t}$

a) 추계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

b)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자 비중: 시도별 2019~2020년 동안 대중교통 평균이용자 비중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이동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율이 평년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해당기간 실적은 미반영

2) 대중교통 연간 이용요금 = $\sum_i \sum_j \sum_k \sum_t (\text{대중교통 주간평균 이용요금}_{i,j,k,t} \times 52\text{주})$

이때, k 는 평일 및 공휴일, $k=1$ 평일, $k=2$ 토요일, $k=3$ 일요일

a) 대중교통 주간평균 이용요금: 평일, 토요일 및 일요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가중평균하여 주간 이용요금을 추산

-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자수는 평일·주말의 이용패턴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가중평균한 일평균 이용자 수를 추정

b) 연간 주수: 52주

3) 통합할인권 연간소요분: 36만원(월 3만원×12개월)

2) 심상정의원,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요금정책 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김건호,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2023.4.13.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추계대상은 연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중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불하는 통합할인정액권을 차감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보조할 때 소요비용

- 대중교통 연간 이용요금은 연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에 이용자별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곱하여 추산
- 시·도별 총인구 대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 비중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평년 수준으로 추산하여 통계청 추계인구(시·도)에 곱하여 향후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추정

17개 시·도의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평년 기준 총인구의 21% 수준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14.4~16.9%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대중교통 이용자 현황: 2017~2022년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 수(A)	10,705,360	10,653,377	10,705,174	7,466,890	8,120,908	8,759,996
총인구(B)	51,422,507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51,692,272
비중(A/B)	20.8%	20.6%	20.7%	14.4%	15.7%	16.9%

주 1.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 수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 각 년도의 평일, 주말 인원의 가중평균한 일평균인원
2.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에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평년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추정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이동이 제약되었던 기간인 2020~2022년 실적치를 제외한 2017~2019년 전체 인구 중 대중교통 이용인구 평균비율을 적용
 -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 대중교통 이용인구 비율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³⁾은 2019년 비율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통합할인정액권 도입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율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효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수요 증가분은 미반영

3) 부산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총인구 중 대중교통이용인구 비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4 시·도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추정 결과: 2024~2028년

(단위: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서울특별시	3,918,221	3,892,254	3,867,795	3,844,638	3,822,594	19,345,502
부산광역시	952,719	944,096	935,771	927,741	920,003	4,680,330
대구광역시	453,233	448,931	444,775	440,770	436,920	2,224,629
인천광역시	737,823	737,892	738,076	738,333	738,646	3,690,770
광주광역시	200,526	199,391	198,278	197,193	196,139	991,528
대전광역시	232,095	230,372	228,782	227,325	226,007	1,144,581
울산광역시	126,150	125,131	124,146	123,184	122,242	620,853
세종특별자치시	29,694	30,916	32,057	33,124	34,126	159,916
경기도	2,963,470	2,985,018	3,005,275	3,024,275	3,042,060	15,020,098
강원도	85,305	85,290	85,299	85,336	85,396	426,627
충청북도	104,211	104,359	104,527	104,709	104,901	522,707
충청남도	156,436	156,886	157,336	157,783	158,222	786,663
전라북도	104,564	103,838	103,157	102,517	101,917	515,993
전라남도	110,734	110,141	109,591	109,075	108,589	548,130
경상북도	148,348	147,791	147,258	146,747	146,253	736,398
경상남도	306,595	305,520	304,453	303,373	302,267	1,522,208
제주특별자치도	78,318	78,801	79,250	79,660	80,036	396,064
합계	10,708,445	10,686,627	10,665,825	10,645,783	10,626,317	53,332,998

대중교통 이용자별 평일과 주말 대중교통 1인당 이용액을 바탕으로 주간평균 이용요금을 추산함

- 주간평균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현황조사」 각 연도의 평일, 토요일 및 일요일 요금의 가중평균한 값
 - 2017~2022년까지 이용요금실적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⁴⁾은 2022년 값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이용요금실적이 감소한 지역⁵⁾은 2017~2019년 이용요금 평균실적을 적용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이전 기간과 이용요금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⁶⁾은 2017~2022년 평균실적을 적용
 - 추계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음

4) 대구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타남

5)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6) 경기도, 강원도로 나타남

표 5 시·도별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간평균 이용요금: 2017~2022년

(단위: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17,372	17,475	16,998	16,365	16,562	16,689
부산광역시	15,897	16,039	15,600	15,129	15,301	15,349
대구광역시	14,112	14,753	14,317	14,732	14,754	14,877
인천광역시	18,041	18,358	17,487	16,640	16,658	16,896
광주광역시	14,691	14,105	13,841	13,662	13,557	13,600
대전광역시	14,124	14,449	14,301	14,121	14,173	14,147
울산광역시	15,015	15,285	14,180	14,048	14,072	14,154
세종특별자치시	11,993	13,862	14,836	14,638	16,091	16,522
경기도	19,156	18,920	18,142	18,604	18,701	18,889
강원도	12,294	12,673	13,309	13,428	13,033	12,889
충청북도	12,884	13,464	13,031	15,011	14,848	15,035
충청남도	13,508	14,506	13,566	13,732	14,558	14,342
전라북도	14,575	14,546	13,687	13,667	13,376	15,198
전라남도	13,980	14,010	13,513	13,535	14,404	14,681
경상북도	13,195	14,352	14,230	14,230	13,772	14,460
경상남도	14,848	15,070	14,497	15,998	15,804	15,672
제주특별자치도	16,066	14,122	13,157	12,894	13,654	13,524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가중평균하여 추산

- 시·도별 추산된 대중교통 연간 이용액에서 통합할인정액권 연간요금 36만원(3만원×12개월)을 차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하게 될 금액이 추정됨

표 6 시·도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액

(단위: 원)

	대중교통 주간평균 이용요금(A)	연간요금(B) (A×52주)	정부지원액(C) (B-통합할인정액권(36만원))
서울특별시	17,282	898,647	538,647
부산광역시	15,845	823,957	463,957
대구광역시	14,877	773,604	413,604
인천광역시	17,962	934,024	574,024
광주광역시	14,212	739,041	379,041
대전광역시	14,291	743,149	383,149
울산광역시	14,827	770,987	410,987
세종특별자치시	16,522	859,144	499,144
경기도	18,735	974,237	614,237
강원도	12,938	672,759	312,759
충청북도	15,035	781,820	421,820
충청남도	14,342	745,784	385,784
전라북도	15,198	790,296	430,296
전라남도	14,681	763,412	403,412
경상북도	14,460	751,920	391,920
경상남도	15,672	814,944	454,944
제주특별자치도	14,448	751,313	391,313

시·도별 대중교통 이용자가 월 3만원의 통합할인정액권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대중교통 실이용요금과 통합할인정액권의 차액을 보조할 때 추가 재정소요는 2024년 5조 6,643억원, 2028년 5조 6,332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8조 2,425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연평균 14조 1,213억원(연평균 2조 8,243억원)
- 지방비: 연평균 14조 1,213억원(연평균 2조 8,243억원)

표 7 개정안에 따른 통합할인정액권 사업비 보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서울특별시	21,105	20,965	20,834	20,709	20,590	104,204	20,481
부산광역시	4,420	4,380	4,342	4,304	4,268	21,715	4,343
대구광역시	1,875	1,857	1,840	1,823	1,807	9,201	1,840
인천광역시	4,235	4,236	4,237	4,238	4,240	21,186	4,237
광주광역시	760	756	752	747	743	3,758	752
대전광역시	889	883	877	871	866	4,385	877
울산광역시	518	514	510	506	502	2,552	510
세종특별자치시	148	154	160	165	170	798	160
경기도	18,203	18,335	18,460	18,576	18,685	92,259	18,452
강원도	267	267	267	267	267	1,334	267
충청북도	440	440	441	442	442	2,205	441
충청남도	604	605	607	609	610	3,035	607
전라북도	450	447	444	441	439	2,220	444
전라남도	447	444	442	440	438	2,211	442
경상북도	581	579	577	575	573	2,886	577
경상남도	1,395	1,390	1,385	1,380	1,375	6,925	1,385
제주특별자치도	306	308	310	312	313	1,550	310
합계	56,643	56,561	56,483	56,406	56,332	282,425	56,485
국비	28,322	28,281	28,241	28,203	28,166	141,213	28,243
지방비	28,322	28,281	28,241	28,203	28,166	141,213	28,243

- 주 1.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비가 미정이므로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2. 통합할인정액권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개인의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요증가분은 미반영되었으며, 통합할인정액권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운영비용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추계에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상소요비용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집계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중교통 현황조사」 각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현금 사용분은 미반영
4.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환급하여 주는 국토교통부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지방자치단체별 일부 연령층에 대하여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통합할인정액권 도입 시 사업조정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추계값에서는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27)

1. 비용추계 개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7.26.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838억원, 연평균 168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3447호)
발의일	2023.7.26.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1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함
심사경과	교육위원회 회부(2023.7.27.) 및 상정(2023.9.20.)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총 838억원, 연평균 168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축하는 비용인 청사건립비와 인구·학생수가 유사한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운영비를 제시함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운영비_t¹⁾ + 화성교육지원청 청사 신축비²⁾

이 때, t는 추계연도(2024~2028년)

1)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운영비_t = (교육장 1인 + 직원 78인) × (인건비 +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2) 화성교육지원청 청사 신축비 = 건축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화성·오산 지역과 인구수·학생수 등이 유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 규모를 준용하여 산출
-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의 운영비로 성남교육지원청 및 이천교육지원청의 조직·정원과의 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차이인 ‘교육장 1인 및 직원 78인’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
-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현 교육지원청 청사를 개정안 시행 이후 오산교육지원청 청사로 사용한다고 보고, 화성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¹⁾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추계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신설될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 경기도 화성·오산지역과 인구수 및 학생수가 유사한 성남·이천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을 준용함

- 성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각 3국 11과(성남 교육지원청), 2과(이천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도 동일한 조직 및 정원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함
- 성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정원과 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원과의 차이만큼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며, 조직 분리 이전과 이후의 사업비는 변동 없는 것으로 함

표 3 화성오산·성남·이천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수 및 학생수

(단위: 명)

관할구역	화성	성남	오산	이천
인구수	932,626	919,771	229,255	223,651
학생수	140,732	102,316	34,699	27,200

주: 인구수는 2023.7월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학생수는 2022.4.1.자 교육통계참조

자료: 경기도교육청

(운영비) 개정안에 따른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이 성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규모로 분리·설립된다는 가정에 ‘교육장 1인’과 ‘직원(정원)수 차이인 78인’의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교육장, 국·과장) 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될 화성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체제이므로, 기존 교육장·국장·과장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오산교육지원청의 2과²⁾ 과장은

1)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5조 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성남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용인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교육국, 행정국, 학교지원국을 둔다.

기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센터장³⁾직위가 개편되는 것으로 볼 때 추가재정소요는 ‘교육장 1인’ 관련 비용임

- (직원) 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직원수와 성남 및 이천교육지원청 직원수의 차이는 78인

표 4 화성오산·성남·이천교육지원청 정원

(단위: 명)			
교육지원청명	화성오산	성남	이천
정원	253	212	119
			331

자료: 경기도교육청

- 인건비는 봉급, 수당⁴⁾, 기관부담금으로 구성⁵⁾
- 기관부담금은 봉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기본경비는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을 준용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채용되는 해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설립비) 화성교육지원청 건립비용으로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추계함

- 화성교육지원청 청사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 및 [별표1]⁶⁾에 따라 21,968㎡로 가정⁷⁾
- (건축공사비) 유사건축물인 안산교육지원청의 1㎡당 공사비에 비거주용 건설공사비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
- (설계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곱하여 산출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감리 대가요율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

제4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제4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관리센터, 감사과를 둔다.

제47조의2(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행정지원과, 지역교육협력과를 둔다.

제4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연천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가평교육지원청·양평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김포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 행정과를 둔다.

-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8조(하부조직)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8조의2(하부조직) ② 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 4) 수당에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
 5) 교육장의 경우 「202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서」의 장학관 봉급, 정근수당 등을 참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시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	---------------------	---------

- 7)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

개정안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설립하는데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5년간 총 838억 3,400만원으로 추계

- (운영비) 교육장 1인과 직원 78인의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5년간 약 91억 9,600만원
 - 인구수와 학생수가 유사한 성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을 준용
- (청사건립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746억 3,800만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예 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1)

1. 비용추계 개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8.10.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5~2029년) 시나리오별로 총 195억 2,300만원~362억 5,700만원, 연평균 39억 500만원~72억 5,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3738호)
발의일	2023.8.10.
대표발의	임태영 의원
주요내용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국내 정착 및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 등에 국내체류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심사경과	외교통일위원회 회부(2023.8.10.) 및 상정(2023.11.9.)
추계결과	5년간(2025~2029년) 시나리오별로 총 195억 2,300만원~362억 5,700만원, 연평균 39억 500만원~72억 5,100만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대상 지역의 수는 기초자치단체별 고려인동포 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사례의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

- (설치·운영 대상 지역)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인 밀집거주지역의 기준을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별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적용함
 - (시나리오 1) 밀집거주지역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수가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밀집거주지역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수가 3,000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¹⁾ 국적 동포 밀집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수가 3,0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1	경기도	김포시	1,071	1	경기도	안성시	3,905
2	경기도	안성시	3,905	2	경기도	화성시	3,693
3	경기도	평택시	2,532	3	경기도	안산시	14,364
4	경기도	화성시	3,693	4	경상북도	경주시	3,721
5	경기도	안산시	14,364	5	광주광역시	광산구	3,763
6	경상남도	김해시	2,975	6	인천광역시	연수구	6,923
7	경상북도	경주시	3,721	7	충청남도	아산시	7,705
8	광주광역시	광산구	3,763	8	충청북도	청주시	3,744
9	대구광역시	달성군	1,14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6,923				
11	충청남도	아산시	7,705				
12	충청남도	천안시	1,942				
13	충청북도	진천군	1,169				
14	충청북도	청주시	3,744				

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 체류 통계 중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출신 외국 국적동포의 대부분이 고려인동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초자치단체별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수는 법무부가 발표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국적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수와 같다고 가정

자료: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23.6.30. 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설치·운영 비용) 국내체류고려인동포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산시의 고려인문화센터 설치·운영비를 준용
 - 경기도 안산시는 2016년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고려인문화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운영비로 연간 2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 각 지역별 국내체류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는 2025년에 모두 설치되어 2026년부터 운영된다고 가정

1)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독립국가가 된 구 소련공화국들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은 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8개국임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 등에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95억 2,300만원~362억 5,7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대상인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 수에 센터별 설치·운영비용을 곱하여 산출
-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 수) 이미 고려인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시를 제외하고, 국내체류 고려인동포가 1,0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3개(시나리오 1), 3,0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7개(시나리오 2)임 ([표 2] 참고)
 - ▶ 밀집거주지역 수는 추계기간 동일하다고 가정
- (설치·운영비용) 2016년에 설치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의 설치비용(11억원)과 운영비(2억 8,0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5년에 센터가 모두 설립되고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므로, 설치비용은 2025년에만 발생하고 2026년부터 운영비용이 발생

표 3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와 운영비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시나리오 1)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운영	설치비	설치 센터 수(A)	13	0	0	0	0	-
		센터당 설치비(B)	1,347	-	-	-	-	-
		설치비 합계(A×B)	17,511	-	-	-	-	17,511
	운영비	운영 센터 수(C)	0	13	13	13	13	-
		센터당 운영비(D)	-	350	357	364	371	-
		운영비 합계(C×D)	-	4,550	4,641	4,732	4,823	18,746
(시나리오 2)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수가 3,00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운영	설치비	설치 센터 수(E)	7	0	0	0	0	-
		센터당 설치비(F)	1,347	-	-	-	-	-
		설치비 합계(E×F)	9,429	-	-	-	-	9,429
	운영비	운영 센터 수(G)	0	7	7	7	7	-
		센터당 운영비(H)	-	350	357	364	371	-
		운영비 합계(G×H)	-	2,450	2,499	2,548	2,597	10,0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에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195억 2,300만원~362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시나리오 1)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운영	설치비(A)	17,511	0	0	0	0	17,511
	운영비(B)	0	4,550	4,641	4,732	4,823	18,746
	추가재정소요(A+B)	17,511	4,550	4,641	4,732	4,823	36,257
(시나리오 2)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수가 3,00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운영	설치비(C)	9,429	0	0	0	0	9,429
	운영비(D)	0	2,450	2,499	2,548	2,597	10,094
	추가재정소요(C+D)	9,429	2,450	2,499	2,548	2,597	19,5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 수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1. 비용추계 개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8.31. 신동근의원 대표발의)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5~2029년) 총 4,081억원, 연평균 8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109호)
발의일	2023.8.31.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
주요내용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혼인소득공제 신설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3.9.1.) 및 상정(2023.11.13.)
추계결과	5년간(2025~2029년) 총 4,081억원, 연평균 816억원 감소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최근 혼인건수 추이 및 국세청 자료에 따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비율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자인 혼인자 수 추계

- 추계기간 동안 혼인건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 혼인건수의 평균치가 유지된다고 전제
 -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혼인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에 소폭 증가하여 향후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혼인건수 평균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귀속소득 당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고, 부부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여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전체 혼인건수를 근로소득자 부부와 종합소득자 부부로 안분하고,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혼인자 수 추계

총급여액 구간별 혼인자 수를 도출하고, 소득공제에 따른 결정세액 변동분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21년 귀속연도 기준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자 인원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 소득자인 혼인자 수 전망치를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총급여액 구간별 혼인자 수 도출
-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혼인소득공제액 500만원을 공제하여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따른 1인당 결정세액 변동분 도출
- 징수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하는 경우부터 혼인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2025년부터 발생

표 2 비용추계 산식

$$\text{세수효과} = \sum_i 1\text{인당 결정세액 변동분}^{1)} \times \text{적용인원}^{2)}, i \text{는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구간}$$

- 1) 1인당 결정세액 변동분 :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 현행 1인당 결정세액
 - 개정안 1인당 과세표준 = 현행 1인당 과세표준 - 1인당 혼인소득공제액 500만원
 - 개정안 1인당 산출세액 = 개정안의 1인당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2) 적용인원: 총급여액 구간별 혼인자 수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2024~2028년간 혼인건수는 연간 약 19만 5,900건, 근로소득자인 혼인자 수는 연간 약 24만 8,000명으로 추정

- 추계기간 동안 혼인건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 혼인건수의 평균치인 약 19만 5,900건이 유지된다고 전제
 - 2023년 혼인건수는 2023년 상반기 혼인건수의 2배(203.4천건)로 추정

표 3 최근 혼인건수 현황: 2018년~2023년 상반기

(단위: 천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257.6	239.2	213.5	192.5	191.7	101.7

- 추계기간 동안 2021년 귀속소득 신고 당시 근로소득자 비율[=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인 78.7%가 유지되고, 부부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여부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전체 혼인건수 중 근로소득자의 혼인건수를 약 15만 4,100건으로 추정
- 2021년 귀속소득 당시 성별 비율(근로소득자 중 여성/남성 비율 61.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자인 혼인자 수를 약 24만 8,000명으로 추계

표 4 근로소득자의 혼인건수 및 혼인자 수 추계: 2024~2028년

(단위: 천건, 천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혼인건수	154.1	154.1	154.1	154.1	154.1
혼인자 수	248.0	248.0	248.0	248.0	248.0

총급여액 구간별 혼인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에 따른 결정세액 변동분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산출

- 총 세수효과 = 총급여액 구간별 혼인자 수 × 1인당 결정세액 변동분

표 5 2024~2028 귀속연도 세수효과 추계

(단위: 천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혼인자 수 (A)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결정세액 변동분 (D=C-B)	세수효과 (E=A×D)
		현행	개정안	현행(B)	개정안(C)		
합계	248	-	-	-	-	-	-81,617
1.5천만 이하	3	5.2	0.2	0.0	0.0	-0.01	-38
2천만 이하	17	7.2	2.2	0.1	0.0	-0.06	-1,053
3천만 이하	56	11.2	6.2	0.1	0.0	-0.13	-7,209
4천만 이하	41	17.2	12.2	0.4	0.0	-0.40	-16,404
4.5천만 이하	18	21.8	16.8	1.0	0.4	-0.56	-9,860
5천만 이하	15	25.0	20.0	1.4	0.8	-0.59	-8,998
6천만 이하	25	30.3	25.3	2.0	1.4	-0.61	-15,183
8천만 이하	13	41.4	36.4	3.6	2.9	-0.65	-8,363
8.8천만 이하	19	41.4	36.4	3.6	2.8	-0.75	-14,509
1억 이하	19	41.4	41.4	3.6	3.6	-	-
2억 이하	19	58.7	58.7	6.7	6.7	-	-
3억 이하	2	96.2	96.2	16.4	16.4	-	-
5억 이하	1	199.0	199.0	53.5	53.5	-	-
10억 이하	0	327.9	327.9	102.7	102.7	-	-
10억 초과	0	605.4	605.4	215.0	215.0	-	-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500만원의 혼인소득공제 신설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81억원(연평균 8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징수 기준

(단위: 억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연평균
-816	-816	-816	-816	-816	-4,081	-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1. 비용추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9.20.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 공제의 적용요건을 변경하고 정규직 전환 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3년간(2025~2027년) 총 482억원, 연평균 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567호)
발의일	2023.9.20.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주요내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23.11.13.) 및 처리(대안반영폐기, 2023.11.30.)
추계결과	3년간(2025~2027년) 총 482억, 연평균 161억 감소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기업규모별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900~1,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3년말까지 전환된 인원내 대하여 적용될 예정

- 현행 2022년 6월말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년말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 해당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전환인원 1인당 공제액 상승, 공제대상 확대,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병합

표 2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2008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시 전환인원 1인당 세액공제 * 1인당 공제액: 30만원
2014년	☐ 공제액 상향 - 1인당 공제액: 30만원 → 100만원
2015년	☐ 공제액 상향 - 1인당 공제액: 100만원 → 200만원
2017년	☐ 공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액 상향 - 공제대상: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200만원 →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2018년	☐ 공제액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 -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공제 이후 근로관계 유지 의무기간: 1년 → 2년
2022년	☐ 공제요건 강화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2023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개정안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중 비정규직 고용기준 시점을 1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기한을 3년 연장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6월말까지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26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

표 3 현행 및 개정안의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요건	비정규직 고용기준 - 2022.6.30. 당시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 2023.6.30. 당시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한 - 20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202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①2024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와 ②2025년 및 202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를 구분하여 추계

- 2024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이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19~2023년)의 연평균 감면실적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동 제도의 감면실적은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2025년 및 202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에 시차를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 202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에 2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비정규직 고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는 제외하고 세수효과 추계
 - ▶ 202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에 3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비정규직 고용 1년 및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는 제외하고 세수효과 추계
 - ▶ 비정규직 고용 이후 정규직 전환까지 소요된 기간별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의 최근 5개년도 (2017~2021년)의 평균적인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비정규직 고용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소요된 기간별 비중: (1년) 61.3%, (2년) 9.5%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조세지출예산서상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실적은 2019~2023년간 연평균 287억원 수준

표 4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	평균 (2019~2023년)
세액공제 실적	266	305	280	322	262	28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024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19~2023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동 제도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평균 감면액은 287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2025년 및 202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로 인한 세수효과는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 전환의 시차를 반영하여 추정

-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동패널 자료의 민간기업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253건으로, 비정규직 고용에서 정규직 전환까지 소요된 기간별 비중은 다음과 같음
 - ▶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 전환의 기간별 비중: (1년) 61.3%, (2년) 9.5%

표 5 비정규직 고용 이후 기간별 정규직 전환 비중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정규직 전환	50	58	55	39	51	253 (100.0)
- 1년 후	28	32	33	31	31	155 (61.3)
- 2년 후	5	8	4	0	7	24 (9.5)
- 3년 후	17	18	18	8	13	74 (29.2)

주: 1. ()안은 전체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정규직 전환 사례는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025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에 최소 2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비정규직 고용 1년 후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산출
 ➤ 세수효과: 111억원 =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287억원) × (1 - 0.613)
- 2026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 고용시점과 정규직 전환기간에 최소 3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비정규직 고용 1년 및 2년 후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산출
 ➤ 세수효과: 84억원 =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287억원) × (1 - 0.613 - 0.0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변경하고, 정규직 전환 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5년 287억원, 2027년 84억원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82억원(연평균 1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29조의8제3항)	-287	-111	-84	-482	-161

조세 동향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국내 주세 현황 및 주세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주요국의 주세 현황 및 특징을 비교함과 동시에 제도 개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1. 우리나라 주세 과세 현황 및 최근 이슈

(제도 현황) 우리나라 주세 과세체계는 맥주·탁주 등에 대해 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적용하는 구조

- 2023년 기준 종량세율은 리터 당 맥주 885.7원, 탁주 44.4원을 적용하며, 종가세율은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는 72%, 약주·과실주·청주 등의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1 주세 과세표준 및 세율(2023년 4월 1일 이후)

과세표준	과세대상		세율
출고량 (종량세)	주정		57원/ℓ (알콜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발효주	탁주	44.4원/ℓ
		맥주	885.7원/ℓ (생맥주는 80% 세율)
출고가격 (종가세)	증류주	약주, 과실주, 청주	30%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기타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 ¹⁾ 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로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주: 주세액에 대해 교육세 10%를 과세하되, 발효주 중에서 맥주·증류주·기타 주류 중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로 발효주가 아닌 것의 경우는 30% 세율 적용

(과세 현황) 2022년 주세 세수는 3.8조원으로, 주류별 주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출고량·출고금액·신고세액과 관련하여 희석식소주 및 맥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 2022년 주세 세수는 3.8조원으로, 전년도 이연세수 및 코로나19 이후 주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2.7조원) 대비 1.1조원(40.9%) 증가

1)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들) 주류는 발효가 끝난 술에 물과 첨가물을 넣은 주류를 가리킴

표 2 주세 세수 추이(징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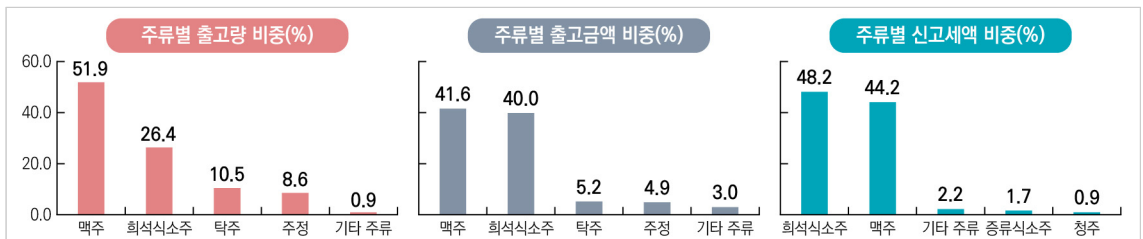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세 세수	32,609	35,041	30,084	26,734	37,665
전년대비 증감률	7.5	7.5	-14.1	-11.1	40.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세를 신고한 국내 출고 주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신고 기준 출고량 및 출고금액 비중이 큰 주류는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 순이며, 납부할 세액의 비중이 큰 주류는 희석식소주, 맥주, 기타주류 순임

그림 1 주세를 신고한 주류별 비중 현황: 출고량·출고금액·신고세액(2022년 신고 기준, 국내분)



주: 국내분에 대한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분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연혁) 주세 과세체계는 종가세 구조 하에서 2000년 국제기구인 WTO의 권고에 따라 주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세율을 72%로 일원화하여 운영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러 국산·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위해 맥주 등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알코올 도수 및 원산지 등을 감안해 주류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던 구조에서, EU 및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WTO 패널 판결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2000년 소주·위스키·브랜디 등 증류주의 세율을 72%로 일원화 하였으며 이후 2007년 맥주의 세율도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72%로 조정
 - ▶ 증류주 세율: ('00년) 희석식소주 35% → 72%, 증류식소주 50% → 72%, 위스키·브랜디 100% → 72%
 - ▶ 맥주 세율: ('97년) 130% → ('00년) 115% → ('01년) 100% → ('05년) 90% → ('06년) 80% → ('07년) 72%
- 2020년 국산·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위해 맥주·탁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였으며 당시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세율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
 - ▶ 종가세 하에서 국산 주류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함
 - ▶ 이후 물가상승기에 직면하면서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 반영폭을 축소 및 폐지함

- 2023년 맥주·탁주 세율에 반영하는 물가변동 수준을 70~130% 범위('가격변동지수')에서 조정²⁾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연동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pm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상황(2023년 12월 18일 기준)

(최근 이슈) 맥주 등의 종량세 전환 이후에도 물가를 반영한 종량세율의 조정 방안,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증류주 등의 종량세 전환과 같은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들도 지속적으로 제기

- (종량세율 조정)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물가연동 대신 필요 시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경우, 물가반영 시점·수준의 적정성과 종가세 주류와의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필요한 상황
-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종가세 하에서는 여전히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23년 세법개정안 심사 시 반영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³⁾을 도입해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함
 - ▶ 기준판매비율은 국산주류의 반출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해 과세기준을 인하하여 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적용할 예정⁴⁾
- (주세 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알코올 소비 억제, 주류 산업의 육성, 세수 확보 등 주세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맥주·탁주 외 나머지 주류의 과세체계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의 필요성 제기
 - ▶ 고용진 의원안(의안번호 2125105)은 증류주류의 과세체계를 종량세(알코올도수 구간별 과세)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주류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

2. 주요국의 주세 과세 현황 비교

(개요) 주세 과세방식은 제품의 부피 또는 제품 내 알코올 함량을 과세단위로 하는 종량세 방식과 제품의 가격을 과세단위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구분

- 제품의 부피에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unitary taxation)은 고알코올·고품질 주류 생산 시 유리해 다양한 제품 개발 유인을 가지나, 세율에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격 대비 실효세율을 감소시킬 가능성
- 제품 내 알코올 함량에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specific taxation)은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고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종량세 특성 상 세율에 물가변동을 미반영 시 실효세율을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2) 가격변동지수('23.4.1.~'24.3.31.): 직전년도 CPI상승률(5.1%)의 70%인 3.57% 적용

3)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국제청장이 소속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결정

4)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의 경우 추후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거쳐 202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국제청 보도자료,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 내려 갑니다", 2023.12.17.)

- 가격에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ad valorem taxation)은 물가 변동 시에도 실효세율 유지가 용이하고 저가 주류 소비층에 유리한 과세방식이나, 외부효과의 내생화 및 제품 특성을 반영한 과세가 어려운 측면 존재

표 3 주세 과세방식 비교

주류 제품의 부피에 과세하는 종량세 (unitary taxation)	주류 내 알코올 함량에 과세하는 종량세 (specific taxation)	주류 가격에 과세하는 종가세 (ad valorem taxation)
- 과세 단위는 제품의 부피(용량) - 물가변동 미반영 시 가격 대비 실효세율 감소 -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 존재 - 고알코올 또는 고품질 주류 생산 시 유리 - 다양한 제품개발 유인 존재 - 저가주류 소비층에 역진적 영향 - 과세행정 간편 - 주종 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	- 과세 단위는 제품 내 순수 알코올 함량 - 물가변동 미반영 시 가격 대비 실효세율 감소 -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가 큰 편 - 저알코올·고품질 주류 생산 시 유리 - 다양한 제품개발 유인 존재 - 저가주류 소비층에 역진적 영향 - 알코올 함량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 주종 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	- 과세 단위는 제품의 가격 - 물가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실효세율 유지 - 외부효과가 가격과 무관한 경우 내생화 어려움 - 고알코올·저품질 주류 생산 시 유리 - 제품 특성을 반영한 과세가 불리 - 저가주류 소비층에 유리 -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 제품 간 상대가격 유지 용이

자료: Sornpaisarn et al, "Resource tool on alcohol taxation and pricing polici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홍범교 외,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6.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들이 맥주·와인·증류주 등 알코올 음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주세 제도를 살펴보면 각국은 주류 산업 및 과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량세·종가세의 과세방식, 세율 조정, 감면 여부 등에 있어 자국의 특징을 반영해 정책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의 여러 국가가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과세 및 알코올 도수별 차등세율 적용, 물가연동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주류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거나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의 주력 산업 및 소규모 양조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 OECD 국가들은 주로 종량세를 활용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호주 등 일부 국가는 종가세를 적용하거나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 EU(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가 알코올 또는 제품 부피에 과세하는 종량세를 선택
 - ▶ OECD 38개국 중 6개국이 최소 1개 이상 주종에 대하여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 호주의 경우 와인, 칠레·콜롬비아·멕시코 등은 전체 주류에 대해 종가세 적용

5) EU는 회원국 간 유해한 조세경쟁 및 회피와 국경 간 무역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세 규율을 적용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주세체계 확립을 위해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 구조, 과세대상, 제조장 및 소규모 제조장, 특정 제품 및 지역에 대한 할인을 등을 규정하는 지침(Directive 92/83/EEC)이 통과되었으며, 주세 최저한세 수준을 제시한 지침(Directive 92/84/EEC)도 통과됨. 다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주세 과세체계의 완전한 일치(full harmonization)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각 주종별 최저세율(minimum excise duty rate)의 형태로만 채택된 상황(홍범교 외,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6.를 참고하여 작성)

- ② 종량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국가별·주류별로 알코올 함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제품 부피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과세대상에 있어 차이
 - ▶ EU국 등 많은 국가가 맥주·증류주 등에 대하여 제품 내 알코올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와인에 대해서는 제품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오스트리아·스페인 등과 같이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음
 - ▶ 우리나라와 캐나다·일본·뉴질랜드·미국 및 EU 일부 국가 등 나머지의 경우 제품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
- ③ OECD 국가 중 23개국이 최소 1개 이상 주종에 대하여 알코올도수 수준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등 15개국은 알코올도수와 관계없이 주종 내 단일한 세율구조를 선택
- ④ 국가별로 주류 및 과세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주세율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⁶⁾
 - ▶ 맥주에 대하여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의 경우, 기본세율(이하, 1헥토리터 내 순수 알코올 함량 기준)은 이스라엘 74.3USD, 핀란드 아일랜드 23.56USD, 독일 2.32USD 등이며, 제품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하, 1헥토리터 기준)이 일본 1,649USD, 노르웨이 39~251USD, 스위스 19~37USD 등으로 다양한 수준
 - ▶ 증류주류(undenatured ethyl alcohol) 세율 역시 아일랜드(이하, 1헥토리터 기준) 12,812USD, 노르웨이 9,569USD, 스페인 1,128USD, 캐나다 1,019USD 등으로 다양함
- ⑤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세율 조정 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종량세를 활용하는 32개국 중 11개로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뉴질랜드·호주(1년에 2회 조정) 등이 해당하며, 나머지 국가는 별도의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율을 조정
 - ▶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부터 물가 자동 연동방식을 폐지할 예정이며, 영국은 2024년까지 물가 연동을 유예한 상황
- ⑥ 대부분의 국가가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주류에 대한 세율 감면 및 면제 제도 등을 적용

6) 국가별 주세율은 OECD(2022)를 기준으로 각국 화폐 기준 세율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표 4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비교

국가	맥주(beer)	와인(still wine)	증류주(undenatured ethyl alcohol)
호주	종량세(알코올부피) ^{M,P,S}	종가세	종량세(알코올부피) ^{M,P}
오스트리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S
벨기에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캐나다	종량세(제품부피) ^{M,P,S}	종량세(제품부피) ^{M,P}	종량세(알코올부피) ^{M,P}
칠레	종가세	종가세	종가세
콜롬비아	종가세	종량세(알코올부피) 및 종가세	종량세(알코올부피) 및 종가세
코스타리카	종량세(알코올부피) ^{M,P}	종량세(알코올부피) ^P	종량세(알코올부피) ^P
체코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덴마크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S
에스토니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M
핀란드	종량세(알코올부피) ^{M,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M
프랑스	종량세(알코올부피) ^{M,P,S}	종량세(제품부피) ^{M,P}	종량세(알코올부피) ^P
독일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S
그리스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S
헝가리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S
아이슬란드	종량세(알코올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아일랜드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M
이스라엘	종량세(알코올부피) ^P	-	종량세(알코올부피) ^P
이탈리아	종량세(알코올부피) ^{P,S}	-	종량세(제품부피) ^P
일본	종량세(제품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종량세(제품부피) ^{M,S}
한국	종량세(제품부피) ^S	종가세	종가세
라트비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종량세(알코올부피) ^S
리투아니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M
룩셈부르크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제품부피)
멕시코	종가세 ^M	종가세 ^M	종가세 ^M
네덜란드	종량세(제품부피) ^{M,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뉴질랜드	종량세(알코올부피) ^{M,P}	종량세(제품부피) ^P	종량세(제품부피) ^{M,P}
노르웨이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및 제품부피) ^M
폴란드	종량세(알코올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종량세(알코올부피)
포르투갈	종량세(제품부피) ^{M,P,S}	-	종량세(제품부피) ^{P,S}
슬로바키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슬로베니아	종량세(알코올부피) ^S	-	종량세(알코올부피) ^P
스페인	종량세(제품부피) ^{M,P}	-	종량세(알코올부피) ^{P,S}
스웨덴	종량세(알코올부피)	종량세(알코올부피) ^M	종량세(알코올부피) ^M
스위스	종량세(제품부피) ^{M,S}	-	종량세(알코올부피) ^S
터키	종가세	종량세(알코올부피) ^M	-
영국	종량세(알코올부피) ^{M,P,S}	종량세(알코올부피) ^{M,P}	종량세(알코올부피) ^{M,P}
미국	종량세(제품부피) ^S	종량세(제품부피) ^M	종량세(제품부피)

주: 1. 와인은 스틸와인(still wine), 증류주(undenatured ethyl alcohol)는 관세코드(2007, 2008)에 따라 구분된 주류에 해당함

2. M은 알코올도수별 세율 구간을 구분한 경우를 가리킴

3. P(굵은 글씨)는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가리킴

4. S는 소규모 사업자 세율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킴(와인의 경우 별도로 조사되지 않아 미포함)

5. 캐나다와 미국은 주세에 대해 연방세와 지방세를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연방세 기준으로 조사

자료: OECD(2022), 「Consumption Tax Trends 2022」; WHO 홈페이지, "Level of taxation adjusted for inflation"; EC홈페이지, Taxes in Europe Database v3(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Search.html)

3. 주요국의 최근 개정 동향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과세체계 개편 및 세율 조정과 관련한 주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최근에는 알코올 함량에 대한 과세 확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주종 간 세율 일원화, 세율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 수준 조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함

영국은 주세 종량세 과세 기준을 제품 부피에서 제품 내 알코올 함량으로 변경하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 구간을 세분화하여 고도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주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반영을 확대⁷⁾

-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3년 기간에는 국민건강 증진 및 재정건전성⁸⁾ 확보를 목적으로 주세율이 물가에 자동 연동하여 인상(duty escalator⁹⁾)되도록 하였으나, 이후 주류 산업 보호 및 육성, 제품 개발 및 고용 장려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주세 인상이 철회되어 최근까지 세율이 인하·동결되어 옴
- 점차 주세가 알코올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 주세 개편¹⁰⁾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과세 기준을 제품 용량이 아닌 제품 내 알코올 함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세율 역시 소매물가지수(RPI)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로 결정함
 - ▶ 이전까지 맥주¹¹⁾·과실주 및 와인 은 제품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증류주는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를 알코올 함량으로 일원화
 - ▶ 알코올도수별로 세율 구간을 세분화하여 고도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
 - ▶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물가연동은 2024년 8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유예

표 5 영국의 주세율 현황(2023년 8월 이후)

(단위: 파운드/알코올 1ℓ)

과세구간(ABV)	맥주(beer)	와인(wine)	증류주 등(Spirits)
0~1.2%	0.00	0.00	0.00
1.3~3.4%	9.27	9.27	9.27
3.5~8.4%	21.01	24.77	24.77
8.5~22%	28.50	28.50	28.50
22%~	31.64	31.64	31.64

주: ABV(Alcohol by volume)은 제품 내 알코올 부피를 가리킴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 Alcohol Duty rates(<https://www.gov.uk/guidance/alcohol-duty-rates#rates-of-duty-per-litre-of-pure-alcohol>)

7) Antony Seely and Francesco Masala, "Alcohol taxation: Government policy up to 2020",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202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3.8.21.

8) 2008년 부가가치세를 인하(17.5→15%) 등의 상황을 감안해 주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 등이 반영됨

9)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고정된 비율만큼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동 기간 주세 세율이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설계됨

10) 2020년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11) 맥주의 경우 2011년부터 고도수(abv 7.5% 초과) 구간을 구분하고 차등 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일본은 주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던 세율 구조를 유사한 주종별로 통일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제품 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고 주종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¹²⁾

- 일본은 1990년 이후 종량세 과세체계 하에서 주종별로 세율 체계를 세분화하여 유지해 왔으나, 유사한 주종임에도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주류시장의 왜곡이 야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동종·유사 제품 간 세율을 통일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2026년 기간 단계적으로 유사한 주종의 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 ▶ 맥주¹³⁾의 경우 맥아 함량 비율 및 원료 등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26년까지 세율이 155,000원/kl¹⁴⁾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맥주와 발포주 중 맥아 함량 비율이 높은 주류의 세율은 인하되고 발포주 중 맥아 함량 비율이 낮은 주류·제3의맥주¹⁴⁾·츠히이¹⁵⁾ 등의 세율은 인상될 예정¹⁶⁾
 - ▶ 발효주 중 일본술(日本酒)의 세율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한편 와인의 세율은 인상되어 세율이 일원화될 예정
 - ▶ 증류주의 경우 2026년 저도수 세율 적용 구간의 상한을 9도에서 11도로 인상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기본세율을 80,000엔에서 100,000엔으로 인상할 예정

표 6 일본의 주세율 현황

(단위: 엔/kl)

품목		현행	개정		
			'20.10.1~	'23.10.1~	'26.10.1~
발포주류	맥주(67%이상)	220,000	200,000	181,000	155,000
	발포주(50%이상)				
	(25%이상)	178,125	167,125	155,000	
	(25%미만)	134,250			
	제3맥주	80,000	108,000	134,250	
양조주류	츠히이	80,000		100,000	
	일본술	120,000	110,000	100,000	
	과실주	80,000	90,000		
혼성주류		220,000	200,000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드, 스피리츠	~9도 80,000			~11도 100,000
		9~13도 1도당 +10,000			11~13도 1도당 +10,000
	리큐어	~9도 80,000			~11도 100,000
		9~12도 1도당 +10,000			11~12도 1도당 +1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주류 시장현황 및 주세법 개정 현황」, 2017 해외 이슈 조사 보고서, 2017.12.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 “일본, 10월부터 주세개정”, 2020.11.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Liquor Tax Reform Japa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8.4.

13) 맥주는 일본 주세법에서 원료 중 맥아의 무게가 물을 제외한 원료 무게의 50% 이상인 것을 맥주, 50% 미만인 것을 발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맥아 사용률이 50% 이상이라도 과즙 등 맥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첨가한 것은 발포주로 분류된다.

14) 맥주와는 다른 원료,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발포성 알코올 음료로, 맥아 대신 콩이나 완두콩을 사용하거나 보리 등을 발효시킨 증류주를 발포주에 첨가해 만든 맥주 맛이 나는 주류 등을 가리킨다.

15) 츠히이(酒ハイ)는 소주에 약간의 탄산과 과즙을 넣은 주류로, 호로요이 등의 리큐르류를 포함한다.

16) 2018년에는 맥주로 정의되는 주류의 기준을 확대하였다.

주세 종량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국가 중에서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주세 부담 및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반영폭을 축소하거나 물가 연동 반영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함

- 캐나다는 2017년 이후 매년 4월 맥주 등에 대한 주세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따라 조정해 왔으나,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법(Bill C-47, Budget Implementation Act, 2023, No. 1, 2023.6. 승인)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상승 한도를 2%로 제한하기로 함
 - ▶ 2023년 4월 주세율은 6.7%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2% 증가가 반영되며 2024년 4월 1일부터는 4.7%의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¹⁷⁾
- 영국은 2013년 이후 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23년 8월 주세를 개편 시점에 소매물가지수(RPI)를 세율에 재연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산안에 따라 (autumn budget) 2024년 8월 1일까지 물가연동을 유예하여 현행 수준으로 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2020년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율 적용 이후 종량세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조정(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CPI 변동률의 70% 반영)해 왔으나, 물가상승이 주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부터 물가연동을 폐지하고 대신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상황(2023년 12월 18일 기준)

17) Global News, "Beer prices could soon go up due to 'beer tax.' What to know", 2023.11.1.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1. 세계 인플레이션 현황

2022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은 8.7%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2023.10)에서 2023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을 6.9%로 전망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수요는 회복된 반면, 공장폐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은 8.7%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IMF는 2023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을 6.9%로 2022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다만,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1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2024p
전세계	2.7	2.7	3.2	3.6	3.5	3.2	4.7	8.7	6.9	5.8
선진국	0.3	0.7	1.7	2.0	1.4	0.7	3.1	7.3	4.6	3.0
신흥 개도국	4.8	4.4	4.5	4.9	5.1	5.2	5.9	9.8	8.5	7.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11.28. 조회)

2.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조세정책은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G7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조세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가.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 또는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횡재세의 세원은 초과이익(surplus profits) 또는 국가별로 지정한 이익의 상한을 초과하는 초과수익(surplus profits above price cap)이며, 세원 유형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90%의 세율이 적용
 - ▶ 횡재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 원유 등 에너지생산자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부과
- G7 국가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가 은행 및 에너지생산자 등에 대해 횡재세 형태의 세금 및 기여금, 부담금 등을 부과
 - ▶ 미국의 경우 2023년 11월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원유 생산업자를 중심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일본의 경우 횡재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표 2 G7 국가의 횡재세 도입 현황¹⁾

국가	횡재세 명칭	세원	세율	적용기간	도입상태 ²⁾
캐나다	은행 및 생명보험사에 대한 회복 배당금 (Recovery dividend on banks and life insurers)	10억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은행업·생명보험업의 FY2020~2021 과세대상 소득	15%	한시(2022) * 5년간 균분납부	시행
프랑스	석유, 가스, 석탄과 석유정제 부문에 대한 연대기여금 (Solidarity contribution for oil, gas, coal and refinery sectors)	초과 이익	33%	한시(2022)	시행
	에너지생산자의 시장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Contribution on surplus market revenues for energy producers)	시장 초과수익(이익상한선 설정)	90%	한시 (‘22.12~’23.12)	시행
독일	석유, 가스, 석탄과 석유정제 부문에 대한 연대기여금 (Solidarity contribution for oil, gas, coal and refinery sectors)	초과 이익	33%	한시 (2022~2023)	시행
	에너지생산자의 시장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Contribution on surplus market revenues for energy producers)	시장 초과수익 (이익상한선 180유로/MWh)	90%	한시 (‘22.12~’23.6)	시행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횡재세 (Windfall tax on banks)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자마진 * (‘22) 5%, (‘23) 10%	40%	한시 (2022~2023)	시행
	높은 에너지 청구서에 대한 임시 기여금 (Extraordinary contribution against high energy bills)	다년도 부가가치 스프레드	35%	일회성 부과	시행
	에너지생산자, 석유와 가스에 대한 연대기여금 (Solidarity contribution for energy producers, oil and gas)	초과 이익	50%	한시 (2022~2023)	시행
	에너지생산자의 시장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Contribution on surplus market revenues for energy producers)	시장 초과수익 (이익상한선 180유로/MWh)	100%	한시 (‘22.12~’23.6)	시행

국가	형제세 명칭	세원	세율	적용기간	도입상태 ²⁾
영국	에너지 이익 부담금 (Energy Profits Levy)	초과 이윤	35% (‘22년은 25%)	한시 (‘22.5.26. ~‘25.12.31.) *연장예정(~‘28.3.)	시행
	재생에너지 등 전력사업자 부담금 (Electricity Generator Levy(renewable, biomass and nuclear energy))	예외적인 수입 (GBP75/MWh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발생한 수입)	45%	한시 (‘23.1~‘28.3.)	제안
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에 따른 형제세 (Windfall profits excise tax for production or import of crude oil under The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15~‘19년 원유의 현재가격과 평균가격(인플레이션 조정)의 차이	50%	한시	제안
	거대 통합석유기업에 대한 형제세 (Windfall profits excise tax on large integrated oil companies under The Stop Gas Price Gouging Tax and Rebate Act)	초과 과세소득 (Excess taxable income)	50%	한시 (2022)	제안
	거대 원유 생산업체에 대한 소비세 (Excise tax for large crude oil producers under The Stop Profiting Off Putin’s War Act)	조정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50/ 75%	-	제안
	거대 통합석유기업에 대한 소비세 (Excise tax for integrated oil companies under The Government Oversight of Unpatriotic Greed in Energy and the Federal Gas Tax Suspension and Windfall Profits Tax Act of 2022)	초과 조정 과세소득 (Excess adjusted taxable income)	50%	한시	제안
	석유와 가스부문에 대한 형제세 (Windfall profit additional tax for oil and gas sector under the Taxing Big Oil Profiteers Act)	초과 이윤	21%	한시 (2025)	제안

주: 1) G7 국가 중 일본의 경우 형제세 도입이 논의되지 않음

2) 도입상태는 발표(announced), 제안(proposed), 시행(implemented)로 구분

- 발표: 정부에서 형제세의 제정 가능성은 발표하였으나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제안: 입법안이 입법기관에 제출/발의되어 공개된 상태

- 시행: 제안된 입법안이 법률안으로 제정되어 정식으로 시행되는 상태

자료: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 DB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¹⁾

각국은 법인의 초과이익에 대한 형제세 부과 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 형태의 조세지원을 시행

- G7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5개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가 유류세,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거나 향후 시행 예정
- ▶ 일본의 경우 조세지원이 아닌 보조금 지급 형태의 재정지원을 위주로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²⁾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7. 및 각국의 2023/2024 예산안, IBFD의 Tax Research Platform DB를 바탕으로 작성

2)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금 및 휘발유·전기·가스 등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2023.4~2024.3) 추경예산안이 11월 29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일본 재무성(<https://www.mof.go.jp/>), 2023.12.4. 접속)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 캐나다

-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품용역세(GST) 환급 확대,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FHSA) 등을 시행
 - (상품용역세 환급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환급 금액을 2배로 인상('22년 하반기)
 -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 시행) 생애 첫 주택 구매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40,000캐나다달러까지 저축 가능한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FHSA)를 시행하였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에는 비과세가 적용
- 이외에도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확대, 식료품비 환급(Grocery Rebate) 등을 시행
 - (캐나다 근로자 혜택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비 형태의 소득세 공제(환급)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1,428캐나다달러, 부부의 경우 최대 2,461캐나다달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함
 - (식료품비 환급) 일회성 정책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 약 1,100만명을 대상으로 식료품비 환급을 시행하였으며, 규모는 4인 가구(두 자녀 가구) 기준 467캐나다달러 수준('23.7)

(2) 프랑스

-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2022년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법안(Projet de loi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을 처리³⁾
 -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텔레비전 수신부담금을 폐지
 - (관세 동결 등)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천연가스 판매에 대한 관세 및 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 시행
 -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규제 관세(TRVg)를 동결('21.11 이후)하고, 조세를 포함한 천연가스의 가격상한제도 시행('21.10~'22년 말)
 - 전기 판매 규제 관세 상한 정책을 시행('22.2 이후)하여, 조세를 포함한 전기가격 인상을 4%까지 제한
- 이외에도 2024년 예산안을 통해 구매력 보호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도록 하며,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조치 등을 발표
 -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과세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가계의 구매력을 보호
 - 2024년 프랑스의 인플레이션 전망(2.5%) 대비 공무원의 평균 급여인상률(4.4%)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국가공무원의 구매력 보호

3)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공급자에게 리터당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유류 가격을 할인함

(3) 독일

- 독일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연방정부에서 에너지세 감면 및 소득세 혜택 등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연방의회에서 모두 승인
 - ▶ 재생에너지 추가부담금(EEG Umlage) 징수 중단 및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 (재생에너지 추가부담금 폐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3.72센트/kWh) 폐지('22.7.1.)
 - (유류세 인하) 유류세를 휘발유 리터당 29.55센트, 경유 14.04센트로 한시 인하('22.6.1.~8.31.)
 - (부가가치세 인하)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19%에서 7%로 한시 인하('22.10~'24.3)
 - (탄소세 부과 유예) 가정용 난방 및 휘발유 등 운송 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1년 유예하며, 이에 '23~'25년 탄소세 인상 계획도 1년씩 순연⁴⁾
 - * 종전 계획: ('21년) 톤당 25유로, ('22년) 톤당 30유로, ('23~'25년) 매년 톤당 5유로씩 인상
 -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인상 및 보조금 지급
 - 근로소득표준공제(Arbeitnehmerpauschbetrag) 한도 1,200유로(종전 대비 200유로 인상)('22.1.1. 이후)
 - 기본공제(Grundfreibetrag) 한도 1만 347유로(종전 대비 363유로 인상)('22.1.1. 이후)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에 대한 통근수당 특별공제를 0.35센트에서 0.38센트로 인상

(4)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화석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및 전기 에너지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조세지원 시행
 - ▶ (유류세 인하)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유류세 리터당 25센트(부가가치세 포함 30.5센트) 한시 인하('22년)
 - ▶ (부가가치세 인하) 전기·가스 에너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0%/22%(사용량에 따른 세율)에서 5%로 한시 인하
 - ▶ 이외에도 에너지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만족하는 요건에 따라 최대 45%) 및 화물운송업체가 경유 구매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28% 세액 한시 공제('22.1/4분기), 천연가스 사용집약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등의 조치 시행

(5) 영국

- 영국은 2022년 및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고물가 대응 및 가계 비용 절감 등과 관련하여 카운슬세 환급 및 유류세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 등 계획을 발표

4) KITA, "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패키지 발표...탄소세 부과 1년 유예", 202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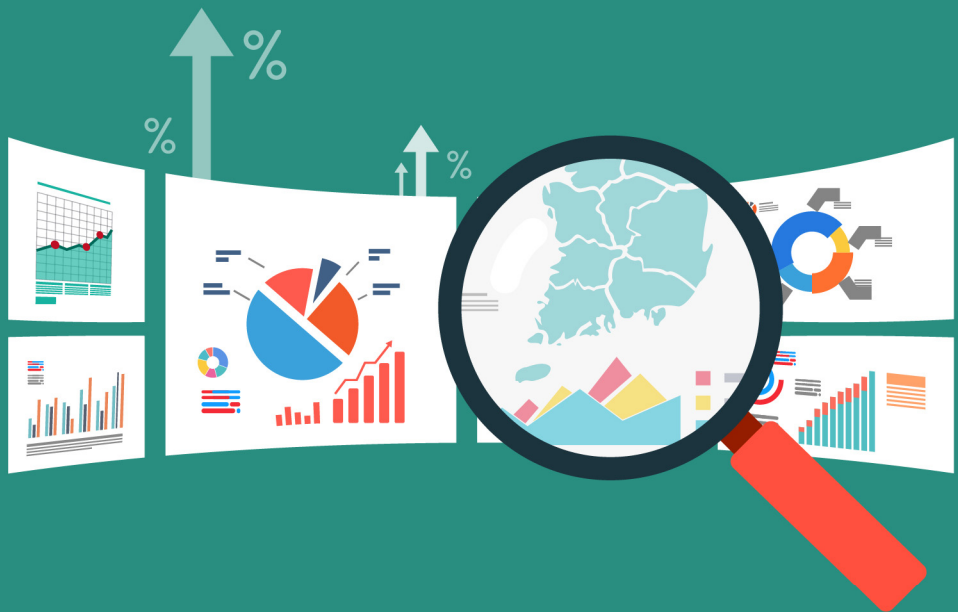
- ▶ (카운슬세 환급) 카운슬세 부과구간 A~D(council tax bands A-D)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50파운드의 카운슬세 환급
- ▶ (유류세 인하) 휘발유, 경유 유류세 리터당 5펜스 인하
 - '22년 3월부터 12개월간 유류세 인하 적용 후 종전의 인상 계획(리터당 11펜스)을 철회하고 유류세 인하 적용기한을 '24년 2월까지 12개월 연장
- ▶ (부가가치세 감세)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5%→0%)
 - 태양광패널(solar panels), 열펌프(heating pump), 지붕단열재(roof insulation) 등에 대한 감면
- ▶ 일반 맥주에 대한 주세 동결, 사과주(cider)에 대한 주세 감면을 확대

(6) 미국

-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제정
 -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이 포함
 - 태양광 사업 투자 비용의 최대 30%를 10년간 공제(단, '33년 26%, '34년 22%로 공제율 축소)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함(단,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정)
 - ▶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법인세 도입 및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부과, 처방약 가격 개혁, 국세청 과세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
 - (최저법인세 도입) 3년간 연평균 수입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15%의 최저법인세 부과
 - (자사주 매입 소비세 부과) 기업이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
- 또한 미국은 2024년 예산안에 가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아동수당(Child Tax Credit: CTC) 재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등을 포함
 - ▶ 아동 1명당 6세 이상은 최대 \$3,000(월 \$250), 6세 미만은 최대 \$3,600(월 \$300)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재도입
 - ▶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연방소득세 감면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주택 공급 관련 세액공제 등에 대한 예산 배정
- 이외에도 조지아, 메릴랜드 등 일부 주(州)의 경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감면한 바 있음
 - ▶ 조지아: 유류세 면제, (1차) '22년 3월~'23년 1월, (2차) '23년 9월~'23년 11월
 - ▶ 메릴랜드: 유류세 면제, '22년 3월~'22년 4월
 - ▶ 코네티컷: 유류세 감면(갤런당 25센트) '22년 4월~'22년 6월

조세 이슈 및 분석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태 정 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1. 개관

R&D 활동은 기술 확산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 효과)가 존재하지만 장기간 대규모 비용이 소요됨에도 성공 확률이 낮은 관계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민간 영역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R&D 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성공적인 연구개발 결과물의 무임승차 가능성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R&D 투자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됨
 - ▶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 인프라 성격의 기초·원천기술 R&D 등이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은 기술 패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을 이용한 재정지출 뿐 아니라 간접적 재정지원인 조세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

-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GERD) 비중¹⁾은 4.9%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00년(2.1%) 대비 2.8%p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표 1 OECD회원국의 GDP 대비 R&D 투자(GERD) 비중 변화

(단위: GDP대비 %, %p)

	한국	이스라엘	미국 ¹⁾	일본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EU 평균
2000년	2.1	3.8	2.6	2.9	2.4	2.1	2.1	1.7
2021년	4.9	5.6	3.5	3.3	3.1	2.2	2.7	2.2
변화('21-'00)	2.8	1.7	0.8	0.4	0.7	0.1	0.6	0.5

주 1) 미국은 2020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2019년 값을 사용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1) 국내총연구개발비(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 비중은 국가 간 R&D 투자 비중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내에서 수행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 연구소 부문의 총 R&D 지출(경상지출 및 자본적 지출)의 GDP 대비 비중으로 제시됨

다음에서는 2024년 R&D 예산안의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R&D 분야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R&D 분야 조세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국제비교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도 R&D 분야 정부예산안이 전년 31.8조원 대비 18.6% 감액된 25.9조원으로 편성되면서 국가 R&D 지원기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됨
- 현행 우리나라 R&D 분야 조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

2.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가. R&D 조세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 규모는 2020년 3.0조원에서 2022년 4.1조원으로 증가한 후 2023년 5.1조원, 2024년에는 5.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최근 '국가전략기술' 등 R&D 관련 조세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점에 주로 기인함

- 최근 3년(2021~2023년) R&D 조세지원 관련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
 - 2021년: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 R&D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22년: 국가전략기술 등 R&D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1~2%p 상향
 - 2023년: 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R&D)로 분류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3.0조원에서 2022년 4.1조원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5.1조원, 2024년에는 5.3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연평균 증가율 15.7%)
 - 한편 동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분야로 분류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감면액을 연구개발 조세지원으로 포함할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분야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연평균 증가율
30,488	30,270	41,443	50,945	52,873	15.7

주: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기준 중 연구개발(R&D)에 속하는 조세지출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치의 합계이며, 동 분류가 아닌 투자촉진 분류에 속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세부 지원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액을 추가할 경우 현재 규모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항목별 감면자료는 이용할 수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문 R&D(BERD)²⁾에 대한 조세지원 비중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대비 낮지만 미국·일본, OECD·EU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9위에 해당

-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문 R&D 조세지원 비중은 0.16%로 프랑스·영국·아일랜드·벨기에·오스트리아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상위 6위로 상승

표 3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조세지원 비중(2020년 기준)

(단위: GDP대비 %)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미국 ¹⁾	일본	OECD평균	EU평균
0.3124 (1위)	0.2912 (2위)	0.1455 (8위)	0.1425 (9위)	0.1192 (12위)	0.0937 (16위)	0.123 (-)	0.0981 (-)

주: ()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순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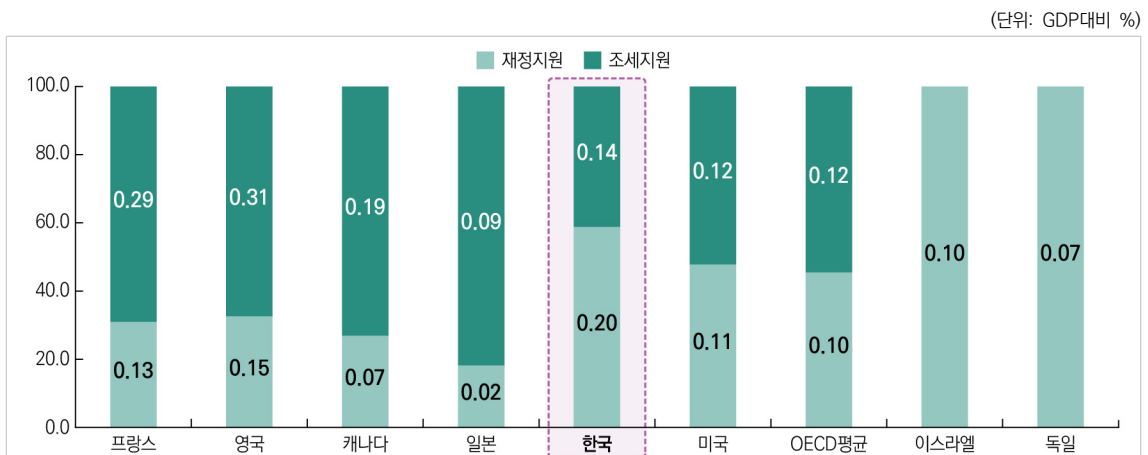
1) 미국은 2020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2019년 값을 사용함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GDP 대비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을 조세지원 뿐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넓혀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두 정책수단간의 비중은 재정지원이 6, 조세지원이 4 수준

-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영국·캐나다·일본의 경우 기업 R&D 투자 지원에 있어 재정지원 보다 조세지원 방식의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이스라엘 및 독일의 경우 재정지원에 주력하는 방식

그림 1 GDP 대비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별(재정지원/조세지원) 비중(2020년 기준)



주: 미국은 2020년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2019년 값을 사용함

자료: OECD, INNOTAX(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BERD)

나. R&D 조세지원 방식

우리나라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R&D 관련 시설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임. 동 제도는 지원대상 R&D 기술, 기업 규모에 따라 조세지원 수준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 형태로 설계됨

- (조세지원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R&D 관련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R&D 투자 관련 조세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이 일반적
 - ▶ 그 외 R&D 관련 투자자 및 연구인력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소득공제, 소득세 분할납부 등 과세특례³⁾ 방식이 적용되나 이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연구개발이 성공한 이후 단계의 조세지원에 해당
- (R&D 조세지원 분야) 크게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⁴⁾ R&D, 국가전략기술⁵⁾ R&D 3가지로 분류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공제수준을 더 높게 설정함
 - ▶ 현재 R&D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은 매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되며, 열거된 기술에 한정하여 조세지원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름
- (세액공제액 산출 방식) 일반R&D 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만 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증가분 방식과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된 반면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국가전략기술 R&D의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도록 설계
 - ▶ 당기분 방식: 국가 전체의 R&D 투자수준 증가에 유용한 방식으로 공제액 산출이 간단하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지원액도 증가하는 풀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증가분 방식: 현 수준의 R&D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R&D 투자를 유인하는 장점이 있음. 다만 계산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침체기의 경우 조세지원의 효과성이 감소하게 됨
- (기업규모별) 대기업 대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우대

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또는 납부·과세특례 등이 존재함

4) 2010년 특례규정으로 2년 한시 적용으로 도입된 후 대상기술 추가 및 일몰기한 연장이 진행되었음. 2023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인공지능, 에너지·환경, 로봇 등 13개 분야에 대해 총262개임

5) 2022년 도입당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에서 2023년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 6개 분야, 54개 기술로 확대

표 4 현행 우리나라 R&D 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단위: 억원, %)

제도명 (근거법)	주요내용					일몰 기한	감면액		
	지원대상	공제율			'22		'23 ^{전망}	'24 ^{전망}	
		대	중견	중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¹⁾									
- 일반 R&D	자체 및 위탁·공동 R&D 비용과 인력개발비 (①, ② 중 택1)	① 증가분	25	40	50	없음	23,526	29,341	30,412
		② 당기분	2	8	25				
- 신성장·원천기술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20~30	20~40	30~40	'24.12.	6,720	8,381	8,687	
- 국가전략기술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차	30~40	30~40	40~50	'24.12.	6,985	8,712	9,030	
통합투자세액공제 ²⁾ (조특법 §24)	일반시설	1 (3)	5 (7)	10 (12)	없음	21,997	20,782	56,83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6 (10)	12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15	25	'24.12.				

주: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분야별 감면액은 국제통계(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의 2022년 감면실적 비중이 2023~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재계산한 값임

2)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중 ()는 23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고 R&D 관련 감면액은 항목별 실적 미집계로 구분이 곤란
자료: 국세청, 국제통계연보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회원국의 경우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식의 활용도가 높은 편(70.9%)

- R&D 조세지원 방식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속 감가상각이 대표적이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 등도 활용됨
 - 세액공제: R&D 투자액의 일정 비율 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
 - 소득공제: R&D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속감가상각: 기계·설비 등의 내용연수 초기에 더 큰 금액을 상각하여 회계상 비용을 크게 인식하는 방식

표 5 OECD 회원국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2022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속감가상각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활용 국가수	29개국 (40.3%)	22개국 (30.6%)	11개국 (15.3%)	10개국 (13.9%)

주 1. 1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R&D 조세지원 유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유형별로 각각 중복하여 집계한 것임

2. ()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OECD, INNOTAX(Tax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 <https://stip.oecd.org/innotax/>)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 참고로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조세지원 방식 뿐 아니라 현금보조금, 특허박스 등 특허관련 인센티브, 조세휴일 등 다양한 방식이 중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기업 R&D 지원방식별 활용 수준 (총 조사대상 46개국 기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금보조금	가속 감가상각	특허 관련 인센티브	경감세율	사회보장기여금/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휴일 (tax holiday)
29개국	28개국	27개국	22개국	21개국	20개국	14개국	13개국

주: 1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R&D 지원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방식별로 각각 중복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EY, Worldwide R&D Incentives Reference Guide 2023, pp.6~9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R&D 조세지원에 있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설정한 국가는 일본·영국 등 총 8개국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설정한 8개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공제율을 최소 3%(일본)~최대 36%(콜롬비아) 높게 설정함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공제율(%): (대기업) 최소 1~최대 40, (중소기업) 최소 10~최대 50
 - ▶ 당기분 방식 공제율(%): (대기업) 최소 1~최대 25, (중소기업) 최소 10~최대 25
 - ▶ 증가분 방식 공제율(%): (대기업) 최소 20~최대 40, (중소기업) 최소 30~최대 50

표 7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R&D 공제율 차등설정 유무(2022년 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율이 동일한 국가 (29개국)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설정 국가(8개국) 및 공제율 격차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호주(12%), 캐나다(18%), 콜롬비아(36%), 아이슬란드(12%), 일본(3%), 한국(24%) ¹⁾ , 네덜란드(16%), 영국(15%)

주 1) 일반R&D 투자세액공제 당기분 방식 기준에 해당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다. R&D 조세지원 적용 후 실효세율 수준

우리나라의 R&D 투자에 대한 법인의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24.04%로 미국(21.57%), 이스라엘(21.07%) 등의 국가와 함께 낮지 않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13.06%) 대비 높은 수준

- R&D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에는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 감가상각 수준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

- ▶ 우리나라 R&D 조세지원의 경우 수혜자 비중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지만 감면세액 규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2019년 기준, R&D 조세지원의 수혜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한 반면 전체 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높은 편⁶⁾

표 8 OECD 주요국의 R&D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2022년)

(단위: %)

프랑스	OECD 평균	캐나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	미국	한국
6.7	13.06	17.88	18.46	19.19	21.07	21.57	24.04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3. 정책적 시사점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의 R&D 분야 총 지출 규모는 31.5조원으로 재정지원 25.9조원, 조세지원 5.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정부지원 방식 중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2024년도 들어 감액 편성된 반면 조세지원은 R&D 지원대상 기술의 종류가 매년 추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세제지원 강화에 따라 감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발하면서 혁신성장과 기술패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 점검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현재 R&D 조세지원은 시행령⁷⁾에 열거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결정 속도가 신기술 출현 및 기술진보 속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⁸⁾

우리나라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① 우리나라의 기업 부문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OECD 및 EU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고, ②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설정된 국가는 총 8개국이며, ③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 후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OECD, "R&D Tax Incentives: Korea", 2021, p.3.

7)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 되어 분기당 1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만약 정부를 대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등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기술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규정됨

8)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실시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기업업계의 경우 해당 기업의 R&D 활동이 '신성장 원천기술 R&D 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까지 4년이 소요되었고, 이후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세제지원 요건으로 규정된 기업내 R&D 별도공간 및 인력배치, 별도 회계처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행정부담이 수반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실제 디지털 기술 기업들은 업계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팀을 개편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조세지원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후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차적으로는 조세지원의 절대적 수준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방식의 선호,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차등설정, 감면 적용 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장치가 작동한 결과일 수 있음
 - ▶ 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효세율에는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 수준, 가속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 방식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으로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전통적 지원방식 뿐 아니라 가속 감가상각,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대한 한시적 조세면제(조세휴일) 등 정부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민간 R&D 촉진이라는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시점임

- EU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R&D 상위 2,500개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로 2021년 53개 대비 감소하였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 또한 3.0%로 미국(42.1%), 독일(8.3%) 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9.3%)·중국(17.8%)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9) EU, "2023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023, p.12.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 문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6)

1. 논의 배경

「2024년도 조세지출¹⁾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국세감면율은 조세지출의 총량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지출 전 국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가 일정비율(법정한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국세감면율(%): $\text{국세감면액} / (\text{국세수입} + \text{국세감면액}) \times 100$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예상되며, 법정한도 14.0%를 2.3%p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0년(2015~2024년) 중 4개년(2019, 2020, 2023, 2024년²⁾)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
-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반영 시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4.3%를 1.6%p 초과하며 2023년, 2024년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전략 없이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대부분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세감면율이 실효성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2023년 일몰도래 항목 71건 중 58건(81.7%, 3.4조원 규모)에 대해 제도 재설계 없이 일몰기한만 연장

본고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³⁾

1)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2) 2023년, 2024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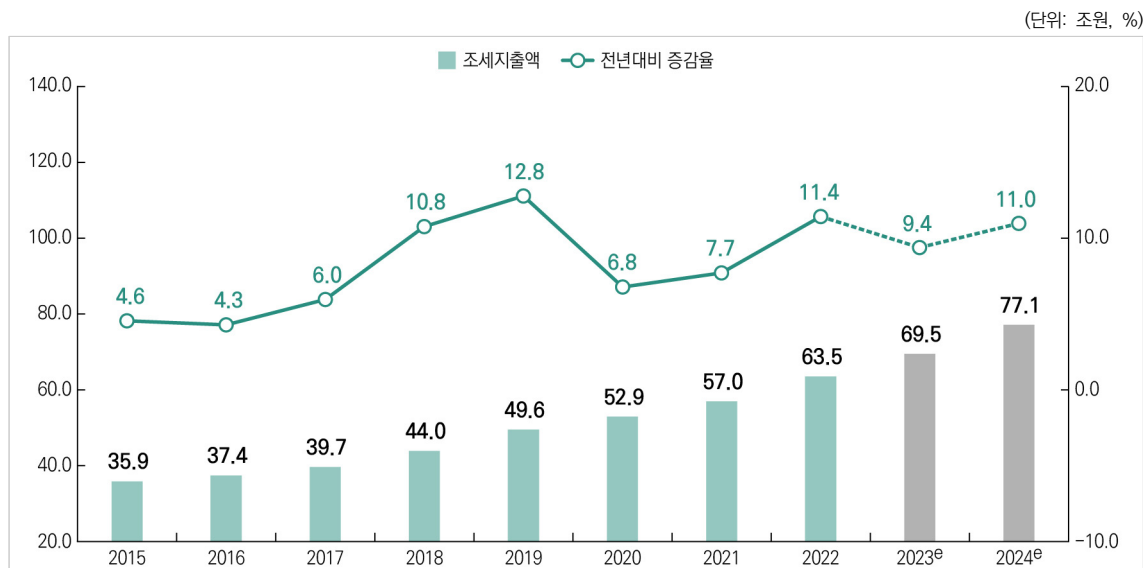
3) 본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2023.10.) 참조

2. 현황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조세지출예산 규모는 2023년(69.5조원) 대비 11.0% 증가한 77.1조원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년(2015~2024년) 간 조세지출예산 실적 및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볼 때 2019년 12.8%, 2022년 11.4%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상향(3조 6,051억원 증가) 및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8,997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

그림 1 최근 10년간 조세지출예산 추이: 2015~2024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지출이 조세지출 전 국세수입 대비 일정 비율이 넘지 않도록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

- 조세지출은 당초 징수되었어야 할 국세를 감면·이연해 주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증가는 국가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국세감면율 한도제 도입
 - ▶ 「국가재정법」 제88조에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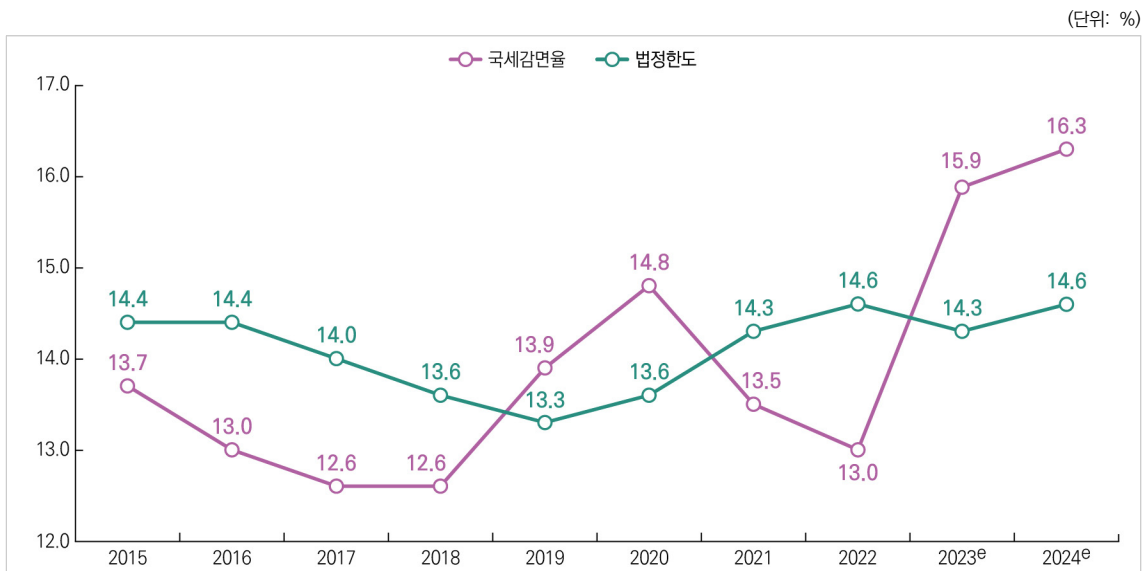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10년 중(2015~2024년) 절반에 가까운 4개년(2019, 2020, 2023, 2024년)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그 초과폭도 확대되는 양상

- 국세감면율은 각각 2019년은 0.6%p, 2020년은 1.2%p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으며, 2023년은 1.6%p, 2024년은 1.7%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조세지출예산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세수입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예년보다 더 크게 초과하는 양상

그림 2 최근 10년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2015~2024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러한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발생함에도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나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법정한도 초과 사유를 분석하거나 국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음

3.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구속력 부재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

-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권고적 성격
- 또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

실효성 있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 검토
 - ▶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국세감면율 한도제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표 1 국세감면율 한도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원안 발의 현황

대표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추경호 의원	2020.6.5.	2100229	• 정부의 국세감면율 관리 의무화
류성걸 의원	2020.12.3.	2106086	• 정부의 국세감면율 관리 의무화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감면 내역과 사유 국회 제출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조회일: 2023.12.13.

나. 법정한도 산출 방식 문제

직전 3개년도의 실적이 차년도 법정한도에 반영되는 현재의 산출방식에 따라, 당해연도(t)의 법정한도 초과 국세감면율 실적이 차년도(t+1)의 법정한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 문제 발생

- 2023년의 경우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2024년 법정한도도 상승 예상
 - ▶ 국세수입 재추계 기준 2023년 국세감면율 반영 시 2024년 법정한도는 0.6%p상승(14.0%→14.6%)

표 2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 기준 2023년 국세감면율 및 2024년 법정한도

(단위: %, %p)

구분	본예산 기준[A]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재추계 국세수입 기준[B]	상승분[B-A]
2023년 국세감면율	13.9	15.9	2.0
2024년 법정한도	14.0	14.6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와 같이 법정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이후의 조세지출예산 증가를 합리화하는 현상 발생
 -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국세감면율-법정한도 차이 2.3%p가 1.7%p로 축소
 - 높아진 법정한도가 차년도의 국세감면율 이상 증가를 정당화시킬 가능성 존재
 - t년도의 법정한도 초과 국세감면율을 반영하며 높아진 t+1년도 법정한도로 인해, 당초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던 t+1년도 국세감면율 잠정치가 법정한도 이하로 용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차년도 법정한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도록 법정한도 산출 산식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정한도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제 운용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한선 또는 증가율의 한도 설정 등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다.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문제

국세감면율의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일몰제도 및 조세특례 평가제도 등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될 필요

-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도 운영
- 또한 무분별한 조세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조세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 ▶ 조세특례 심층평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① 해당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의무심층평가) 또는 ②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 항목(임의심층평가)에 대해 심층평가 수행
- ▶ 그 외에도 각 소관 부처별로 조세특례항목에 대한 조세특례평가서(자율평가) 작성

그러나 올해처럼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대부분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생략하며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조세지출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황

- 2023년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비율은 91.5%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으며, 당초 취지대로 일몰종료되는 항목은 8.5%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치
 -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함에도 정부는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음
- 또한 최근 5년간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대부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는데, 이러한 일몰기한의 연례적인 연장으로 인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조세특례 항목이 늘어나면서 조세특례 총량은 점점 증가하게 됨
 - ▶ 이는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고 총량 관리를 어렵게 만들며 국세감면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표 3 최근 5년간 정부의 일몰도래 항목 정비계획: 2019~2023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종료	7(20.6%)	10(18.5%)	9(10.5%)	10(13.5%)	6(8.5%)
연장	27(79.4%)	44(81.5%)	77(89.5%)	64(86.5%)	65(91.5%)
재설계연장	9(26.5%)	5(9.3%)	23(26.7%)	15(20.3%)	7(9.9%)
기한연장	18(52.9%)	39(72.2%)	54(62.8%)	49(66.2%)	58(81.7%)
합계	34(100.0%)	54(100.0%)	86(100.0%)	74(100.0%)	71(100.0%)

주: 1. 재설계연장은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한연장은 제도 재설계 없이 일몰기한만 연장한 경우를 의미

2. 괄호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각 연도

- 다음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평가 대상 항목 대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함
 -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건수 비중은 2019년 60.0%에서 2023년 85.7%로 증가

표 4 최근 5년 간 정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	2(40.0%)	3(60.0%)	1(25.0%)	1(12.5%)	1(14.3%)
면제	3(60.0%)	2(40.0%)	3(75.0%)	7(87.5%)	6(85.7%)
합계	5(100.0%)	5(100.0%)	4(100.0%)	8(100.0%)	7(100.0%)

주: 1. 괄호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또 항목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일몰기한 연장으로 제언된 경우는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제도의 축소·재설계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결과일수록 그 환류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2023년의 경우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확대 연장 결과는 전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반면, 축소·폐지 또는 제도 재설계 결과의 경우 모두 반영되지 않음

표 5 최근 5년 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의 정부안 환류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심층평가 결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순·확대 연장	2/2(100.0%)	6/7(85.7%)	5/6(83.3%)	5/5(100.0%)	3/3(100.0%)
축소연장 및 장기적 축소·폐지	1/1(100.0%)	3/4(75.0%)	2/8(25.0%)	1/8(12.5%)	0/5(0.0%)
제도 재설계	-	-	1/4(25.0%)	1/3(33.3%)	0/2(0.0%)

주: 1. B/A : A = 해당 유형의 심층평가 결과 총 건수, B = 해당 심층평가 결과 중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건수
 2. 괄호는 심층평가 결과 유형별 정부 세법개정안 반영 비중
 3. 의무심층평가 결과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러한 예비타당성 평가의 면제 및 심층평가 결과의 미환류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세특례 제도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높지 않은 조세특례 항목이 신설·유지되면서 조세지출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국제감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몰제도 및 조세특례 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조세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

- 일몰도래 항목의 폐지비율 하한·신설 조세특례 항목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조세지출 감축목표 수준을 정하는 등 일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
 -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소관 부처가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세수감소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할 필요
 - 현행 일몰제도가 있는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제도를 없애고 항구화하려는 경우 심층평가를 의무화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여 조세특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
 - ▶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및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
-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⁴⁾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를 감안할 필요
 - ▶ 제410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3.11.)에서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4. 요약 및 시사점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부재한 등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

-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권고적 성격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4차례나 초과하는 등 국세감면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감면율 한도제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한편, 법정한도 산출방식을 조정하여 법정한도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 검토
-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법정한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식 개선 필요

아울러 일몰제도, 조세특례 평가제도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되어 국세감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

- 소관 부처 평가 및 심층평가를 강화하고 일몰도래 항목의 폐지비용 하한·신설 항목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일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심층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는 등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필요
- 나아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총 재정지출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4) 「국회법」 제79조의3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때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평가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정추계&세제 이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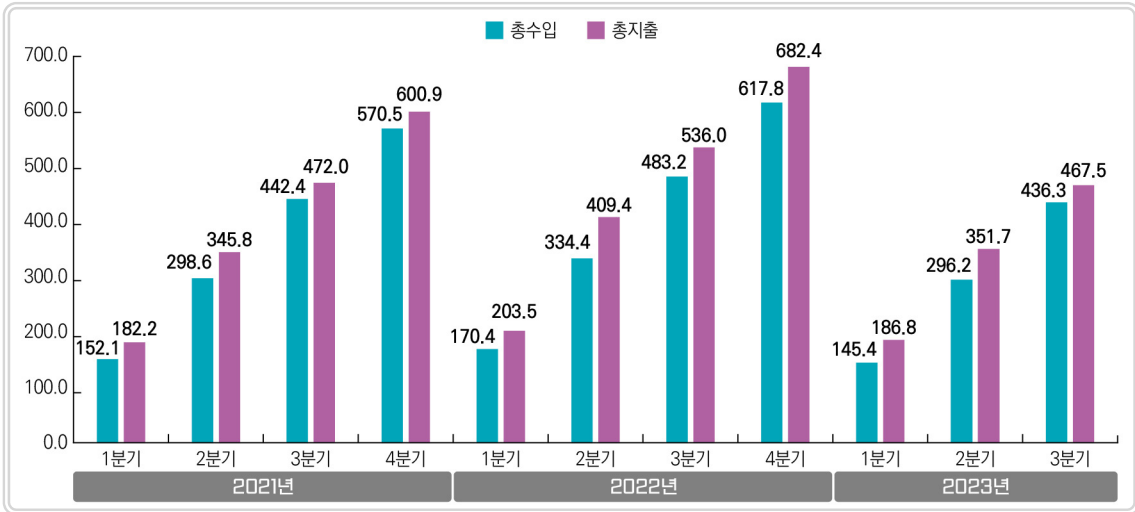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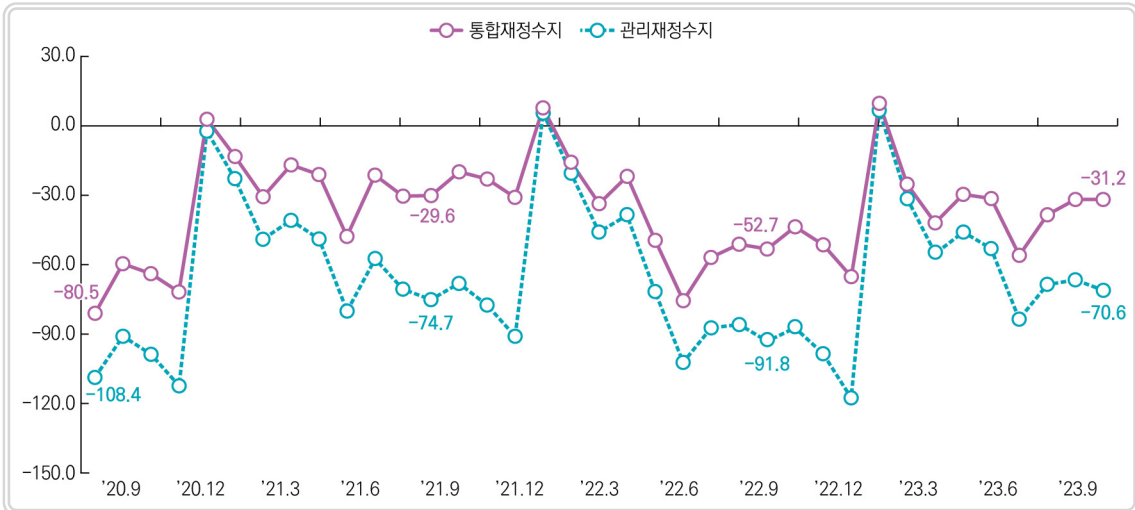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수지(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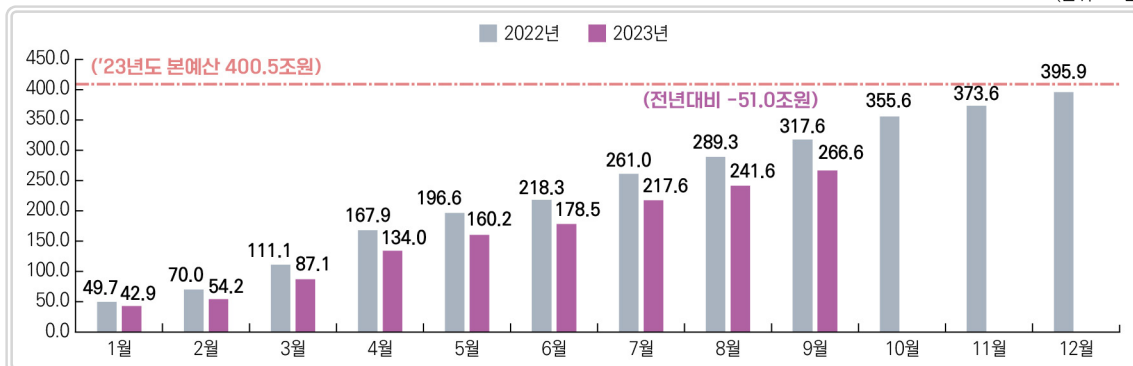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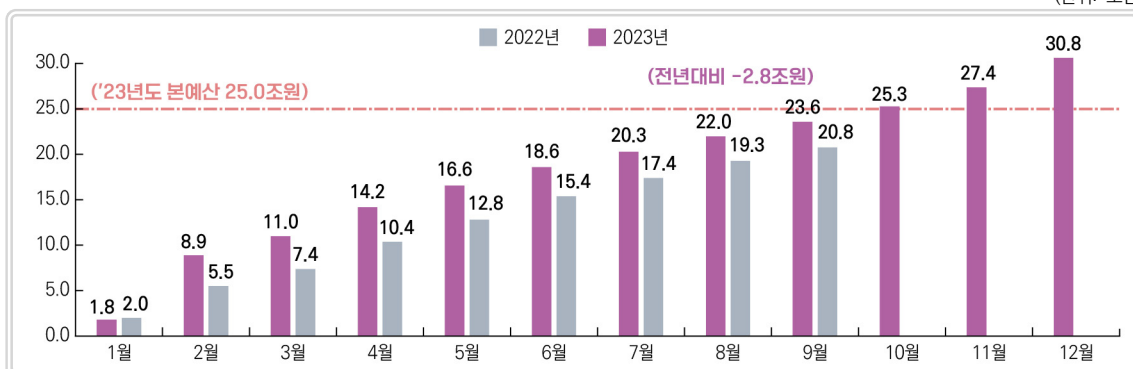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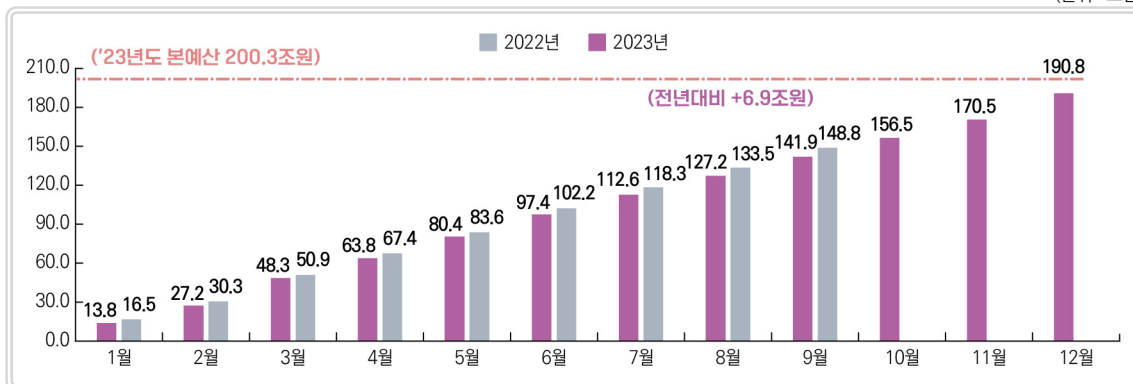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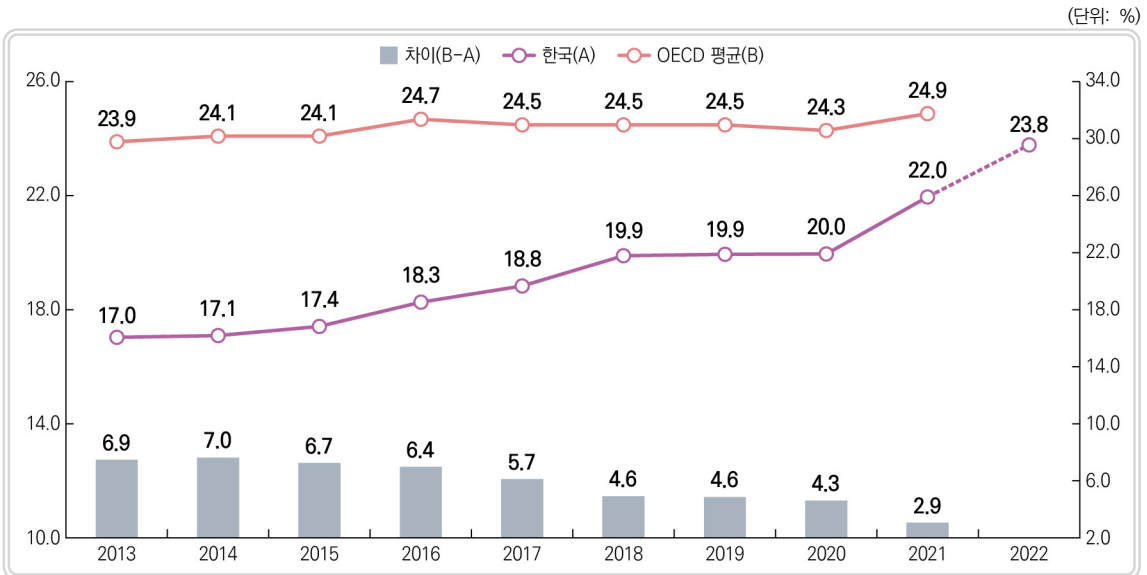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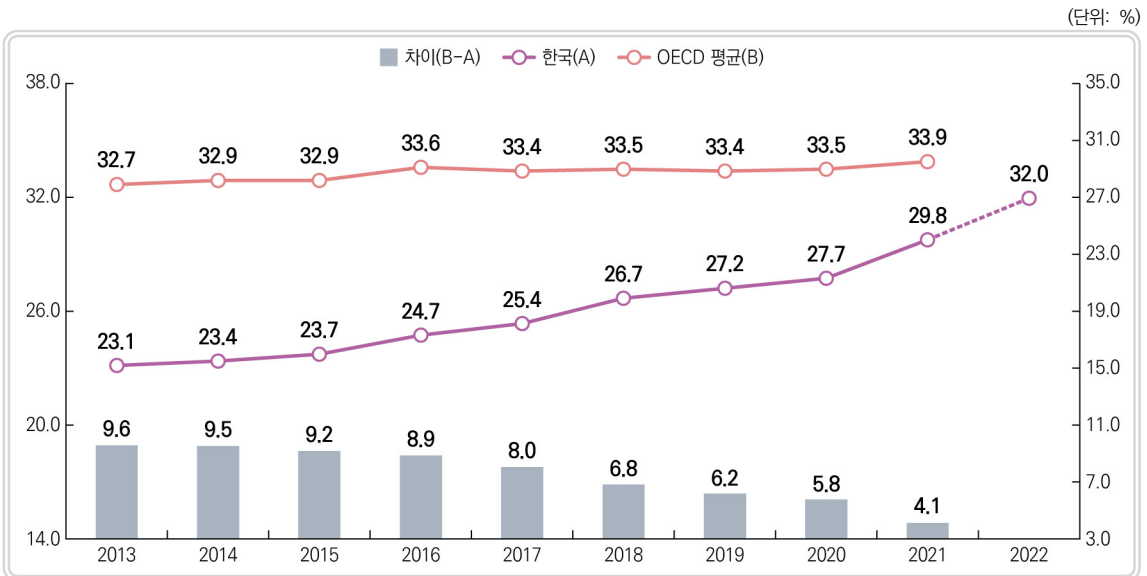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부담률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합 의 비율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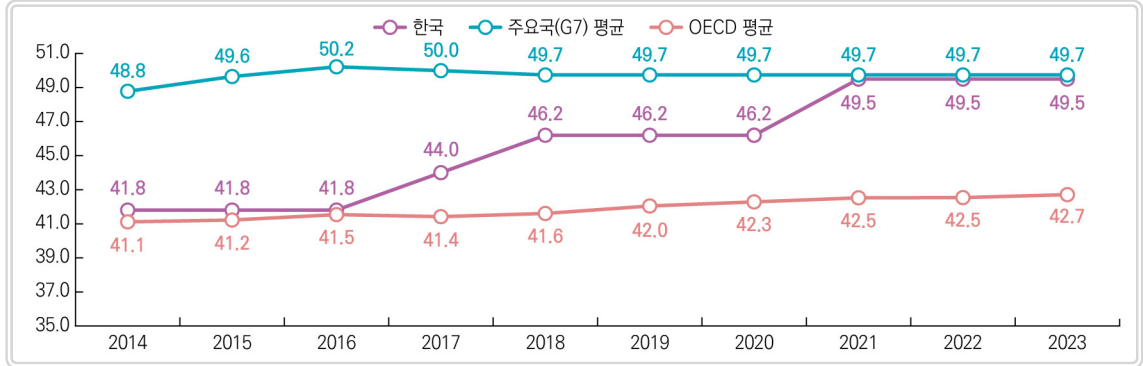
조세부담률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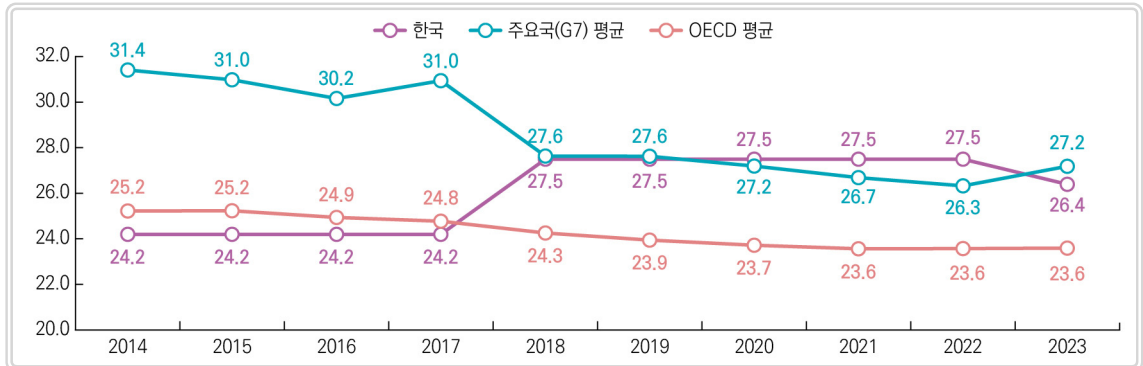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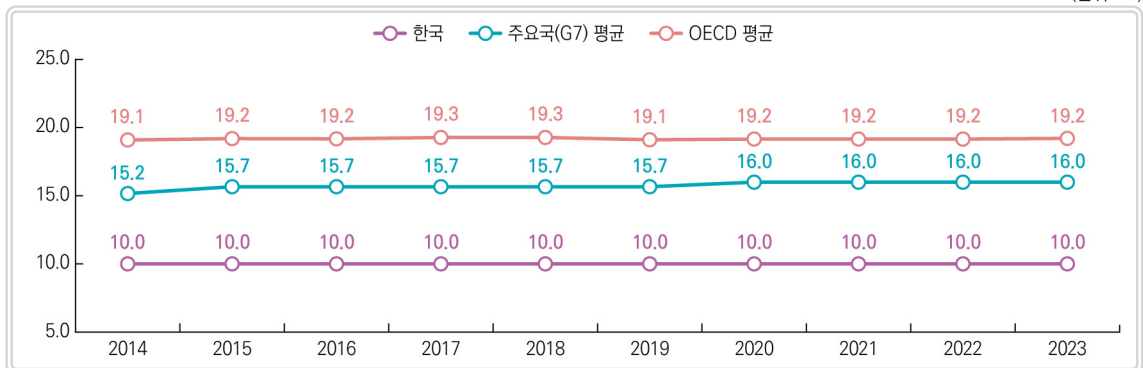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율(지방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단위: %)



주: 1) 각 세율의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최고명목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이며,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및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3년 12월 2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